

발간등록번호

11-1240000-001695-01

『성희롱실태조사』
2023년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보고서

2023 Regular Assessment Report

한국통계진흥원

2023. 12.

본 보고서는 한국통계진흥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진단한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통계진흥원(연구진)이 진단한 내용이며, 통계작성기관의 확인을 거쳐 작성했습니다.

제 출 문

통계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 성희롱실태조사 』 2023년 정기통계품질진단”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 년 12 월 31 일

연 구 원 : 한국통계진흥원 정미량 전문연구원

조사표·유사통계
연 구 원 : 한국통계진흥원 오유진

표본 연구원 : 한국통계진흥원 이영민

MD 연구원 : 한국통계진흥원 오유진

연구보조원 : 한국통계진흥원 설민지
한국통계진흥원 박연진

목 차

| | |
|---------------------------------|----|
| 결과보고서 요약문 | 1 |
| 정기통계품질진단 흐름도 | 2 |
| 제 1 장 진단대상통계 개요 | 3 |
| 제 2 장 통계품질진단 결과 | 5 |
| 제 1 절 통계작성절차별 진단결과 | 5 |
| 1. 통계작성 기획 진단결과 | 5 |
| 2. 통계설계 진단결과 | 7 |
| 3. 자료수집 진단결과 | 10 |
| 4. 통계처리 및 분석 진단결과 | 14 |
| 5.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진단결과 | 18 |
| 6. 통계기반 및 개선 진단결과 | 22 |
| 제 2 절 품질차원별 진단결과 | 24 |
| 1. 관련성 | 24 |
| 2. 정확성 | 25 |
| 3. 시의성/정시성 | 26 |
| 4. 비교성/일관성 | 26 |
| 5. 접근성/명확성 | 27 |
| 제 3 절 진단결과 종합표 | 28 |

| | |
|----------------------------------|----|
| 제 3 장 개선과제별 개선방안 | 29 |
| 제 1 절 통계설명자료 명확화 | 30 |
| 1. 현황 및 문제점 | 30 |
| 2. 세부 개선과제 내용 | 30 |
| 제 2 절 조사표 보완 및 개선 | 32 |
| 1. 현황 및 문제점 | 32 |
| 2. 세부 개선과제 내용 | 33 |
| 제 3 절 민간사업체 부문 입력시스템 구축 검토 | 34 |
| 1. 현황 및 문제점 | 34 |
| 2. 세부 개선과제 내용 | 34 |
| 제 4 절 통계 공표일정 현행화 | 35 |
| 1. 현황 및 문제점 | 35 |
| 2. 세부 개선과제 내용 | 35 |
| 제 5 절 업무 수행 단계별 관리체계 마련 | 36 |
| 1. 현황 및 문제점 | 36 |
| 2. 세부 개선과제 내용 | 36 |
| 제 6 절 개선과제 요약 | 37 |
| 제 4 장 발전전략 및 중장기 로드맵 | 39 |
| 1. 통계설계 개선 관련 사전 연구 수행 | 39 |
| 2.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가능성 검토 | 41 |

| | |
|--------------------------------------|-----|
| 붙임1) 자료수집 체계 점검 결과 | 43 |
| 붙임2)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실태 점검 결과 | 53 |
| 붙임3) 공표자료 오류 점검 결과 | 61 |
| 붙임4) 조사표 설계 및 유사통계 비교·분석 점검 결과 | 65 |
| 붙임5) 표본설계 점검 결과 | 83 |
| 붙임6) 마이크로데이터 품질 점검 결과 | 105 |
| | |
| 부 록. 통계품질진단 개요 | 117 |
| 1. 통계품질진단의 개념 | 117 |
| 2. 통계품질진단 체계 | 118 |
| 3. 통계품질 수준 측정 | 123 |

표 목 차

| | |
|------------------------------------|----|
| <표 1> 성희롱실태조사(2021 기준) 개요 | 3 |
| <표 2> 통계작성 기획 진단결과 | 6 |
| <표 3> 통계설계 진단결과 | 8 |
| <표 4> 자료수집 진단결과 | 11 |
| <표 5> 통계처리 및 분석 진단결과 | 15 |
| <표 6>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진단결과 | 19 |
| <표 7> 통계기반 및 개선 진단결과 | 22 |
| <표 8> 진단결과 종합표 | 28 |
| <표 9> 개선과제 요약 | 37 |
| <표 10> 통계설계 변경(안) | 40 |

그림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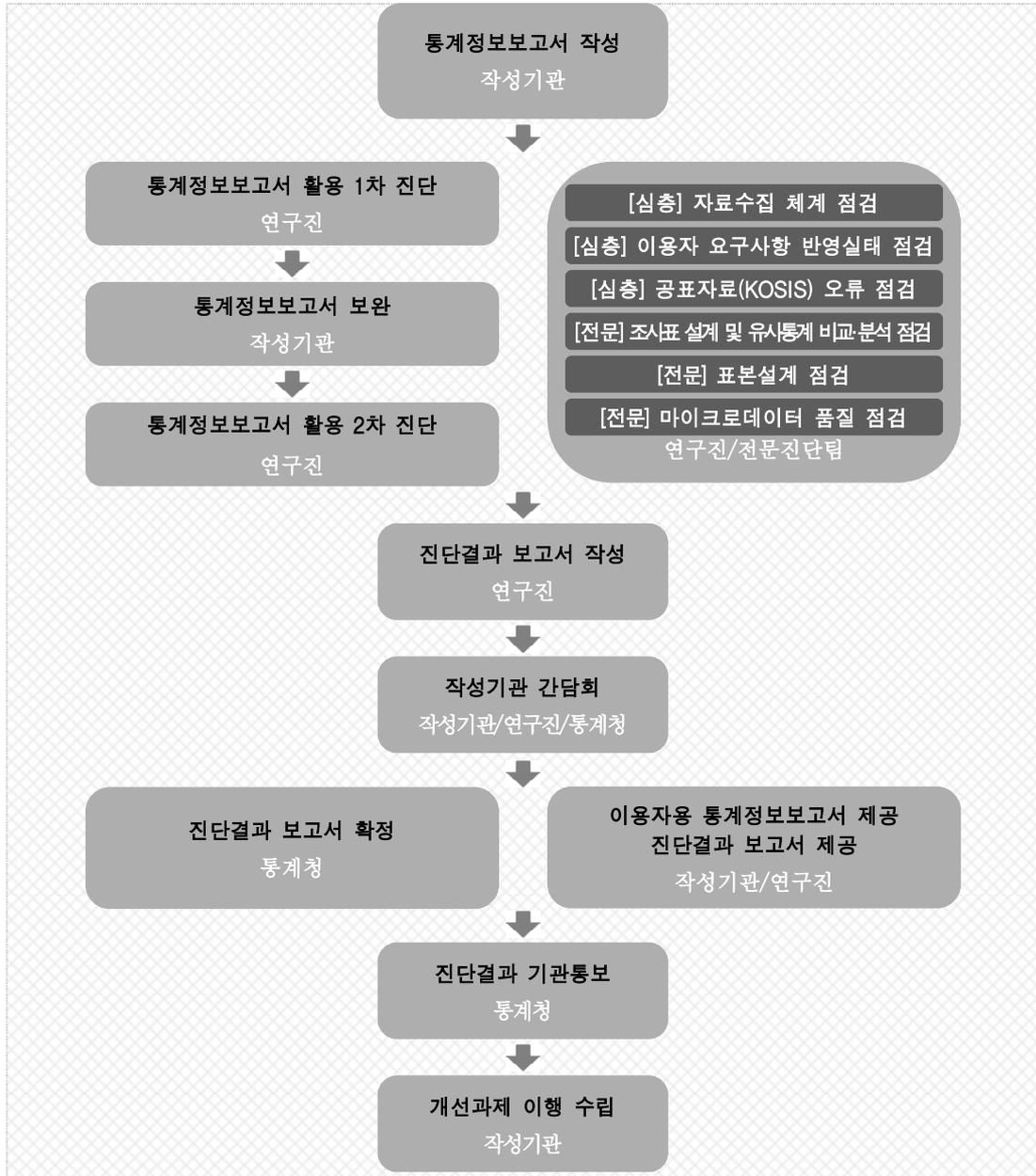
| | |
|--|----|
| <그림 1> 통계품질진단 흐름도 | 2 |
| <그림 2> 『성희롱실태조사』 품질차원별 진단점수(방사형 그래프) | 24 |

결과보고서 요약문

| | |
|--|---------------------------------|
| 진단통계명 | 「성희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 주 제 어 | 성희롱, 성희롱 피해, 성희롱 2차 피해, 성인지 감수성 |
| 진 단 기 간 | 2023. 2. ~ 2023. 12. |
| 진 단 기 관 | 통계청, 한국통계진흥원 |
| 연 구 진 | 정미량, 오유진, 이영민, 설민지, 박연진 |
| <p>이번 진단에서 활용한 통계는 2022.06.07.에 공표된 2021년 성희롱실태조사이다.</p> <p>본 진단은 성희롱실태조사의 전반적인 품질 상태를 살펴보고, 본 조사를 통해 제공되는 국가통계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통계품질진단은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한 「통계정보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통계작성절차별 작성실태 점검, 자료수집 체계 점검,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실태 점검, 공표자료 오류 점검, 조사표 설계 및 유사통계 비교·분석 점검, 표본설계 점검, 마이크로데이터 품질 점검을 근거로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하였다.</p> <p>성희롱실태조사에 대한 통계작성절차별 진단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작성 기획 5.0점, 통계설계 5.0점, 자료수집 5.0점, 통계처리 및 분석 4.8점,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4.5점, 통계기반 및 개선 4.7점으로 평가되었다.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는데, 이는 통계공표가 예정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마이크로데이터를 외부에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p> <p>품질차원별 진단결과는 관련성 5.0점, 정확성 4.9점, 시의성/정시성 4.0점, 비교성/일관성 4.7점, 접근성/명확성 차원에서는 4.0점으로 나타났다. 시의성/정시성 차원에서는 통계자료간 기준시점이 동일하지 않고, 예고된 공표시기 미준수, 접근성/명확성 차원에서는 마이크로데이터 미제공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진단 결과가 낮게 평가되었다.</p> <p>그리고 자료수집 체계 점검에서 조사방법의 검토, 사후조사 절차 마련,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실태 점검에서는 통계명 수정, 조사대상 범위 및 규모 확대 등, 조사표 설계 및 유사통계 비교·분석 점검에서는 용어 설명 추가, 기준시점 개선, 조사표 보완, 표본설계 점검에서는 근로자 가중치 수식 수정, 마이크로데이터 품질 점검에서는 MDIS를 통한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검토, 마이크로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 등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진단되었다.</p> <p>이를 토대로 품질진단 결과 도출한 주요 개선과제로는 통계설명자료 명확화, 조사표 보완 및 개선이 단기과제로 도출되었다. 중기과제로는 민간사업체 부문 입력시스템 구축 검토, 통계 공표일정 현행화, 업무 수행 단계별 관리체계 마련이 도출되었다.</p> | |

정기통계품질진단 흐름도

정기통계품질진단은 하단의 진단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본 보고서는 진단 결과를 종합정리한 진단결과 보고서이다. 통계품질진단의 개념 및 체계, 수준 측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보고서 마지막 부분의 부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통계 품질진단 흐름도

제 1 장 진단대상통계 개요

<표 1> 성희롱실태조사(2021 기준) 개요

| | | |
|------|---------------|---|
| 기본정보 | 작성유형 | • 조사통계 |
| | 통계종류 | • 일반통계 |
| | 승인번호 | • 154018 |
| | 승인일자 | • 2015년 8월 7일 |
| | 법적근거 | • 양성평등기본법 제32조 |
| | 조사목적 | • 성희롱에 대한 인식과 실태 및 관련 제도의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여, 향후 효과적인 성희롱 방지정책 수립 및 개선을 위한 기초 및 근거자료 제공 |
| | 주요연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1~2005년 : 남녀차별 및 성희롱 실태조사 • 2006~2012년 : 공공기관 성희롱 실태조사 • 2015년 성희롱 실태조사(국가승인 통계) • 2018년 성희롱실태조사 • 2021년 성희롱실태조사 |
| 일반특성 | 조사주기 | • 3년 |
| | 조사대상 범위 |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체 |
| | 조사대상 지역 | • 전국 |
| | 조사항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담당자: 성희롱 관련업무 운영현황,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업무 수행 및 정책 수요, 기본항목 • 일반직원(근로자): 직장내 조직문화,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피해 경험, 성희롱 전담부서 인지도 및 정책수요, 기본항목 |
| | 자료수집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인터넷조사 • 민간사업체: 면접조사, 유치조사, 이메일/팩스 조사 병행 |
| | 조사체계(위탁/광역포함) |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조사설계, 조사표, 분석), 갤럽(조사, 표본설계) → 여성가족부 |
| | 조사대상기간/조사기준시점 | • 2021년 8월 1일 |
| | 조사실시기간 | • 2021년 9월 ~ 2022년 1월 |
| 결과공표 | 공표주기 | • 3년 |
| | 공표시기 | • 조사기준년도 익년 6월 |
| | 공표범위 | • 전국 |
| | 공표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KOSIS • 보도자료, 간행물(2021 성희롱 실태조사) |

| | | |
|--------|-------------|---|
| 조사통계특성 | 전수/표본구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본조사 |
| | 모집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표모집단: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체 조사모집단: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작성된 「전국사업체조사」 중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체 |
| | 표본추출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
| | 추출단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층화: 기관 유형, 2차 층화: 공공기관 규모 내재적 층화: 지역 민간사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층화: 산업대분류 업종, 2차 층화: 사업체 규모 내재적 층화: 지역 |
| | 조사대상 규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 770개(업무담당자 770명, 일반직원 4,644명) 민간사업체: 1,760개(업무담당자 1,760명, 일반직원 10,514명) |
| 통계활용 | 마이크로데이터 보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유 |
| |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낮은 성희롱 경험률로 인해 분석변수 세분화시 응답기관 개인정보 및 통계품질 문제 발생으로 인해 마이크로데이터 미제공 |
| | 행정자료 활용 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활용 |
| | KOSIS 제공 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공 |
| | 국제기구제출 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제출 |
| | 자료 이용시 주의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통계 수치는 통계청의 「2019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자료 중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전국의 사업체와 해당 사업체(민간사업체 72,401개, 공공기관 13,426개)의 상시근로자(민간사업체 7,419,303명, 공공기관 1,499,341명)를 기준으로 모수추정 한 결과임 각 통계표의 조사 대상 기간 시점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 기준 시점 : 2021년 7월 31일 조사 대상 기간 : 지난 한 해(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지난 3년간(2018년 8월 1일 ~ 2021년 7월 31일) 자료는 단위 미만을 반올림하였으므로 합계의 숫자와 각 항목별 합계의 숫자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통계표에 사용된 부호의 뜻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0.0, 0.00 : 단위 미만, - : 해당 숫자 없음, 유사조사 또는 과거조사 자료와 비교 시 조사방법, 조사 시기,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문항 내용 등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직접적인 비교, 시계열 비교 시 결과 해석에 유의해야 함 본 보고서의 내용을 전재(全載) 또는 역재(譯載)할 경우에는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 기초보고서 ○쪽에서 전재(全載) 또는 역재(譯載)」라고 기재해야 함 |

제 2 장 통계품질진단 결과

제 1 절 통계작성절차별 진단결과

1. 통계작성 기획 진단결과

성희롱실태조사는 법적근거, 통계 개발 배경 및 목적이 명확하고, 조사연혁, 조사방법, 조사 및 공표주기, 일정별 수행업무 등 통계작성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기본계획서 및 업무편람을 통해 문서화하여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다.

법적근거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2조에 의거하며, 조사목적은 성희롱에 대한 인식과 실태를 파악하여, 성희롱 방지정책 수립 및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2015년 통계작성 승인을 받아 3년 주기로 조사가 수행되고 있다. 또한, 본 통계는 통계 이용자를 파악하고, 이용자 요구사항 및 의견을 수렴하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다만, 통계명과 통계 작성 목적을 확인했을 때 일상생활의 성희롱 실태가 아닌 직장 내 성희롱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로 인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므로 조사목적 등 통계에 대한 개요를 명확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 시사점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실태 점검 결과, 이용자가 본 통계를 처음 접할 때 통계명 ‘성희롱실태조사’를 보고, 일상생활에서 성희롱 실태 및 인식을 파악을 위한 조사로 이해하는 등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진단결과에 상술된 바와 같이 이용자 FGI에서 동일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통계작성 대상과 목적을 고려하여 통계설명자료의 명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정성평가에 감점을 부여하였다.

<표 2> 통계작성 기획 진단결과

| 필수진단항목 (품질차원) | 진단결과 | |
|--|---------------|--------|
| | 진단점수/ 배점점수 | 5점척도점수 |
| 1. 법적근거 ~ 5. 통계작성 문서화 (관련성) | | 5/5 |
| 1. 법적근거 | 1/1 | |
| 2. 조사방법 | 1/1 | |
| 3. 조사 및 공표주기 | 1/1 | |
| 4. 조사일정 및 일정별 수행업무 제시 | 3/3 | |
| 5-1. 통계작성 기본계획서 첨부 | 1/1 | |
| 5-2. 업무편람(직무편람) 첨부 | 1/1 | |
| 6. 통계연혁 (관련성) | | 5/5 |
| 6-1. 작성통계의 최초개발 시기 | 2/2 | |
| 6-2. 작성통계의 개발 배경 | 2/2 | |
| 6-3. 통계의 개념, 분류, 설계, 과정, 내용, 방법, 표본, 기준년, 가중치 등의 변경 또는 개편이력 관리 | 3/3 | |
| 7. 통계의 작성목적 (관련성) | | 5/5 |
| 7-1. 통계작성 목적의 명확성 | 1/1 | |
| 7-2. 주된 활용분야에 대한 명시 | 3/3 | |
| 7-3. 국내 또는 해외 관련 통계, 유사 사례 사전 검토 | 2/2 | |
| 8. 주요 이용자 및 용도 ~ 9. 이용자 의견수렴 (관련성) | | 5/5 |
| 8-1. 주요 이용자 관리 | 1/1 | |
| 8-2. 주요 이용자 유형별 용도 파악 | 2/2 | |
| 9-1. 실시 내용과 주요 결과 기록 | 2/2 | |
| 9-2. 요구사항 및 요구 반영 결과 | 3/3 | |
| 정성평가 | | -0.1 |

※ 5점척도점수는 진단 지표에 대한 항목 점수

※ '해당없음'이 포함된 경우 5점척도점수의 구간기준이 변동될 수 있음

* 1.법적근거~5.통계작성문서화: 7점 이상(5), 6점(4), 3~5점(3), 2점(2), 1점 이하(1)

* 6.통계연혁: 6점 이상(5), 5점(4), 3~4점(3), 2점(2), 1점 이하(1)

* 7.통계의작성목적: 5점 이상(5), 4점(4), 3점(3), 2점(2), 1점 이하(1)

* 8.주요이용자및용도~9.이용자의견수렴: 7점 이상(5), 6점(4), 3~5점(3), 2점(2), 1점 이하(1)

* 정성평가: -0.5점 ~ +0.5점

2. 통계설계 진단결과

성희롱실태조사는 조사표 구성 및 설계, 통계 분류체계, 모집단 선정 및 표본설계 등과 관련한 통계설계가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실태조사는 법률에 근거하여 성희롱 기본 정의 및 개념을 검토하고 있으며, 본 실태조사에 적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조사항목과 관련하여 본 조사 실시 전 지난 조사결과 및 조사항목, 최근 성희롱 관련 이슈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사표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여러차례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진 조사표를 토대로 예비조사, 전문가 자문, 조사원 간담회를 통해 응답까지 소요 시간, 설문 문항의 적절성, 응답자의 이해 및 해석상 오인지 문항 확인 등을 수렴하여 설문 내용에 대한 추가 수정·보완을 진행하여 최종 조사표를 확정하고 있다. 또한, 연도별 조사표 변경 전·후 및 변경 사유 등을 기록·관리하고 있어 조사표 설계 및 변경 절차, 변경 이력 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다.

본 통계의 표본설계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설계하는데, 통계의 작성목적을 고려하여 목표모집단과 조사모집단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으며, 표본추출틀 선정 및 표본추출방법, 표본크기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표본설계 방법 및 절차의 적절성에 대한 진단 과정에서 최종 선정한 최적의 표본배분방법과 표본배분 결과의 수치 차이가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

표본설계자는 표본배분방법 명칭의 단순 표기 오류인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담당 연구진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표기 오류로 작성된 표본배분 방법을 토대로 표본배분을 실시하고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설계 당시가 아닌 진단 시점에 표본설계내역서가 변경되었고, 표본설계의 보완 과정 및 절차가 미흡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어 정성평가에 감점을 부여하였다.

□ 시사점

조사표 설계 및 유사통계 비교·분석 점검 결과, ‘성인지 감수성’ 과 같이 일반인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지 않는 용어에 대한 설명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표 유형별 중복되는 문항의 간소화, 조사문항의 질문표현과 보기항목의 재구성, 설문 문항 흐름을 고려한 문항의 배치, 문항 이동 지시문 보완 등을 통해 응답자가 설문조사시 쉽게 응답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성희롱실태조사의 조사대상은 ‘(2015년)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 (2018년)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으로 확대되었으며, 표본 규모는 ‘(2015년) 업무담당자 1,600명, 근로자 약 7,800명 → (2018년) 업무담당자 1,600명, 근로자 약 9,300명 → (2021년) 업무담당자 2,530명, 근로자 약 15,000명’ 으로 점차 확대되었다.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실태 점검 결과, 조사대상과 표본 규모는 매 조사주기마다 확대되었으나,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에서 성희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조사대상을 확대하여 성희롱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이용자 요구사항이 있었다.

<표 3> 통계설계 진단결과

| 필 수 진 단 항 목 (품질차원) | 진단결과 | |
|---|---------------|---------|
| | 진단점수/ 배점점수 | 5점 척도점수 |
| 1. 조사 항목 ~ 2. 적용 분류체계 (비교성) | | 5/5 |
| 1-1. 주요 용어 및 항목별 명확한 정의의 적절성 | 1/2 | |
| 1-2. 주요 용어의 정의나 개념 등에 대한 국내 또는 국제기준 비교 | 2/2 | |
| 1-3. 조사표 첨부 | 1/1 | |
| 1-4. 조사항목의 체계 | 2/2 | |
| 2-1. 통계에서 사용하는 분류체계 개요 및 내용의 적절성 | 2/2 | |
| 2-2. 국내 또는 국제기준의 표준분류체계 사용 여부 또는 미사용 사유 | 2/2 | |
| 3. 조사표 구성 (정확성) | | 5/5 |
| 3-1. 조사표 구성 관련 내·외부 전문가 회의 개최 | 1/1 | |
| 3-2. 조사표 구성 내·외부 전문가 회의 결과 반영 여부 | 3/3 | |
| 3-3. 첨부된 조사표에 수록된 사항의 수 | 5/5 | |
| 4. 조사표 설계 및 변경 절차 ~ 5. 조사표 변경이력 (관련성) | | 5/5 |
| 4-1. 조사표 설계, 변경 절차나 방법의 적절성 | 3/3 | |

| 필수진단항목 (품질차원) | | 진단결과 | |
|---|--|---------------------|--------|
| | | 진단점수/ 배점점수 | 5점척도점수 |
| 5-1. 조사표 변경 이력 관리 | | 2/2 | |
| 5-2. 조사표 변경 이유 기록·관리 | | 1/1 | |
| 5-3. 변경승인일자 기록·관리 | | 2/2 | |
| 6. 목표모집단과 조사모집단 (정확성) | | | 5/5 |
| 6-1. 목표모집단 정의 | | 2/2 | |
| 6-2. 조사모집단 정의 | | 2/2 | |
| 6-3. 목표모집단 및 조사모집단 차이의 적절성 | | 2/2 | |
| 7. 표본추출틀 (정확성) | | | 5/5 |
| 7-1. 표본추출틀로 사용되는 자료의 출처(통계명, 작성기관, 작성연도) | | 1/1 | |
| 7-2. 표본추출틀로 선정한 이유 | | 1/1 | |
| 7-3. 표본추출틀의 구축(갱신) 과정, 내용, 주기 등 제시 | | 1/2 | |
| 7-4. 모집단 변동에 따른 표본추출틀 주기적 개편 시 개편의 주기, 필요성, 방법 및 절차, 결과 등 제시 | | 2/2 | |
| 8. 표본설계 방법 및 결과(표본조사) ~ 9. 표본관리 (정확성) | | | 5/5 |
| 8-1. 표본추출방법의 적절성 | | 2/2 | |
| 8-2. 표본크기 결정의 타당성 | | 2/2 | |
| 8-3. 표본추출 결과의 타당성 | | 2/2 | |
| 8-4. 표본설계보고서 첨부 | | 1/1 | |
| 8-5. 표본설계보고서에 모수 및 분산 추정방법 | | 1/1 | |
| 9-1. 동일대상을 연속 조사 하는 경우 조사대상의 생멸, 전입, 전출 등 표본 내 변동이 발생한 경우, 수정·보완하는 방법 | | 해당없음 | |
| 추가진단항목 | | 추가점수 (진단점수/배점점수) | |
| 1-5. 주요 항목의 조사목적 | | 0.1/0.1 | |
| 1-6. 부정확한 응답 가능성이 있는 조사항목 검토 | | 0.1/0.1 | |
| 3-4. 조사방법을 혼합하여 이용하는 경우 조사방법별로 조사표의 구성, 내용, 특징 및 설계 시 고려한 다양한 요소 검토 | | 0/0.1 | |
| 5-4. 응답자 유형별 응답 소요시간 등 검토 | | 0.1/0.1 | |
| 6-4. 조사모집단의 과대표함, 과소포함 등 포함오차에 대한 분석 또는 검토 | | 0/0.1 | |
| 7-5. 분류별, 지역별 기타 하위모집단별 추출단위 분포, 관련 통계량, 상관관계 등 기록 및 관리 | | 0/0.1 | |
| 7-6. 표본틀에 한계가 있는 경우 그 내용과 보완 등의 검토 또는 조치 결과 | | 0.1/0.1 | |
| 정성평가 | | -0.2 | |

- * 1. 조사항목 ~ 2. 적용분류체계: 10점 이상(5), 8~9점(4), 4~7점(3), 2~3점(2), 1점 이하(1)
- * 3. 조사표구성: 8점 이상(5), 6~7점(4), 4~5점(3), 2~3점(2), 1점 이하(1)
- * 4. 조사표설계및변경절차 ~ 5. 조사표변경이력: 7점 이상(5), 6점(4), 3~5점(3), 2점(2), 1점 이하(1)
- * 6. 목표모집단과조사모집단: 5점 이상(5), 4점(4), 3점(3), 2점(2), 1점 이하(1)
- * 7. 표본추출틀(표본조사): 5점 이상(5), 4점(4), 3점(3), 2점(2), 1점 이하(1)
- * 8. 표본설계방법및결과 ~ 9. 표본관리: 10점 이상(5), 8~9점(4), 4~7점(3), 2~3점(2), 1점 이하(1)
- * 정성평가: -1점 ~ +1점

3. 자료수집 진단결과

성희롱실태조사의 조사방법은 공공기관은 온라인조사, 민간사업체는 방문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응답자 요청시 조사표 유치조사, 이메일 조사 등 응답자가 선호하는 조사방법을 택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때 조사방법을 혼용하는 경우, 조사방법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뤄지고 있어 조사의 정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조사원 채용 및 자격 요건에 있어서도 조사원 경력사항, 성희롱 관련 유사 통계 유경험자 조사원을 선발하여 조사원 교육에 참여한 조사원을 본 조사에 투입을 원칙으로 하며, 조사원 1인당 조사 할당량은 조사지역 및 표본 규모, 조사기간 및 응답소요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업체 컨택시 협조공문과 홍보물, 근로자 선정 안내문 등을 발송하여 조사 협조를 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조사 진행 과정에서 문의 및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접촉 횟수, 거절 사유, 조사 완료일, 응답소요시간 등 파라미터와 조사 준비와 관련된 조사지침서, 사례집 등 문서를 기록·관리하고 있어 본 조사의 자료수집은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다.

성희롱실태조사는 성희롱 피해와 같이 민감한 문항의 응답 거절과 개인정보 미수집(근로자용)으로 인해 전화 검증이 불가하여 항목무응답을 허용하고 있다.

조사과정에서 휴·폐업, 강력 거절 등으로 인해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업종×사업체 규모×지역 등 유사한 특성을 가진 표본으로 대체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원 임의로 표본대체를 진행하지 않고, 실사관리시스템에 접촉 기록사항 작성 후, 조사관리자 및 연구진에게 보고하면, 대체표본이 조사원에게 전달되는 방식으로 표본대체 절차 및 방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사점

자료수집 체계 점검 결과, 성희롱실태조사는 업무담당자-근로자 모두 응답해야 조사가 완료되는 페어조사로 진행되며, 조사대상 중 민간사업체는 주로 조사원이 응답업체에 방문하여 조사표 및 답례품, 비밀보호용 봉투를 업무담당자에게 건네주고, 추후 담당자와 일정을 조율하여 조사표를 수거하러 가는 방식인 유치조사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때, 조사원이 업무담당자에게 조사 진행 원칙에 따라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업무담당자는 근로자 선정 지침에 따라 근로자를 랜덤하게 선정해야 하지만 근로자에게 조사 협조 요청에 따른 부담감으로 인해 근로자를 친분에 따라 선택적으로 선정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응답하는 근로자는 본인이 응답한 내용이 외부에 노출될 우려로 인해 응답 거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실태조사는 조사관리의 일환으로 조사완료 후, 랜덤하게 일부 응답 업체를 선정하여 조사진행 및 답례품 수령 여부 등을 확인하는 사후검증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에 대한 진행현황 및 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결과물 관리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 자료수집 진단결과

| 필 수 진 단 항 목 (품질차원) | 진단결과 | |
|--|---------------|--------|
| | 진단점수/ 배점점수 | 5점척도점수 |
| 1. 조사방법 (정확성) | | 5/5 |
| 1-1. 조사방법 선택에 대한 검토(조사비용, 조사인력, 조사 기간, 조사체계 등) | 2/2 | |
| 1-2. 선택한 조사방법에 대한 조사과정의 적절성 | 3/3 | |
| 2. 조사원 채용 및 처우 ~ 4. 조사원 업무량 (정확성) | | 5/5 |
| 2-1. 조사원 채용 방법 및 과정의 적절성 | 2/2 | |
| 2-2. 조사원 자격요건, 지위, 급여수준, 지급방법, 부가 혜택 등의 적절성 | 2/2 | |
| 3-1. 조사원 교육훈련에 대한 일정 | 2/2 | |
| 3-2. 조사원 교육훈련 내용의 적절성 | 2/2 | |
| 3-3. 교육시간의 적정성 검토 | 1/1 | |
| 3-4. 교육훈련 교재 첨부 | 1/1 | |
| 3-5. 조사기간 중 교체된 조사원에 대한 교육 실시 | 2/2 | |
| 3-6. 조사원 대상 비밀보호 의무 교육 또는 서약서 작성 | 1/1 | |
| 4-1. 조사원 업무량 배정시 고려사항 | 2/2 | |

| 필수진단항목 (품질차원) | 진단결과 | |
|---|---------------|--------|
| | 진단점수/ 배점점수 | 5점척도점수 |
| 5. 조사업무 흐름도 ~ 6. 조사준비 및 준비조사 (정확성) | | 5/5 |
| 5-1. 조사실시에 대한 조사업무 흐름도 관리의 적절성 | 2/2 | |
| 6-1. 조사 홍보 실시 내용과 방법 | 1/1 | |
| 6-2. 응답자(조사대상) 사전 통지 | 1/1 | |
| 6-3. 조사구 확인 또는 조사명부 보완 | 2/2 | |
| 7. 조사항목별 조사 방법 (정확성) | | 5/5 |
| 7-1. 주요 조사항목별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의 적절성 | 3/3 | |
| 7-2. 조사표 기입에 필요한 조사지침서 첨부 | 1/1 | |
| 8. 현장조사 관리 (정확성) | | 5/5 |
| 8-1. 현장조사 관리 체계 | 1/1 | |
| 8-2. 현장조사 관리 방법 | 2/2 | |
| 8-3. 현장조사 관리자 1인당 조사원수 등 관리 | 1/1 | |
| 8-4. 현장조사 관리자 역할의 적절성 | 2/2 | |
| 8-5. 현장조사 파라미터 기록·관리 여부 | 1/1 | |
| 8-6. 조사기간 중 작성기관이 조사위탁기관이나 조사를 대상으로 실시지도(지도점검) 실시 | 1/1 | |
| 9. 조사 질의응답 체계 (정확성) | | 5/5 |
| 9-1. 현장조사 질의 및 응답 체계 운영 방법의 적절성 | 3/3 | |
| 9-2. 주요 질의 응답·오류사례 축적 및 관리 | 2/2 | |
| 9-3. 현장조사 사례집 첨부 | 1/1 | |
| 10. 조사(또는 응답)대상 ~ 12. 표본대체 (정확성) | | 5/5 |
| 10-1. 적격 조사(또는 응답)대상의 지위, 지정 이유의 타당성 | 2/2 | |
| 11-1. 항목 무응답 대처 방법 | 2/2 | |
| 11-2. 단위 무응답 대처 방법 | 2/2 | |
| 12-1. 표본대체 허용 기준 | 2/2 | |
| 12-2. 표본대체 절차 및 방법 | 2/2 | |
| 12-3. 표본대체 기준, 절차 및 방법의 적절성 | 1/1 | |
| 13. 사후조사 (정확성) | | 해당없음 |
| 13-1. 조사 실시 후 사후조사(모니터링) 실시(시기, 내용, 방법, 비율) | 해당없음 | |
| 13-2. 사후조사(모니터링) 수행 결과 분석 및 사후 조치 방안(결과, 활용) | 해당없음 | |
| 14. 행정자료 활용 목적 및 내용 ~ 15. 활용 행정자료 특성 및 입수체계 (관련성) | | 해당없음 |
| 14-1. 행정자료 활용에 대한 목적, 필요성, 활용 정도 파악 | 해당없음 | |
| 14-2. 행정자료 이용 시 발생하는 이용제한 사항 및 사유 파악 | 해당없음 | |
| 14-3. 활용하는 행정자료의 내용 및 항목 파악 | 해당없음 | |
| 15-1. 활용하는 행정자료의 원래 수집 목적에 대한 파악 (관리/제공기관 기준) | 해당없음 | |
| 15-2. 활용하는 행정자료의 원래 수집과정 및 내용, 관리 기관에 대한 파악(관리/제공기관 기준) | 해당없음 | |
| 15-3. 행정자료 입수 방법 및 경로의 기록·관리(통계작성기관 기준) | 해당없음 | |
| 15-4. 행정자료 입수주기 또는 갱신주기 및 정시성에 대한 기록·관리(통계작성기관 기준) | 해당없음 | |
| 15-5. 행정자료 활용 법적근거(통계작성기관 기준) | 해당없음 | |

| 필수진단항목 (품질차원) | 진단결과 | |
|--|---------------------|--------|
| | 진단점수/ 배점점수 | 5점척도점수 |
| 추가진단항목 | 추가점수 (진단점수/배점점수) | |
| 1-3. 조사의 효율성, 정확성 등의 제고를 위하여 조사방법별 응답비율, 응답자 특성, 추정치에 미치는 영향 등 분석·검토 | 0.1/0.1 | |
| 2-3. 우수 조사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적용한 방법이나 조치 | 0.1/0.1 | |
| 3-7. 조사원의 업무지식 숙지 정도에 대한 평가 및 평가 조치(재교육 실시 등) | 0/0.1 | |
| 10-2. 기억응답과 관련된 검토 여부(조사대상 기간(또는 시점)과 조사시기 사이의 간격, 응답에 필요한 기록물(영수증, 장부 등) 활용가능성 등) | 0/0.1 | |
| 정성평가 | 0 | |

- * 1. 조사방법: 5점(5), 4점(4), 2~3점(3), 1점(2), 0점(1)
- * 2. 조사원채용및처우~4. 조사원업무량: 14점 이상(5), 11~13점(4), 5~10점(3), 2~4점(2), 1점 이하(1)
- * 5. 조사업무흐름도~6. 조사준비및준비조사: 5점 이상(5), 4점(4), 3점(3), 2점(2), 1점 이하(1)
- * 7. 조사항목별조사방법: 4점(5), 3점(4), 2점(3), 1점(2), 0점(1)
- * 8. 현장조사관리: 7점 이상(5), 6점(4), 3~5점(3), 2점(2), 1점 이하(1)
- * 9. 조사질의응답체계: 5점 이상(5), 4점(4), 3점(3), 2점(2), 1점 이하(1)
- * 10. 조사대상~12. 표본대체: 10점 이상(5), 8~9점(4), 4~7점(3), 2~3점(2), 1점 이하(1)
- * 13. 사후조사: 4점(5), 3점(4), 2점(3), 1점(2), 0점(1)
- * 14. 행정자료활용목적및내용~15. 활용행정자료특성및입수체계: 12점 이상(5), 9~11점(4), 5~8점(3), 2~4(2), 1점 이하(1)
- * 정성평가: -1점 ~+1점

4. 통계처리 및 분석 진단결과

성희롱실태조사 중 공공기관 대상 조사는 온라인시스템에 응답자가 직접 응답하고 있어 기본 로직 및 내검, 자료코딩, 자료입력이 대부분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반면, 민간사업체 대상 조사는 방문 면접조사 또는 조사표 유치조사로 조사되고 있어 논리 내검 및 입력, 자료처리 등 별도의 단계별 자료수집 및 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검매뉴얼을 활용하여 수집 자료의 내검시 오류자료의 처리 방법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료입력과 관련하여 민간사업체 부문은 조사업체에서 활용하는 Survey Craft를 통해 입력원이 Data를 입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해당 프로그램은 입력값 범위 설정을 통해 허용값 외 응답이 불가능하게 하거나, 기본 문항 이동 로직 설정 기능이 있으나, 설정값 범위 내에서 응답 오류가 발생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입력원은 별도의 매뉴얼 없이 조사표를 토대로 자료입력 교육을 듣고 입력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새로운 입력원 교육시 활용할 수 있도록 입력매뉴얼을 문서화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조사는 주요 항목무응답과 단위무응답에 대해 무응답률 수치와 산출산식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항목무응답은 ‘성희롱 조사’의 주제 특성상 무응답 자체로 큰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대체하지 않으며, 단위무응답은 하위 그룹별 무응답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성희롱실태조사는 설계 가중치, 무응답 가중치, 사후 조정 가중치 등 가중치 산출과정과 방법이 적절하며, 성희롱 피해 경험률, 2차 피해 경험률 등 추정하고자 하는 주요 모수와 추정치 산식이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다.

또한, 이용자가 통계결과 활용시 참고할 수 있도록 RSE(상대표준오차) 및 신뢰구간, 주석을 기재하여 자료 이용시 유의사항을 명시·관리되고 있다.

□ 시사점

자료수집 체계 점검 결과,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성희롱실태조사 중 민간사업체 부문의 입력시스템을 공공기관 대상 조사용으로 구축한 온라인조사 시스템을 기반으로 입력용 페이지를 구축하여 입력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때, 내검매뉴얼 지침에 따른 기본 로직 및 내검, 자료코딩 등이 자동으로 점검되고, 입력원의 입력 오류에 의한 비표본오차 감소, 조사표와 동일한 화면으로 구현되므로 시각적으로 응답 내용을 쉽게 입력 가능하고, 별도로 입력매뉴얼이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표 5> 통계처리 및 분석 진단결과

| 필 수 진 단 항 목 (품질차원) | 진단결과 | |
|---|---------------|-------------|
| | 진단점수/ 배점점수 | 5점 척도점 수 |
| 1. 자료코딩 ~ 2. 자료입력 (정확성) | | 4/5 |
| 1-1. 자료 코드체계 및 코딩(부호화) 방법의 적절성 | 2/2 | |
| 2-1. 조사결과 자료의 전산입력 방법의 적절성 | 1/2 | |
| 2-2. 입력 시 오류 검출을 위해 적용한 방법의 적절성 | 2/2 | |
| 2-3. 입력매뉴얼(지침서) 첨부 | 0/1 | |
| 2-4. 자료 입력 교육 실시 여부와 교육 일정 및 방법 | 1/1 | |
| 3. 자료내검 (정확성) | | 5/5 |
| 3-1. 조사현장 내검 내용 및 방법, 오류자료 처리방법의 적절성 | 2/2 | |
| 3-2. 입력결과 내검 내용 및 방법, 오류자료 처리방법의 적절성 | 1/2 | |
| 3-3. 전산내검 범위, 논리내검 적용대상 및 적용내용의 타당성 | 3/3 | |
| 3-4. 내검매뉴얼(지침서) 첨부 | 1/1 | |
| 4. 주요 항목무응답 실태 ~ 6. 단위무응답 실태 (정확성) | | 5/5 |
| 4-1. 주요 항목에 대하여 최초 항목 무응답률 수치 제시 | 1/1 | |
| 4-2. 주요 항목에 대하여 항목 무응답률 산출 산식 | 1/1 | |
| 5-1. 주요 항목의 항목무응답을 대체하는 경우 대체방법의 적절성 | 해당없음 | |
| 6-1. 최초 단위무응답률 수치 제시 | 2/2 | |
| 6-2. 단위무응답률 산출 산식 | 1/1 | |
| 6-3. 주요 하위그룹별(성별, 연령별, 지역별, 산업별 등) 및 무응답 사유(불응, 접촉불가, 부적격 등)별 무응답률 검토 | 1/1 | |
| 7. 가중치 조정 ~ 8. 통계추정 산식 및 내용 (정확성) | | 5/5 |
| 7-1. 설계가중치 산출 | 1/1 | |
| 7-2. 무응답 가중치 조정 | 1/1 | |
| 7-3. 사후가중치 조정 | 1/1 | |
| 7-4. 설계가중치 구체적인 산출과정 및 방법의 적절성 | 2/2 | |
| 7-5. 무응답 가중치 구체적인 조정과정 및 방법의 적절성 | 2/2 | |

| 필수진단항목 (품질차원) | | 진단결과 | |
|--|--------------------------------|---------------------|------------|
| | | 진단점수/ 배점점수 | 5점척도점 수 |
| 7-6. 사후가중치 구체적인 조정과정 및 방법의 적절성 | 7-6. 사후가중치 구체적인 조정과정 및 방법의 적절성 | 2/2 | |
| | 8-1. 추정하고자 하는 주요 모수 | 1/1 | |
| | 8-2. 추정치를 계산하는 산식의 적절성 | 2/2 | |
| 9. 표본오차 추정 방법 및 결과(표본조사) (정확성) | | | 5/5 |
| 9-1. 주요 항목에 대한 분산, 표준오차 등의 추정 방법 | 2/2 | | |
| 9-2. 주요 항목에 대한 상대표준오차, 신뢰구간 등의 적절성 | 3/3 | | |
| 9-3. 주요 항목의 오차 특성과 이용 시 고려사항 | 1/1 | | |
| 10. 지수 유형 및 산출산식 ~ 11. 지수 가중치 및 갱신 (정확성) | | | 해당없음 |
| 10-1. 사용된 지수의 유형 및 지수의 장단점, 선정 이유의 타당성 | 해당없음 | | |
| 10-2. 사용된 지수의 산출 산식 | 해당없음 | | |
| 10-3. 지수작성 목적으로 조사대상 선정기준, 절차, 선정된 항목 | 해당없음 | | |
| 11-1. 지수작성 가중치 산출에 이용된 자료의 명칭 및 개요 | 해당없음 | | |
| 11-2. 가중치 산출 산식 및 과정, 갱신주기 및 이유 | 해당없음 | | |
| 12. 지수개편 ~ 13. 디플레이터 (정확성) | | | 해당없음 |
| 12-1. 지수개편의 주기 | 해당없음 | | |
| 12-2. 지수개편의 목적 및 필요성, 방법, 절차, 내용의 적절성 | 해당없음 | | |
| 12-3. 과거자료 접속방법 | 해당없음 | | |
| 13-1. 디플레이터의 개요, 특성, 적정성 | 해당없음 | | |
| 13-2. 디플레이터의 불변화 방법 | 해당없음 | | |
| 14. 계절조정 (비교성) | | | 해당없음 |
| 14-1. 계절조정의 의미와 필요성, 방법 및 버전 | 해당없음 | | |
| 14-2. 계절조정 과정, 과정보정 적용 방법, 내용, 산출물 등 관리 | 해당없음 | | |
| 14-3. 계절조정 시계열 보정의 주기, 이유, 보정의 내용, 방법 | 해당없음 | | |
| 15. 행정자료의 매칭방법 (정확성) | | | 해당없음 |
| 15-1. 조사통계자료와 행정자료 간 매칭변수 | 해당없음 | | |
| 15-2. 조사통계자료와 행정자료 간 매칭방법 | 해당없음 | | |
| 15-3. 조사통계자료와 행정자료 간 매칭허용 한계 검토 | 해당없음 | | |
| 15-4. 조사통계자료와 행정자료 간 매칭비율 수치 파악 | 해당없음 | | |
| 추가진단항목 | | 추가점수 (진단점수/배점점수) | |
| 3-5. 자료 내용검토(에디팅) 시스템 구축 | | 0.1/0.1 | |
| 3-6. 확인된 오류의 유형, 내용, 원인 등에 대한 분석 | | 0.1/0.1 | |
| 3-7. 이상치를 처리하는 경우, 이상치의 기준, 식별 및 처리 방법, 처리결과 등 기록·관리 | | 0.1/0.1 | |
| 4-3. 항목특성별, 응답자 유형별 등 항목무응답 분포와 특징, 편향 발생 및 분산 증가 가능성 등 분석 | | 0/0.1 | |
| 5-2. 항목 무응답 대체시 대체비율, 대체값의 추정치 기여도, 대체값의 자료 표기 방법 등 분석 | | 0/0.1 | |
| 6-4. 단위무응답에 의한 편향 발생 및 분산 증가 가능성 검토 | | 0.1/0.1 | |
| 6-5. 항목 또는 단위무응답 발생 시, 응답자와 무응답자의 성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편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 | | 0/0.1 | |
| 6-6. 측정 또는 처리오차에 대한 추정 또는 연구 사례 유무 | | 0/0.1 | |
| 9-4.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자가 스스로 표본오차를 계산할 수 있도록 관련 방법을 제공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용방법 | | 0/0.1 | |

| 필수진단항목 (품질차원) | 진단결과 | |
|--|---------------|------------|
| | 진단점수/ 배점점수 | 5점척도점 수 |
| 15-5. 활용하는 행정자료를 점검 또는 보완하는 경우 내용, 방법, 결과 등의 기록·관리 | 0/0.1 | |
| 정성평가 | 0 | |

- * 1.자료코딩~2.자료입력: 7점 이상(5), 6점(4), 3~5점(3), 2점(2), 1점 이하(1)
- * 3.자료내검: 7점 이상(5), 6점(4), 3~5점(3), 2점(2), 1점 이하(1)
- * 4.주요항목무응답실태~6단위무응답실태: 8점 이상(5), 6~7점(4), 4~5점(3), 2~3점(2), 1점 이하(1)
- * 7.가중치조정~8.통계추정산식및내용: 11점 이상(5), 8~10점(4), 5~7점(3), 2~4점(2), 1점 이하(1)
- * 9.표집오차추정방법및결과: 5점 이상(5), 4점(4), 3점(3), 2점(2), 1점 이하(1)
- * 10.지수유형및산출산식~11.지수가중치및갱신: 12점 이상(5), 9~11점(4), 5~8점(3), 2~4점(2), 1점 이하(1)
- * 12.지수개편~13.디플레이터: 7점 이상(5), 6점(4), 3~5점(3), 2점(2), 1점 이하(1)
- * 14.계절조정: 8점 이상(5), 6~7점(4), 4~5점(3), 2~3점(2), 1점 이하(1)
- * 15.행정자료의매칭방법: 6점 이상(5), 5점(4), 3~4점(3), 2점(2), 1점 이하(1)
- * 정성평가: -1점~+1점

5.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진단결과

성희롱실태조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사업체 및 고용 특성 등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 가능한 수준으로 세분화하여 공표하고 있다. 또한, 성희롱 피해 경험률이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사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이용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주석 처리, RSE(상대표준오차)와 신뢰구간을 공표하는 결과보고서 내 제시하고 있다. 또한, 요약과 주요 조사항목에 대한 시계열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결과표를 제시하고 있다.

본 통계의 당초 조사기준시점은 조사기준년도 8월 1일이나, 통계설명자료 및 변경승인 과정에서 조사기준년도 7월 31일로 오기입 되어 있어 추후 다음 조사주기(2024년) 변경승인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성기관 홈페이지에 결과보고서 공표시 다음 조사결과에 대한 공표일정을 게시하고 있다. 2021년 조사는 ‘2022년 1분기’에 공표한다고 예고하였으나, 작성기관 내부적인 사유로 인해 당초 예고했던 일정보다 약 2개월 이상 결과공표가 지연된 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통계작성 개념과 관련하여 통계작성 승인 이후 대체로 동일한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조사실시 시기와 관련하여 표본 규모의 확대 및 코로나19로 인한 조사현장의 어려움으로 인해 변경되었으나, 변경 전·후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본 통계와 유사한 목적을 갖는 국내·외 유사 통계 및 동일영역 통계에 대한 사전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정보는 이용자에게 적절히 제공되고 있다.

통계 이용자 서비스와 관련하여 작성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자료, 보고서 간행물, 브리핑을 제공하고, KOSIS(국가통계포털)을 통해 주요 통계표를 제공하고 있다. 통계설명자료는 통계개요, 조사관리, 표본설계 및 추정방법, 참고자료 등 조사기준시점을 기준으로 업데이트하여 최신화된 내용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마이크로데이터는 작성기관 및 위탁기관, 조사업체에서 생성·관리하고 있으나, 낮은 성희롱 경험률로 인해 이용자에게 마이크로데이터 제공시 세부적인 분석으로 인해 추정량의 신뢰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용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비밀보호 및 보안 측면에서 자료수집 단계별 응답자 비밀보호를 위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으며, 통계 공표시 응답자를 특정할 수 없도록 식별 정보를 제외하여 공표하고 있다. 또한, 자료의 접근 권한을 부여하여 자료 보안관리 지침을 적절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사점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통계자료간 조사기준시점이 동일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조사표 설계 및 유사통계 비교·분석 점검 결과에서도 제시되었으며, 통계작성 개념과 기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여 정성평가에 감점을 부여하였다.

마이크로데이터 품질 점검 결과, 마이크로데이터 일치율 점검 과정에서 일부 통계표가 수치 불일치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조사변수를 토대로 분석변수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KOSIS에 수정된 통계표가 제공되고 있으며, 공표 결과보고서도 수정되어 서비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마이크로데이터와 KOSIS 공표 통계표 간 일치율은 100%로 점검되었으나, 마이크로데이터와 공표하는 통계표 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여 정성평가에 감점을 부여하였다.

<표 6>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진단결과

| 필수진단항목 (품질차원) | 진단결과 | |
|-----------------------------------|---------------|--------|
| | 진단점수/ 배점점수 | 5점척도점수 |
| 1. 공표통계 해석방법 (관련성) | | 5/5 |
| 1-1. 주요 분류 수준별 세분화된 공표통계의 적절성 | 2/2 | |
| 1-2. 통계 공표의 적정성 검토 | 3/3 | |
| 1-3. 주요 통계표, 그래프 | 2/2 | |
| 1-4. 공표되는 통계의 해석방법 및 이용 시 유의사항 | 2/2 | |
| 1-5. 연도별(시계열) 통계결과 및 분석결과 관리 | 2/2 | |
| 2. 공표통계 일치성 (정확성) | | 5/5 |
| 2-1. 공표된 통계표 형식, 단위표기, 주석 등의 적절성 | 3/3 | |
| 2-2. 공표된 통계수치의 일치성 | 3/3 | |
| 3. 조사대상 기간/조사 기준시점과 공표 시기 (시의성) | | 5/5 |
| 3-1. 조사대상 기간/조사 기준시점과 통계 공표 시점 제시 | 1/1 | |

| 필수진단항목 (품질차원) | | 진단결과 | |
|---------------|---|---------------|--------|
| | | 진단점수/ 배점점수 | 5점척도점수 |
| | 3-2. 조사과정별 소요되는 기간의 적절성 | 2/2 | |
| | 3-3. 조사기준 시점과 통계결과의 최초 공표일 간의 차이 | 4/5 | |
| 4. | 공표일정 (정시성) | | 3/5 |
| | 4-1. 사전에 공개된 통계공표 일정과 공개방법 | 2/2 | |
| | 4-2. 통계공표 일정을 작성기관 홈페이지 등에 예고 | 2/2 | |
| | 4-3. 예고된 통계 공표일정 준수 | 0/5 | |
| 5. | 통계 작성방법의 비교성 ~ 7. 국가 간 비교성 (비교성) | | 4/5 |
| | 5-1. 통계의 개념 동일 여부 | 1/1 | |
| | 5-2. 분류체계 동일 여부 | 1/1 | |
| | 5-3. 조사 기준시점 동일 여부 | 1/1 | |
| | 5-4. 조사 실시 시기 동일 여부 | 1/1 | |
| | 5-5. 변경된 경우, 변경 전·후 비교분석 결과 | 0/2 | |
| | 6-1. 시계열 단절이 발생한 경우, 발생 원인과 변경된 자료 이용 시 고려사항 검토 | 2/2 | |
| | 7-1. 작성통계와 동일한 조사목적에 갖는 외국 통계 명칭과 개요 | 1/1 | |
| | 7-2. 작성통계와 동일한 조사목적에 갖는 외국통계와 직접 비교 가능한지 여부, 가능하지 않은 사유 및 이용 시 고려사항 등에 대한 검토 | 1/1 | |
| | 7-3. 통계자료를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국제기구명, 제공항목 등 제시 | 해당없음 | |
| 8. | 동일영역 통계와 일관성 ~ 10. 잠정치와 확정치의 일관성 (일관성) | | 5/5 |
| | 8-1. 작성통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작성목적/대상/항목을 가진 통계의 명칭과 개요 | 3/3 | |
| | 8-2. 동일영역 통계 간 작성목적/대상/항목 및 통계수치의 유사 차이점 및 이유, 이용 시 고려사항에 대한 검토 | 2/2 | |
| | 9-1. (작성주기가 다른 경우) 작성통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작성목적/대상/항목을 가진 통계의 명칭과 개요 | 해당없음 | |
| | 9-2. (작성주기가 다른 경우) 동일영역 통계 간 작성목적/대상/항목 및 통계수치의 유사 차이점 및 이유, 이용 시 고려사항에 대한 검토 | 해당없음 | |
| | 10-1. 두 수치가 차이가 나는 요인 및 이용 시 고려사항 검토 | 해당없음 | |
| 11. | 통계의 이용자 서비스 (접근성) | | 5/5 |
| | 11-1. 통계공표 방법의 다양화 | 3/3 | |
| | 11-2. 국가통계포털(KOSIS) 수록 | 2/2 | |
| 12. | 통계설명자료 제공 (명확성) | | 4/5 |
| | 12-1. 통계설명자료(메타정보, 방법론 보고서, 품질보고서 등에 대한 소재 정보) | 2/2 | |
| | 12-2. 국가통계포털(KOSIS) 통계설명자료 제공(통계개요) | 3/3 | |
| | 12-3. 국가통계포털(KOSIS) 통계설명자료 제공(조사관리) | 3/3 | |
| | 12-4. 국가통계포털(KOSIS) 통계설명자료 제공(표본설계 / 표본조사, 통계추정·추계 및 분석) | 3/3 | |
| | 12-5. 국가통계포털(KOSIS) 통계설명자료 제공(지수편제) | 해당없음 | |
| | 12-6. 국가통계포털(KOSIS) 통계설명자료 제공(참고자료) | 1/3 | |
| | 12-7. 간행물 또는 작성기관 홈페이지 등에 통계설명자료 제공(KOSIS 설명자료 외) | 3/3 | |
| 13. | 마이크로데이터 생성·관리 (정확성) | | 5/5 |

| 필수진단항목 (품질차원) | | 진단결과 | |
|--|--|---------------------|--------|
| | | 진단점수/ 배점점수 | 5점척도점수 |
| 13-1. 마이크로데이터 생성 방법 | | 2/2 | |
| 13-2. 마이크로데이터 관리 방법 | | 2/2 | |
| 14.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접근성) | | | 3/5 |
| 14-1.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 | 0/2 | |
| 14-2. 마이크로데이터에 대한 설명자료 제공 여부 | | 해당없음 | |
| 14-3. 마이크로데이터 미제공 사유 | | 3/3 | |
| 14-4. 마이크로데이터 제공/미제공 관련 내부 규정(지침) | | 0/1 | |
| 15. 마이크로데이터 일치율 (정확성) | | | 10/10 |
| 15-1. 마이크로데이터 점검용 자료 제출 | | 10/10 | |
| 15-2. 마이크로데이터 일치율 점검 결과 | | 0/-5 | |
| 16. 자료 수집, 처리 및 보관 과정의 비밀보호 ~ 18. 자료 보안 및 접근제한(관련성) | | | 5/5 |
| 16-1. 자료 수집과정에서 응답자 비밀보호를 위한 지침(법령, 규정)이나 조치 | | 2/2 | |
| 16-2. 자료 처리과정(입력, 전송, 처리)에서 응답자 비밀보호를 위한 지침(법령, 규정)이나 조치 | | 2/2 | |
| 16-3. 자료 보관과정에서 응답자 비밀보호를 위한 지침(법령, 규정)이나 조치 | | 2/2 | |
| 17-1. 공표자료에서 응답자 비밀보호를 위하여 취한 조치나 방법 | | 2/2 | |
| 17-2.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과정에서 응답자 비밀보호를 위하여 취한 조치나 방법 | | 해당없음 | |
| 18-1. 자료 유실, 유출, 훼손 등 예방하기 위한 자료보안 관련 지침(법령, 규정)이나 조치 | | 2/2 | |
| 추가진단항목 | | 추가점수 (진단점수/배점점수) | |
| 1-6. 성인지와 관련하여 공표하는 관련 통계 항목 등 | | 0.1/0.1 | |
| 3-4. 기간 단축 가능성 검토 | | 0/0.1 | |
| 7-4. 주요 통계내용을 국가 간 비교하여 통계표, 그래프 등으로 제시 | | 0/0.1 | |
| 10-2. 잠정치와 확정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또는 검토 | | 0/0.1 | |
| 10-3. 통계 자료 공표 후 오류가 발견되어 수정한 경우, 내용, 사유, 조치과정, 결과 등 기록·관리 | | 0.1/0.1 | |
| 11-3. 통계서비스 경로별 이용자 접속횟수나 마이크로데이터 제공실적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 결과 | | 0/0.1 | |
| 14-5. 이용자 맞춤형 통계산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요구방법, 소요시간 및 비용 등 명시 | | 0/0.1 | |
| 정성평가 | | -0.2 | |

- * 1.공표통계및해석방법: 10점 이상(5), 8~9점(4), 4~7점(3), 2~3점(2), 1점 이하(1)
- * 2.공표통계일치성: 5점 이상(5), 4점(4), 3점(3), 2점(2), 1점 이하(1)
- * 3.조사대상기간/조사기준시점과공표시기: 7점 이상(5), 6점(4), 3~5점(3), 2점(2), 1점 이하(1)
- * 4.공표일정: 8점 이상(5), 6~7점(4), 4~5점(3), 2~3점(2), 1점 이하(1)
- * 5.통계작성방법의비교성~7.국가간비교성: 10점 이상(5), 8~9점(4), 4~7점(3), 2~3점(2), 1점 이하(1)
- * 8.동일영역통계외일관성~10.잠정치와확정치외일관성: 11점 이상(5), 8~10점(4), 5~7점(3), 2~4점(2), 1점 이하(1)
- * 11.통계의이용자서비스: 5점(5), 4점(4), 2~3점(3), 1점(2), 0점(1)
- * 12.통계설명자료제공: 18점 이상(5), 14~17점(4), 7~13점(3), 3~6점(2), 2점 이하(1)
- * 13.마이크로데이터생성·관리: 4점(5), 3점(4), 2점(3), 1점(1), 0점(1)
- * 14.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 5점 이상(5), 4점(4), 3점(3), 2점(2), 1점 이하(1)
- * 15.마이크로데이터일치율: 실제 측정점수 반영(0~10점)
- * 16.자료수집처리및보관과정의비밀보호~18.자료보안및접근제한: 11점 이상(5), 8~10점(4), 5~7점(3), 2~4점(2), 1점 이하(1)
- * 정성평가: -1점 ~ +1점

6. 통계기반 및 개선 진단결과

성희롱실태조사는 여성가족부 용역사업으로 위탁기관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조사설계, 조사표 작성 및 분석을 수행하고, 표본설계 및 조사업무 제반사항, 기초분석 결과표는 조사업체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투입인력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과제 종료 후, 작성기관은 위탁기관과 조사업체로부터 조사기획서, 표본설계서, 조사 원자료, 보고서 등 조사과정에서 생성되는 자료를 모두 제출받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통계의 품질관리 및 개선을 위해 한계점 및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다음 주기 조사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과거 정기통계 품질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과제 및 이행 내역의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7> 통계기반 및 개선 진단결과

| 필 수 진 단 항 목 (품질차원) | 진단결과 | |
|---|---------------|--------|
| | 진단점수/ 배점점수 | 5점척도점수 |
| 1. 기획 및 분석 인력, 사업예산 (정확성) | | 4/5 |
| 1-1. 통계업무 담당 부서명, 업무별 담당인력 구성 및 통계업무 담당년수, 업무 관련 전공 여부 등의 기술 | 2/2 | |
| 1-2. 외부 위탁 또는 용역사업으로 통계 생산하는 경우, 수탁 기관의 관련 업무 인력구성 및 통계담당년수 등의 적절성 | 1/1 | |
| 1-3. 최근 1년간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통계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내역(교육구분, 과정명, 교육기관, 참여인원수) | 0/1 | |
| 2. 통계위탁 조사 (정확성) | | 5/5 |
| 2-1. 통계작성을 민간 위탁하여 작성하는 경우,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계획서 등 통계조사 민간위탁지침 반영 | 2/2 | |
| 2-2. 조사기획서(사업계획서) | 1/1 | |
| 2-3. (표본조사의 경우)표본설계서 및 예비표본을 포함한 명부 일체 | 1/1 | |
| 2-4. (전수조사의 경우) 모집단 명부 일체 | 해당없음 | |
| 2-5. 조사원 교육관련 사항(지침서, 사례집, 현장조사 수행지침 등) | 1/1 | |
| 2-6. 조사표 원본(또는 폐기 등에 관한 계획) | 1/1 | |
| 2-7. 조사결과 원자료(마이크로데이터) 파일, 파일설계서 | 1/1 | |
| 2-8. 에디팅(내용검토) 요령서 | 1/1 | |
| 2-9 현장조사 평가보고서(현장조사 진행상황, 응답률 현황, 표본교체 현황, 조사과정상 문제점, 특이사항, 대응방안 등) | 1/1 | |

| 필수진단항목 (품질차원) | | 진단결과 | |
|---|-------------------------|---------------------|--------|
| | | 진단점수/ 배점점수 | 5점척도점수 |
| 2-10. 자료처리 보고서(자료집계 및 분석 시 사용한 통계기법, 명령문, 변수에 대한 설명, 오류 유형별 원인 및 처리결과, 무응답에 대한 대체방법, 주요 항목의 정확성 지표 등) | | 1/1 | |
| | 2-11. 최종보고서(통계표 및 분석결과) | 1/1 | |
| 3. 통계 품질관리 및 개선 (관련성) | | | 5/5 |
| 3-1. 통계품질제고 가능성에 대한 검토 결과나 개선 계획 또는 추진실적에 대한 기록·관리 | | 2/2 | |
| 3-2. 최근 3년간 통계에 대한 학계, 언론, 국회 등 외부 지적 사례 내용, 관련 해명, 개선 등의 조치사항 | | 해당없음 | |
| 3-3. 과거 정기(수시)통계품질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 과제 관리 및 이행내역(중점관리과제) | | 1/1 | |
| 추가진단항목 | | 추가점수 (진단점수/배점점수) | |
| 1-4. 전체 및 주요항목, 활동별 사업예산 내역을 산출근거와 함께 제시 또는 예산 증액 필요성, 절감 가능성 등에 대한 분석·검토 | | 0.1/0.1 | |
| 정성평가 | | 0 | |

* 1. 기획 및 분석 인력, 사업예산: 4점(5), 3점(4), 2점(3), 1점(2), 0점(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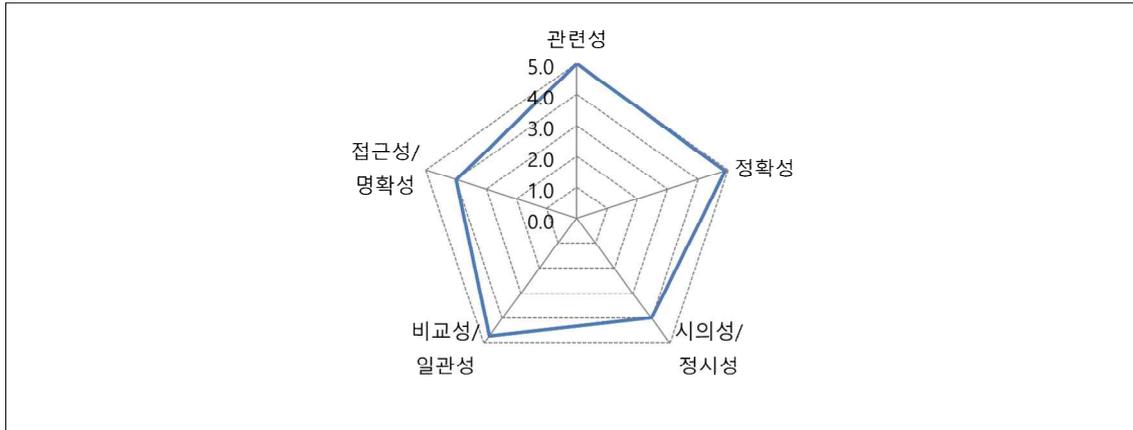
* 2. 통계 위탁 조사: 10점 이상(5), 8~9점(4), 4~7점(3), 2~3점(2), 1점 이하(1)

* 3. 통계 품질 관리 및 개선: 4점(5), 3점(4), 2점(3), 1점(2), 0점(1)

* 정성평가: -0.5점 ~ +0.5점

제 2 절 품질차원별 진단결과

통계작성절차별 진단을 토대로 성희롱실태조사의 품질차원별 점수를 도출한 결과, 관련성 척도 5.0점, 정확성 척도 4.9점, 시의성/정시성 척도 4.0점, 비교성/일관성 척도 4.7점, 접근성/명확성 척도 4.0점으로 진단되었다.



<그림 2> 『성희롱실태조사』 품질차원별 진단점수(방사형 그래프)

1. 관련성

관련성이란 이용자 관점에서 통계자료의 포괄범위와 개념, 내용 등에 있어서 이용자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정도를 말한다.

관련성 품질 차원에서 성희롱실태조사는 5.0점 중 5.0점으로 진단되었다. 본 통계는 통계작성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업무편람을 문서화하여 통계작성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설계와 관련하여 여러차례 이용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성희롱실태조사는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 가능한 수준에서 통계를 공표하며, 이용자가 통계 활용시 참고할 수 있도록 신뢰구간 및 RSE(상대표준오차)와 같은 표본오차와 주석을 적절히 제공하고 있다. 또한, 통계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한계점 및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과거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과제 및 이행내역 관리 등 관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정확성

정확성이란 미지의 참값과 추정된 참값과의 근접성에 관한 개념이다.

정확성 품질 차원에서 성희롱실태조사는 5.0점 중 4.9점으로 진단되었다. 성희롱실태조사는 업무 범위 및 역할을 고려했을 때 위탁기관과 조사업체 소속으로 구성된 담당 인력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위탁지침에 의해 조사 준비 및 진행, 결과물 산출까지 생성되는 자료 일체를 제출받아 관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조사는 조사표 개선과 관련하여 전문가 의견수렴 및 요구사항을 통해 조사표를 작성·변경하며, 조사표의 변경 전·후 및 사유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다. 표본설계와 관련하여 모집단의 정의가 명확하며, 사업체 단위 조사로 이와 조사단위가 동일한 전국사업체조사를 표본추출틀로 활용하고 있다. 표본설계는 외부 전문가에 의뢰하여 표본설계 방법, 절차 및 결과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표본설계내역서상 발견된 오류 사항에 대한 별도 확인 없이 수정하여 조사를 진행한 점, 이후 진단과정에서 표본설계내역서가 수정되는 등 표본설계의 보완 과정 및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어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는 공공기관 부문은 온라인조사로 진행되며, 민간사업체는 방문 면접조사, 조사표 유치조사, 이메일/팩스조사 등 응답자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조사원 채용 및 선발, 조사준비, 질의응답 및 조사관리 체계 구축 등 전반적인 자료수집 및 절차는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조사완료 후 사후검증 과정에서 진행현황 및 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결과물 관리 등 다소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처리에 앞서 공공기관 부문은 구축된 조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조사로 진행되어 자동으로 내검이 이뤄진다. 반면, 민간사업체 부문에서 입력시 활용되는 입력프로그램은 입력원에 의한 비표본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무응답률 수치와 산출산식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항목무응답은 조사의 특성상 무응답 자체로 의미가 커 별도로 대체하지 않고, 단위무응답은 표본대체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 예비표본으로 대체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중치 산출 및 과정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고, 추정하고자 하는 주요 모수에 대한 산식과 주요 항목별 표본오차를 제시하고 있다.

공표되는 KOSIS 통계표와 간행물 간 통계표 형식에서 차이가 발견되었으나 점검 과정을 통해 모두 수정되어 서비스되고 있으며, 점검용 마이크로데이터와 KOSIS 통계표는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점검되었다. 다만, 마이크로데이터 점검 과정에서 분석변수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데이터 및 공표용 결과보고서, KOSIS 통계표가 수정되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시의성/정시성

시의성이란 작성기준시점과 결과공표 시점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통계의 현실 반영도와 관련된 개념이며, 정시성은 예고된 공표시기를 정확히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개념이다.

시의성/정시성 품질 차원에서 성희롱실태조사는 5.0점 중 4.0점으로 진단되었다. 본 통계는 조사기준시점은 조사기준년도 8월 1일로 최근 결과 공표일인 2022년 6월 7일까지 약 11개월 미만으로 시의성은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21년 성희롱실태조사는 작성기관 홈페이지 내 ‘2022년 1분기’에 공표를 예고하였으나, 실제 공표한 일정은 2022년 6월 7일로 당초 예고했던 일정보다 약 2개월 이상 지연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비교성/일관성

비교성이란 시간 또는 공간이 달라도 통계자료가 동일한 개념, 분류 등을 기준으로 집계되어 서로 비교가 가능한지에 관한 개념이며, 일관성은 동일한 경제·사회현상에 대해 서로 다른 기초자료나 작성방법, 작성주기 등에 의해 작성된 통계자료들이 얼마나 유사한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비교성/일관성 품질 차원에서 성희롱실태조사는 5.0점 중 4.7점으로 진단되었다.

본 조사는 법률에 근거하여 성희롱 기본 정의 및 개념을 검토하고 본 실태조사에 적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일반인 이용자 측면에서 ‘성인지 감수성’ 과 같이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용어에 대한 설명 보완·추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성희롱실태조사와 유사한 목적을 갖는 국내·외 유사 통계 및 동일영역 통계에 대한 사전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통계 명칭과 개요, 비교가능성 등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항을 제공하고 있다. 통계작성 개념 및 분류체계, 조사기준시점은 2015년 통계작성 이후로 동일한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표본 규모의 확대 및 코로나19로 인해 매 조사주기마다 조사실시 시기가 변경되었으나, 변경 전·후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에 대한 검토사항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5. 접근성/명확성

접근성이란 이용자가 통계자료에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도에 관한 개념이며, 명확성은 통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정보제공 수준을 의미한다.

접근성/명확성 품질 차원에서 성희롱실태조사는 5.0점 중 4.0점으로 진단되었다. 본 통계는 보도자료, 결과보고서 등을 작성기관 홈페이지 및 KOSIS(국가통계포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요 통계 결과를 제공하고 있으며, 통계설명자료는 조사기준시점을 기준으로 업데이트하여 최신화된 정보를 이용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어 활용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본 통계는 조사기준시점은 조사기준년도 8월 1일이나, 통계설명자료 및 변경승인 과정에서 조사기준년도 7월 31일로 오기입 되어 있어 추후 통계자료간 동일한 기준시점을 작성 및 변경승인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마이크로데이터는 보유하고 있으나, 낮은 성희롱 경험률로 인해 세부단위로 분석할 경우 추정량의 신뢰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별도로 이용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다.

제 3 절 진단결과 종합표

『 성희롱실태조사 』 통계정보보고서를 기반으로 6개 통계작성절차별 품질 지표들을 진단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5개 품질차원별 진단 결과도 함께 도출하였다. 최종 진단결과 종합 점수는 다음과 같다.

<표 8> 진단결과 종합표

| 작성 절차 품질 차원 | 1. 통계작성 기획 | 2. 통계설계 | 3. 자료수집 | 4. 통계처리 및 분석 | 5.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 6. 통계기반 및 개선 | 평점 (5점척도) |
|----------------------|------------------|-------------|-------------|--------------------|------------------------------|--------------------|--------------|
| 관련성 | 5.0 | 5.0 | - | | 5.0 | 5.0 | 5.0 |
| 정확성 | | 5.0 | 5.0 | 4.8 | 5.0 | 4.5 | 4.9 |
| 시의성/ 정시성 | | | | | 4.0 | | 4.0 |
| 비교성/ 일관성 | | 5.0 | | - | 4.5 | | 4.7 |
| 접근성/ 명확성 | | | | | 4.0 | | 4.0 |
| 평점 (5점척도) | 5.0 | 5.0 | 5.0 | 4.8 | 4.5 | 4.7 | 4.8 |
| 가중치 적용 | 8.2 | 16.7 | 20.5 | 22.7 | 22.9 | 5.3 | 96.2 |
| 추가점수 (정성평가 포함) | -0.1 | 0.2 | 0.2 | 0.4 | 0.0 | 0.1 | 0.8 |
| 총계 | 8.1 | 16.9 | 20.7 | 23.1 | 22.9 | 5.4 | 97.0 |

* 평점은 세부진단항목에 대한 평균으로 작성절차별(또는 품질차원별) 평균과는 차이가 있으며, 가중치 적용 점수는 반올림 표기로 인해 합계수치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제 3 장 개선과제별 개선방안

지금까지 국가통계의 품질 향상 및 신뢰도 제고와 통계 이용자 친화적인 통계생산을 위하여 『성희롱실태조사』에 대한 품질진단을 실시하였다. 품질진단은 관련성, 정확성, 시의성/정시성, 비교성/일관성, 접근성/명확성의 5개 차원에 대해 통계정보보고서 활용 점검, 자료수집 체계 점검,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실태(FGI) 점검, 공표자료 오류 점검, 조사표 설계 및 유사통계 비교·분석 점검, 표본설계 점검, 마이크로데이터 품질 점검이라는 7가지 절차를 통해 수행하였다. 제3장에서는 각 진단에서 도출한 개별 개선과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1 절 통계설명자료 명확화

1. 현황 및 문제점

이용자가 처음 통계를 접할 때, 통계를 탐색하는 과정 중 하나로 통계명, 작성목적, 조사대상 등 통계개요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며, 통계명은 통계를 대표하는 중요한 항목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성희롱실태조사는 성희롱에 대한 인식과 실태를 파악하여, 성희롱 방지정책 수립 및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체의 성희롱 업무담당자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통계명과 통계작성 목적을 확인했을 때 ‘직장 내’ 성희롱 실태 파악이 아닌 ‘일상생활’에서의 성희롱 실태를 파악하는 통계조사로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실태 점검에서도 위 서술한 바와 같이 이용자가 처음 성희롱실태조사를 접했을 때, 일상생활 전반에서의 성희롱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로 인지하였다는 이용자 의견과 통계명 변경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2. 세부 개선과제 내용(실행방법 포함)

성희롱실태조사는 통계작성 목적과 조사항목을 확인한 결과, 성희롱 실태의 공간적 범주가 일상생활이 아닌 직장 내로 한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성희롱실태조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2조¹⁾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통계로, 통계명을 ‘직장 내 성희롱실태조사’로 변경할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개념이 포함되어 남녀고용평등법²⁾에 의거한 성희롱실태조사로

1) 양성평등기본법 제32조(성희롱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성희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통계를 처음 접하는 이용자의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통계개요상 작성목적은 직장 내 성희롱실태조사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임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안내할 필요가 있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실태조사 실시)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남녀차별개선, 모성보호, 일·가정의 양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시기,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 2 절 조사표 보완 및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성희롱실태조사의 조사표는 크게 성희롱 업무담당자용과 근로자용 2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사항목은 큰 틀에서 다음 표와 같다.

조사표에 구성된 조사항목들은 직장 내 성희롱 인식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조사대상자별 조사목적과 부합하는 문항으로 적절하게 작성되어 있다. 다만, 소문항 기준으로 응답해야 하는 문항 개수는 많은 편으로 응답자가 설문 응답시 상당한 피로감을 느낄 수 있어 문항의 간소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업무담당자(A) | 근로자(B) |
|----------|---|---|
| 조사 항목 | I. 성희롱 관련 업무 운영 현황(25) II. 성희롱 예방교육(10) III. 성희롱 업무 수행 및 정책수요(12) IV. 응답자 특성(11) | I. 직장 내 조직문화(2) II. 성희롱 예방교육(7) III. 성희롱 피해 경험(26) IV. 성희롱 전담부서 인지도 및 정책수요(16) V. 응답자 특성(7) |

* 괄호는 조사표의 문번호 기준으로 항목수를 기재하였으며, 문항별 소문항이 최소 2개에서 최대 20개까지 구성되는 문항이 있음

조사표 설계 점검 및 유사통계 비교·분석 점검 의견으로는 일반인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지 않은 용어에 대한 설명 보완 및 추가가 필요하며, 모호한 질문표현과 보기항목의 재구성, 설문의 흐름을 고려한 문항 배치, 문항 이동 지시문 보완, 문항의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성희롱실태조사의 조사기준시점은 조사기준년도 8월 1일이나, 통계 승인내역 및 통계자료에서의 조사기준시점은 조사기준년도 7월 31일로 작성되어 있어 다음 변경승인시 기준시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조사표 설계 전문진단 결과에서 동일한 개선의견이 도출되었다.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실태 점검에서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체는 성희롱 피해

발생시 대처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어 문항 설계에 이러한 부분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성희롱 피해 유형을 세분화할수록 성희롱 피해율이 증가하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므로, 어디까지를 성희롱 범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조사표 문항이 많아 응답자의 피로감이 높아 문항의 간소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문항을 삭제하고, 피해자 특성 및 실태를 파악하는 문항 추가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2. 세부 개선과제 내용(실행방법 포함)

성희롱실태조사는 지난 조사결과 및 조사항목, 최근 성희롱 관련 이슈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여러차례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수렴, 예비조사 실시 결과를 반영하여 조사표 보완 및 개선하고 있어 조사표 설계 및 변경 절차는 적절하다.

조사항목은 기존 조사결과와의 시계열 추이 분석이 가능하도록 큰 틀에서 문항이 유지되고 있으나, 급변하는 사회에서 다양한 성희롱 피해 유형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최근 발생한 성희롱 피해 유형 및 사회적 이슈 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사표를 작성해야 한다.

2024년 성희롱실태조사의 조사표 작성시 조사표 설계 및 유사통계 비교·분석 점검 결과와 이용자 FGI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함께 검토하여 변경승인 등의 절차를 통해 반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 3 절 민간사업체 부문 입력시스템 구축 검토

1. 현황 및 문제점

성희롱실태조사 중 공공기관은 온라인조사, 민간사업체는 방문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나, 응답자 요청시 조사표 유치조사, 이메일 조사 등 다양한 조사방법을 병행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온라인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응답자가 응답하는 결과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전송되며, 기본 로직 및 내검사항, 자료코딩 등이 자동적으로 수행된다. 반면, 민간사업체는 대부분 조사표에 응답을 기입하므로 별도로 논리 내검 및 입력, 자료처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조사업체에서 활용하는 입력 프로그램은 입력값 범위 설정을 통해 허용값 외 응답이 불가능하게 하거나, 기본 문항 이동 로직 설정 기능이 있지만, 설정값 범위 내에서 응답 오류가 발생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입력원 교육을 위한 입력매뉴얼을 문서화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세부 개선과제 내용(실행방법 포함)

민간사업체 부문의 입력시스템을 공공기관 대상 조사용으로 구축한 온라인조사 시스템을 기반으로 입력용 페이지를 구축하여 입력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기 구축된 조사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낮은 비용으로 구축이 가능하다. 또한, 내검매뉴얼 지침에 따른 기본 로직 및 내검, 자료코딩 등이 자동으로 점검되고, 입력원의 입력 오류에 의한 비표본오차 감소 효과가 있으며, 조사표와 동일한 화면으로 구현되므로 시각적으로 응답 내용을 쉽게 입력 가능하고, 별도로 입력매뉴얼이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제 4 절 통계 공표일정 현행화

1. 현황 및 문제점

2018년 기준 성희롱실태조사의 결과 공표시 2021년 기준 결과 공표시기는 ‘2022년 1분기’ 로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내 사전 예고하였으나, 실제 공표한 일정은 2022년 6월 7일에 공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전에 예고한 공표 일정보다 약 2개월 이상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 공표일정을 준수하지 못한 원인은 통계공표 일정을 너무 이른 시점에 공지했기 때문이다.

2. 세부 개선과제 내용(실행방법 포함)

성희롱실태조사의 조사실시년도에 통계작성 일정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공표 가능한 일정계획을 세우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³⁾]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사진행 시 공지사항에 ‘조사실시 협조 안내’ 에 통계 결과 공표 일정을 포함하여 공지한다면 통계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3) 여성가족부 사전정보공표 안내 URL(http://www.mogef.go.kr/io/ind/io_ind_s005.do?mid=old919)

제 5 절 업무 수행 단계별 관리체계 마련

1. 현황 및 문제점

성희롱실태조사는 위탁기관(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조사설계, 조사표 작성 및 분석 및 결과보고서 작성을 수행하고, 조사업체(한국갤럽)에서 표본설계 및 조사업무 제반사항, 기초분석 결과표를 작성하고 있다. 조사기획 및 조사준비, 조사진행, 데이터 처리 및 분석, 결론 도출까지 일련의 과정이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다만, 품질진단 과정에서 몇 가지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보완 및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표본설계내역서상 발견된 오류 사항에 대해서 표본설계자에게 별도 확인 없이 담당 연구진이 수정하여 조사를 진행하였고, 이후 진단과정에서 표본설계 내역서가 수정되는 등 표본설계의 보완 과정 및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두 번째, 조사관리의 일환으로 조사완료 후, 조사원별 약 30%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진행현황 및 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결과물이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데이터 일치율 점검에서 조사변수를 토대로 분석변수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데이터 및 공표용 결과보고서, KOSIS 통계표가 수정되었다.

2. 세부 개선과제 내용(실행방법 포함)

성희롱실태조사는 과제 수행과정에서 보고 및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기존 보고 및 관리체계를 좀 더 강화하여 위탁기관과 조사업체 간 주요 문제 사항 및 결과물 등을 함께 확인 및 검토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정확성 확인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업무담당자의 성별/연령대/근속년수, 민간사업체-근로자의 성별/연령대/고용형태 등과 같이 조사대상 및 응답자별 일반현황 등 세부단위로 분석한 기초 통계표를 작성하여 검토한다.

제 6 절 개선과제 요약

지금까지 제시한 개선과제를 요약한 내용은 <표 9>와 같다.

<표 9> 개선과제 요약

| 단계 | 개선과제 | 실행방법 | 기대효과 | 관련 품질차원 | 출처 | 비고 (예상문제점 등) |
|----|-------------------------------|--|-------------------------------------|-------------|--|------------------|
| 단기 | 통계설명 자료 명확화 | - 통계설명자료 중 작성목적 및 조사대상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안내 실시 | - 이용자의 사전 통계 파악 및 활용도 제고 | 관련성 | FG, (1.통계작성 기획) | |
| | 조사표 보완 및 개선 | - 2024년 기준 조사표 작성시, 조사표 설계 점검결과 및 이용자 FG 의견 사항을 검토 및 반영 - 성희롱 피해 유형을 구체화하고, 최신 성희롱 실태 변화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 구성 검토 | - 조사의 정확성 및 명확성 제고 | 정확성/ 명확성 | 조사표 설계 및 유사통계 비교 분석 점검, FG, (2통계설계) | |
| 중기 | 민간사업체 부문 입력시스템 구축 검토 | - 공공기관 온라인조사 시스템을 활용하여 민간사업체 입력용 페이지 구축 검토 | - 논리내검 및 자료처리의 자동화로 정확성 제고 | 정확성 | (4.통계처리 및 분석) | |
| | 통계 공표일정 현행화 | - 조사실시년도에 공표 일정을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사전 예고 - 조사실시 협조 안내 공지에 통계결과 공표 일정 포함 | - 통계의 정시성 제고 | 정시성 | (5.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 서비스) | |
| | 업무 수행 단계별 관리체계 마련 | - 위탁기관 및 조사업체의 기존 보고 및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문제점 및 결과물을 상호 간 크로스체크 실시 | - 단계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정확성 제고 | 정확성 | (3.자료수집) | 담당자 업무량 증가 |

※ 단기 : 1년 이내, 중기 : 1~2년, 장기 : 2년 이상

제 4 장 발전전략 및 중장기 로드맵

1. 통계설계 개선 관련 사전 연구 수행

성희롱실태조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2조에 의거하여 3년 주기로 공공부문 및 민간사업체의 업무담당자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품질진단 과정에서 통계명과 조사대상의 미스매치, 조사대상 범위, 근로자 응답자의 대표성 문제, 선정한 조사방법에 따른 실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본 통계는 통계설계와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통계는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 및 조사상의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첫 번째, 통계명과 통계작성 목적 및 조사대상, 구성된 조사항목은 일상생활이 아닌 직장 내 성희롱 실태를 파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성희롱 실태의 공간적 범주가 직장 내로 한정되어 있어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개념과 유사하여 성희롱실태조사 실시 근거법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본 조사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성희롱 피해는 상대적으로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에서 성희롱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피해 상황을 쉽게 은폐하거나 2차 피해가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를 포함하여 성희롱 실태 파악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다.

세 번째, 본 조사는 응답업체의 업무담당자-근로자 모두 응답해야 조사가 완료되는 페어조사로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페어조사는 조사의 난이도가 높고, 조사기간과 비용이 큰 조사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네 번째, 업무담당자에게 근로자 선정 지침과 조사 진행 원칙을 안내하고 있다. 업무담당자가 근로자 선정 지침에 따라 근로자를 랜덤하게 선정해야 하지만 조사 협조 요청에 따른 부담감으로 인해 근로자를 친분에 따라 선택적으로 선정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표본 사업체 내 근로자에 대한 정보 확보가 불가하여, 근로자 선정에 대한 표본 대표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표 10>과 같이 조사대상 범위 확대 및 조사방법의 변경, 조사주기 조정을 고려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3년 주기의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체의 업무담당자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한 성희롱실태조사를 홀수년도는 사업체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실태를 파악하고, 짝수년도는 가구 조사로 진행하여 직장 내 또는 일상생활에서의 전반적인 성희롱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변경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0> 통계설계 변경(안)

| | |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 조사주기 |
|----|------|---|------|
| 현재 | | 사업체 내 업무담당자-근로자 페어조사 | 3년 |
| 개선 | 방안 1 | 업무담당자 : 사업체조사 / 근로자 : 사업체조사 * 독립적으로 사업체를 추출 | 3년 |
| | 방안 2 | 업무담당자 : 사업체조사 / 근로자 : 가구조사 * 가구조사의 경우, 경제활동인구 파악 후 조사 | 2년 |
| | 방안 3 | 홀수년도 : 사업체를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실태 파악 짝수년도 : 가구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성희롱 실태 파악 | 1년 |

이와 같이 조사대상 범위, 조사방법 및 조사주기 변경 등 조사설계를 변경시 가장 큰 문제점은 기존 실태조사 결과와 시계열 단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조사결과 도출을 위해 적정 표본수가 확대될 경우, 필요 예산 확보가 불가피할 것이다.

큰 틀에서 통계설계의 변경은 신규 통계를 개발하는 것처럼 큰 사안이므로, 조사대상 정의 및 조사방법 결정, 적정한 표본규모 산정, 이에 따른 필요 예산 규모, 조사 결과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토 등을 위한 별도의 사전 연구를 통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조사의 효율성 증대 및 정확성 제고, 통계작성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차원별-관련성, 정확성, 통계작성절차별-1.통계작성 기획, 3.자료수집, 자료수집 체계 점검)

2.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가능성 검토

성희롱실태조사는 통계작성 승인 후 총 3번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낮은 성희롱 경험률로 인해 이용자에게 마이크로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의 연구목적에 따라 지역(시도)별, 세부 업종별, 규모별 등 세부적인 통계분석을 할 경우, 응답업체가 특정되거나, 신뢰하기 어려운 결과가 도출될 수 있어 이용자에게 마이크로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다만, 통계 이용자의 지속적인 마이크로데이터 제공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으므로, 마이크로데이터 제공에 대한 기준 및 범위 등 지침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용자에게 마이크로데이터의 서비스 제공 여부 판단을 위해 과거 3개년에 대한 데이터를 검토하여 외부에 공개 가능한 범위 설정이 필요하며, 원자료에서 응답 사업체 또는 응답자 개인의 식별 가능한 변수를 삭제하거나, 응답값의 범주화 등 필수적으로 비식별화 작업 후 마이크로데이터를 서비스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가 마이크로데이터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변수설명서, 유저가이드, 자료 분석시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메타자료를 함께 제공한다면 향후 통계의 홍보 및 이용자 증가로 인한 통계 활용도 제고, 통계의 품질 개선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차원별-접근성, 통계작성절차별-5.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FGI, 마이크로데이터 품질 점검)

붙임1

자료수집 체계 점검 결과 (조사통계용)

| | |
|---------|--------------|
| 통 계 명 | 성희롱실태조사 |
| 승 인 번 호 | 154018 |
| 작 성 기 관 | 여성가족부 |
| 면 접 일 시 | 2023년 4월 10일 |
| 연 구 원 | 정미량 |
| 연구보조원 | 박연진 |

제1부 **점검계획**

1. 점검 방법

- 점검 목적
 - 자료수집 체계 점검은 자료가 정확히 수집되었는지, 절차적 오류는 없는지 등에 대한 점검으로 자료수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료수집 오류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자료수집 과정에서의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
- 점검 내용
 - 조사시행 전 조사 준비과정(조사원 모집, 조사원 교육, 조사 홍보, 조사 소요기간, 조사 기간의 부족 여부, 하루 평균 조사 수, 조사시행 절차, 응답자들의 질의 사항 해결방법, 무응답 발생 항목, 자료 입력 방법, 조사 완료된 후 조사표 관리 방법, 조사 관련 점검 및 품질 향상 체계 유무 등
- 점검 방법
 - 사전에 미리 자료수집 체계 점검을 알리고, 자료수집 체계 점검 질문지를 이메일로 배포한 후, 조사업체를 방문하여 근거자료 확인
- 점검 대상
 - 위탁업체의 조사기획자 및 관리자
 - 용역업체의 조사기획자와 조사업체의 조사기획자, 조사관리자, 조사원

2. 면담(현장방문) 일정

| 일시 | 면담대상자 | 장소 | 주요 점검사항 |
|------------|---------------|------|---|
| '23.04.10.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000 | 한국갤럽 | 자료수집 체계 전반, 자료관리 등 |
|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000 | | |
| | 한국갤럽 000 | | 조사 기획 및 일정 계획, 자료수집 체계 전반, 자료관리, 조사 준비 및 관리, 조사 홍보 등 |
| | 한국갤럽 000 | | |
| | 한국갤럽 000 | | |
| | 한국갤럽 000 | | |
| | 한국갤럽 000 | 조사실시 | |

제2부 점검 결과 요약

| 점검 자료목록 | 문제점 | 개선 의견 |
|-----------------|---|--------------------------------|
| 현장조사 관리 및 조사지침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특성상 민감한 주제이며, 폐어조사로 진행되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응답자의 거절률이 높아 조사진행 난이도가 높은 편임 | 조사 방법의 검토 |
| 사후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완료 후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결과물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음 | 사후검증 절차를 마련하여 조사의 신뢰도 및 정확성 제고 |

제3부 자료수집 체계 점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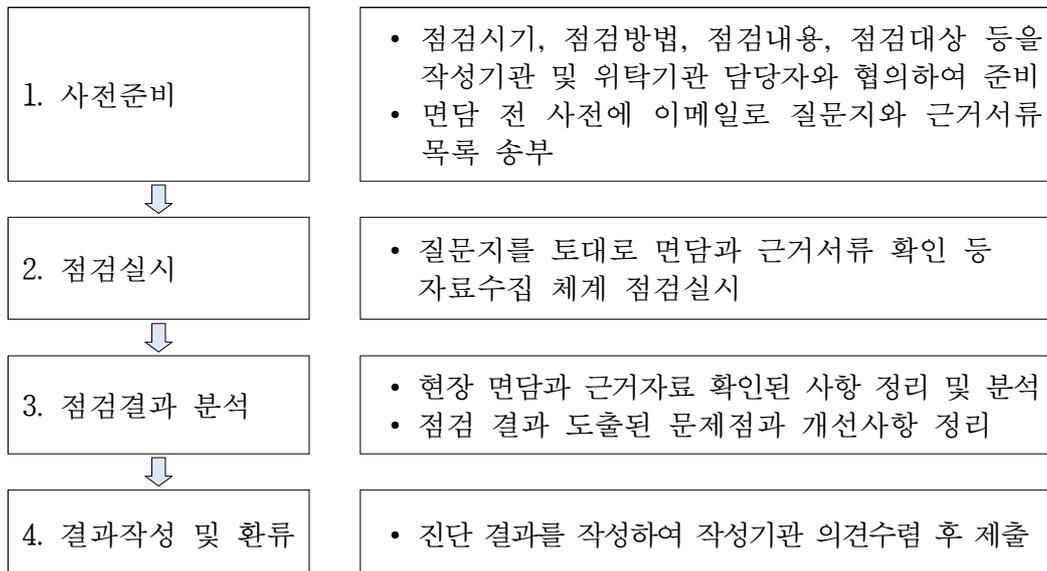
1. 점검 개요 및 설계

가. 점검 개요

자료수집 체계 점검은 자료수집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료수집 오류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점을 도출하여 자료수집 과정에서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다. 자료수집 과정의 정확성, 체계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성희롱실태조사 위탁기관(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및 용역업체 소속(한국궤협)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질문지를 배포하였고, 조사업체를 방문하여 자료수집 체계 점검을 실시하였다. 또한, 통계정보보고서 작성된 내용 중 작성기관의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작성기관에 추가 근거서류를 요청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

나. 점검 설계

자료수집 체계 점검은 크게 사전 준비에서부터 결과작성 및 환류까지 다음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2. 점검 결과

가.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성희롱실태조사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업무담당자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성희롱에 대한 인식과 실태 및 관련 제도의 운영현황 등을 파악하여 성희롱 방지정책 수립 및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된다. 본 통계는 ‘① 조사 기획 및 준비 → ② 조사원 선발 및 교육 → ③ 조사 실시 → ④ 최종 마무리’ 절차를 통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① 조사 기획 및 준비

성희롱실태조사는 여성가족부(작성기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위탁기관)에서 조사표 및 보도자료, 연구자료 등 지난 조사결과, 성희롱 관련 이슈사항을 수집·분석하여 조사표를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조사항목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여러차례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고, 사전조사 및 조사원 간담회를 통해 응답 소요시간 측정, 응답자의 이해 및 해석상 오인지 문항 확인, 설문 문항의 적절성 등 의견을 취합하여 조사표 수정·보완을 진행 후 최종 조사표를 작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종 확정된 조사표를 기반으로 온라인 조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조사실시 전 조사대상 업체에 협조공문 및 안내 리플렛, 설문조사 URL 및 일반직원 선정지침 등을 발송하여 조사 홍보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조사원 선발 및 교육

성희롱실태조사는 조사위탁기관인 한국갤럽의 고정 조사원 중 경력 3년 이상, 내부 평가등급 A등급 이상, 성희롱실태조사 또는 사업체 및 공공기관 대상으로 한 조사 유경험자 조사원을 선발하고 있다. 조사원은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에

따라 채용하는 조사원 규모의 차이가 있는데, 공공기관 대상 조사를 위한 전화조사원 20명, 민간사업체 대상 조사를 위한 면접원 100명을 채용하였고, 코로나19 감염 또는 조사 진행현황에 따라 추가 투입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조사원 19명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의 특성상 조사표의 민감 문항과 다소 복잡하고 많은 문항을 포함하고 있어 조사원 교육시 응답 업체의 설득 방법, 조사진행시 유의사항 등을 포함하여 조사원 교육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된다. 조사원 교육은 위탁기관 및 조사업체 소속 연구진이 조사개요 및 조사진행 원칙 및 유의사항, 조사표 내용 등 하루 2시간 내외로 교육을 진행하였고, 전국단위 조사 특성상 서울, 대전, 부산지역 등 7개 권역에서 일주일에 걸쳐 대면 집체교육을 실시하였다.

③ 조사 실시

성희롱실태조사는 조사대상에 따라 조사방법의 차이가 있는데, 공공기관은 온라인으로 조사가 진행되며, 민간사업체는 방문면접조사, 조사표 유치조사, 이메일/팩스 조사 등 응답업체에서 선호하는 조사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는 큰 틀에서 응답업체의 성희롱 관련 업무담당자 1명과 소속 근로자 6~10명을 선정하여 업무담당자-근로자 페어로 조사를 진행하며, 페어로 조사가 진행된 경우 조사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근로자 선정과 관련해서 조사대상 업체 컨택시 업무담당자 정보를 수집하여 조사 안내 시 협조공문과 근로자 선정지침을 함께 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는 당초 8월~10월로 약 3개월간 실사기간으로 계획하였으나, COVID-19로 인하여 조사대상 업체의 비협조로 인해 9월~이듬해 1월까지로 당초 계획했던 조사기간보다 2개월 이상 소요되었다.

조사기간은 당초 약 3개월로 계획하였을 때, 근무일 기준으로 60일간 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하여 조사원당 공공기관은 평균 38.5개 기관, 민간사업체는 평균 17.6개사 진행을 목표로 배부하였으며, 업무담당자와 근로자까지 조사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271부, 민간사업체는 123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은 사전컨택 및 온라인조사 URL 전달, 근로자 협조 독려 등 평균

1~3회 접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사업체는 사전컨택 및 업무담당자 설득, 조사방법 안내, 조사표 유치 및 회수 등으로 인해 최소 3회 이상 방문하여 조사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사업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조사원 방문 거절과 비대면 조사를 위하여 조사표 유치조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 완료 시 업무담당자는 약 2만원 상당의 상품권, 근로자는 마스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④ 최종 마무리

조사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근로자는 개별 연락처를 수집하고 있지 않아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사후검증을 진행하였다. 조사가 완료된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체의 업무담당자 2,530부 중 조사원별 30%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767명을 대상으로 사후검증을 진행하였다. 검증 내용은 실제 조사여부, 조사방법 및 장소, 사업체(기관) 정보, 답례품 수령 여부 등의 내용을 전화조사를 통하여 검증하였으며,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지역 조사관리자에게 전달하여 재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이때 조사원의 소명 내용이 적절하지 않거나, 허위조사, 부실조사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 조사표 폐기 또는 재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후검증과 관련된 근거서류를 요청하였으나 검증 결과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문제점

성희롱실태조사는 조사특성상 민감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조사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조사방법에 있어서도 업무담당자-근로자 페어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조사진행시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조사 진행시 사전에 업무담당자에게 선정기준을 안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근로자 선정기준에 따라 근로자를 랜덤하게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해야 하나, 대부분 업무담당자에게 일임하고 있어 암묵적으로 업무담당자와

친분이 있는 근로자가 선택되어 조사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실태조사는 응답 거절, 접촉 실패 사유, 접촉 시도 횟수 등 세부 정보에 대한 파라미터를 보유 및 관리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조사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조사완료 후 일부 사후검증 절차에 있어서 관리가 다소 미흡하여 이에 대한 관리체계 방안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주요 개선의견

(1) 조사 방법의 검토

성희롱실태조사는 조사 특성상 민감한 주제와 조사방법에 있어서 업무담당자-근로자 페어로 조사되고 있어 조사의 난이도가 높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페어조사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조사방법이다.

또한, 업무담당자가 근로자 선정(소개)시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있으며, 랜덤하게 선정하는 것이 아닌 친분에 따라 선정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근로자는 본인이 응답한 조사표가 직장 내 누군가에게 오픈될 우려로 인해 조사 거절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는 직장내 성희롱 실태를 파악한다는 측면에서 업무담당자가 응답하는 것이 조사의 목적과 부합할 것이다. 다만, 조사의 목적과 난이도를 고려했을 때, 근로자 조사의 필요성, 페어조사로 진행해야 하는지 조사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사후검증 절차 마련

성희롱실태조사는 조사관리의 일환으로 조사완료 후, 조사원별 약 30%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본 조사는 사후 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진행현황 및 결과 등이 기록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향후 전반적으로 조사관리에 있어서 사후 검증 실시 결과까지 기록하고, 관련 절차를 마련하여 조사의 신뢰도 및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다. 근거자료 확인 목록

| [매뉴얼 III자료수집 진단항목] | 근거자료 목록 | 확인결과 |
|------------------------|---|--|
| 1. 조사방법 | · 조사 응답 비율, 응답자 특성 · 분석결과 자료 | · 2021년 성희롱실태조사 보고서 확인 |
| 2. 조사원 채용 및 처우 | · 채용 과정 및 계획 문서 | · 조사기관 홈페이지, 조사원 채용 가이드라인 확인 |
| 3. 조사원 교육훈련 | · 조사원 교육자료 · 교육 세부일정 및 계획/결과 · 보안 교육 및 서약서 · 조사원 평가 결과 · 재교육 일정 등 | · 조사원 교육자료, 조사지침서, 교육일정 파일, 보안서약서 확인 · 조사원 평가 결과 자료 부재 · 재교육 미실시 |
| 4. 조사원 업무량 | · 응답소요시간, 조사난이도, 조사기간 등 참고자료 | · 파라미터 확인 |
| 5. 조사업무 흐름도 | · 조사업무 흐름도 관리 | · 조사기관 운영체계 자료 확인 |
| 6. 조사준비 및 준비조사 | · 홍보 내역 · 응답자 사전 통지서 · 조사구 또는 명부 보완내역 · 조사 지침서 | · 홍보리플렛 확인 · 응답자 사전통지 공문 확인 · 조사 명부 보완 파일 확인 · 조사지침서 확인 |
| 7. 조사항목별 조사방법 | · 문항별 응답 요령 · 항목별 내검지침(추가 확인) | · 내검매뉴얼, 에디팅 가이드 확인 |
| 8. 현장조사 관리 | · 현장조사 관리 지침 · 현장조사 파라미터 세부자료 (민간사업체-대면, 비대면 조사비율, 응답 거절 또는 접촉 실패 사유 등) · 실시지도(지도점검) 결과자료 | · 조사기관 운영체계 자료 확인 · 현장조사 파라미터 자료 확인 · 작성기관 실사 관련 대응 지침 확인 |
| 9. 조사 질의응답 체계 | · 현장조사 질의 응답 체계 운영방법 · 주요 질의 응답, 오류사례 · 현장조사 사례집 | · 조사기관 운영체계 자료 확인 · 성희롱실태조사 조사 홈페이지 확인 · 현장조사 사례집 파일 확인 |
| 10. 조사(또는 응답) 대상 | · 기억응답에 활용된 참고자료 | · 없음 |
| 11. 무응답 대처 | · 항목, 단위 무응답 대처 지침, 사례 | · 표본설계내역서 확인 · 무응답 대처관련 메일 확인 |
| 12. 표본대체 | · 표본대체 기준 및 방법 · 표본대체 목록 현황 자료 | · 표본설계내역서 확인 · 파라미터 확인 |
| 13. 사후조사 | · 모니터링 실시 계획자료 · 모니터링 대상 명부, 표본선정내역, 질문지, 검증항목 및 오차범위 등 · 모니터링 결과자료 및 사후 조치 사례 | · 사후조사 관련 메일 확인 · 사후조사 결과 자료 관리 미흡 |
| 14. 행정자료 활용 목적 및 내용 | · 행정자료 활용 기획서 · 행정자료 연계현황 | · 해당없음 |
| 15. 활용 행정자료의 특성 및 입수체계 | · 행정자료활용 기획서 (투입행정자료의 메타데이터) · 행정자료 입수내역 · 행정자료 입수지침(공문확인 등) | · 해당없음 |

붙임2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실태 점검 결과

| | |
|---------|--------------|
| 통 계 명 | 성희롱실태조사 |
| 승 인 번 호 | 154018 |
| 작 성 기 관 | 여성가족부 |
| 면 접 일 시 | 2023년 5월 23일 |
| 연 구 원 | 정미량 |
| 연구보조원 | 설민지 |

제1부 회의 준비 및 진행

I. 회의 준비과정

| 참석자 선정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자 선정방법 - 작성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이용자 명단과 관련 학과 및 연구기관 등 유관기관에서 성희롱실태조사를 이용한 대상자를 선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자 현황 - 정책고객 (기업경영정책수립자 포함) _____ 명 - 교수 _____ 명 - 연구원 _____ 5 명 - 대학원생 또는 대학생 _____ 명 - 일반인 _____ 명 - 기타() _____ 명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 장소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요 시간 2시간 | | |

II. 회의 진행

| 회의 진행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질문지와 참고자료를 배포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회의를 진행했음. 보조적으로 조사표, 통계설명자료 KOSIS 결과표 등을 활용하여 구체적 의견이 도출되도록 하였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자 : 정미량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자 : 설민지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찰자 : 김동성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음 · 녹화 여부 : 녹음 | | |

제2부 회 의 록

| 작성절차별 | 이용자 요구사항 | 개선 의견 |
|----------------------|--|--|
| 1. 통계작성 기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통계는 '직장 내' 성희롱 실태 및 인식을 파악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통계명은 직장 내가 아닌 일상생활에서의 성희롱 실태 파악으로 인지하는 등 오해의 소지가 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태 조사의 목적 및 조사대상 등을 포괄할 수 있는 통계명으로 수정 필요 |
| 2. 통계설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실시년도 마다 조사대상 및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나, 소규모 업체에 대한 실태 파악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 향후 30인 미만 사업체를 포함하여 소규모 업체에서의 성희롱 실태 파악이 필요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 범위 및 규모 확대에 대한 사전 연구 필요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희롱 피해 사례 등 조사 문항 특성상 민감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응답자의 솔직한 응답을 기대하기 어려움 - 업무담당자와 일반직원 조사표의 문항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으며, 조사대상자별 설문 문항의 차이가 필요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담당자 및 일반직원 응답대상자별 조사항목 보완 및 삭제 등 조사표 설계 검토 |
| 5.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이크로데이터의 제공 필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 식별 정보를 제외 또는 응답값을 범주화하여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

제3부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실태 점검 결과

1. 점검 개요 및 설계

가. 점검 개요

통계에 있어 이용자의 다양한 필요성을 충족시키고 만족도를 제고시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통계 이용자는 통계로부터 기대하는 정보를 충분히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품질이 우수한 통계는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많이 가진 통계이다. 따라서, FGI를 통해서 통계이용자가 통계자료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살펴보고 품질진단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품질진단 시 FGI를 실시하는 목적은 통계작성기관에서 간과하고 있는 통계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통계작성 및 자료제공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나. 점검 설계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실태 부문의 진단은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 정도를 측정하는데 이를 위하여 성희롱실태조사 관련 이용자로 구성된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s)을 통하여 통계에 대한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한다. 표적집단면접(FGI)은 소집단을 형성하여 특정 주제에 대해 계획적이면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형태를 말한다.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작성된 예비 질문지와 관련 통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리한 자료를 이메일을 통해 참석자에게 송부하고 회의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성희롱실태조사에 대한 조사표 및 통계간행물을 보조적으로 이용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도출하는데 활용하였다.

2. 점검 결과

가. 현황 및 이용자 요구사항

(1) 현황

성희롱실태조사는 사회적 환경변화 등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실태 및 변화 파악, 관련된 제도와 시스템의 운영 현황 등을 확인하여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작성되고 있다.

본 조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2조에 의거하여 2015년부터 3년마다 수행되고 있으며 조사대상 및 조사 규모의 확대가 점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한, 성희롱과 관련하여 미투 확산, 2차 피해 양상 파악 등 사회의 변화에 따라 조사문항 변경 및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성희롱실태조사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체에 근무하는 업무담당자 1명과 근로자 5~10명(종사자 규모에 따라 조사대상인원 차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성희롱 실태 및 정책 수요 파악, 성희롱 대응 관련 업무 기획, 법률 개정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2) 이용자 요구사항

이용자가 처음 성희롱실태조사를 접했을 때, 구체적인 통계 개요를 확인하기 전에는 통계명을 보고 일상생활에서 경험했던 성희롱 인식 및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로 오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조사대상 선정에 있어서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에서 성희롱 피해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점에서 조사대상을 30인 미만 사업체로 확대하여 성희롱 실태 및 현황 파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업무담당자용과 일반직원용 조사표는 중복된 항목이 많고, 성희롱과 관련된 민감한 항목이 있어 성희롱 피해 실태와 관련하여 부정확하게 응답할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조사항목의 간소화 및 조사대상자별 불필요한 문항 삭제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실태조사는 외부에 마이크로데이터를 서비스하지 않아 본 통계에 기반한 다방면의 연구 사례가 없고, 작성기관에서 제공하는 통계간행물을 참고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 이용자가 통계 데이터를 직접 분석하여 연구를 진행하면서 통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마이크로데이터 제공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주요 개선의견

(1) 통계명 변경 검토

성희롱실태조사를 처음 접하는 이용자는 단순히 통계명만을 확인했을 때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성희롱 인식과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로 오해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 성희롱실태조사는 직장 내 성희롱 인식과 실태를 파악하여 사업체의 성희롱 예방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통계를 생산하므로, 조사대상과 통계작성 목적을 고려했을 때 ‘직장 내 성희롱실태조사’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2) 조사대상 범위 확대에 대한 검토

성희롱실태조사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다만, 30인 미만의 사업체에서 성희롱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성희롱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조사대상 범위의 확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다. 조사대상 확대 검토 시 음식 숙박업, 도소매업 업종과 종사자 수 규모를 함께 고려하거나,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성희롱 실태 및 현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조사대상 범위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

(3) 응답대상자별 조사항목의 보완 및 개선

성희롱실태조사의 경우, 성희롱 횟수, 조치사항 등 구성된 조사표의 문항 특성상 민감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응답자는 응답자 본인이 노출됐을 경우 소속된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 실제 발생한 성희롱 실태보다 과소하게 응답하는 등 부정확하게 응답하거나, 응답 거절 등 단위무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성된 조사항목은 내용이 방대하여 설문조사 응답 부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업무담당자용 조사표에서 성희롱 실태 중 중요도가 낮은 문항을 삭제하고, 사업체에서 발생했던 성희롱 피해에 대한 실태 및 대처방안, 성희롱 예방책 등 사실에 근거한 조사문항으로 구성하여 응답의 피로도를 경감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검토

성희롱실태조사는 국가통계포털(KOSIS) 수록 및 분석보고서 간행물 등을 통해서 이용자에게 통계 결과를 제공하고 있으나, 성희롱 피해율이 다소 낮은 점을 고려하여 별도로 마이크로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계 활용성의 제고를 위하여 지역 변수, 업종 세세분류, 응답자 연령대 등 응답 사업체 또는 응답자 개인의 식별 가능한 변수를 삭제하거나, 응답값의 범주화 등을 통해 비식별화 작업 후 마이크로데이터를 제공한다면 향후 통계의 홍보 및 이용자 증대, 통계의 품질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붙임3

공표자료 오류 점검 결과

| | |
|---------|---------|
| 통 계 명 | 성희롱실태조사 |
| 승 인 번 호 | 154018 |
| 작 성 기 관 | 여성가족부 |
| 연 구 원 | 정미량 |
| 연구보조원 | 설민지 |

제1부 점검 결과 요약

1. KOSIS 통계표 점검

- 기준자료명: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 연구
- 점검자료명: 성희롱실태조사 KOSIS 데이터
- 작성기준년도: 2021년

| 통계표명 | 점검결과 | 개선의견 | 반영여부 |
|----------------------------------|---------|--|------|
| 정부의 직장 내 성희롱 방지대책 인지 여부 (업무담당자) | 통계표명 변경 | 정부의 직장 내 성희롱 방지대책 인지 여부 → 정부의 직장 내 성희롱 방지대책 인지도 | 반영 |
| 성희롱 유형별 피해 경험 (일반직원) | 분류값 변경 | 성희롱 유형별 피해 경험 - 성적 요구를 전제조건으로 고용, 평가 등의 이익을 암시하거나 제안하는 행위 → 성적 요구를 전제조건으로 고용, 평가 등의 이익을 암시하거나 제안하는 행위 | 반영 |
| 성희롱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정책 (일반직원) | 분류값 변경 | 사업주/기관장에 대한 책무위반 시 과태료 등 강화 → 사업주에 대한 책임 (위반 시 과태료 등) 강화 | 반영 |

<정량평가 연계 항목> - V.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2-1. 공표된 통계표 형식, 단위표기, 주석 등의 적절성': 미반영 시 0~1점으로 진단

'2-2. 공표된 통계수치의 일치성': 미반영 시 0점으로 진단

제2부 공표자료 오류 점검 결과

1. 점검 개요

「통계정보보고서」의 공표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국가통계포털(KOSIS) 공표자료 유무와 국제기구에 자료를 제공하는지 파악한다. 진단대상 통계의 기준자료(점검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발간된 보도자료, 통계보고서 등의 통계간행물 또는 통계표 입력 시 사용한 원본보고서)를 지정하고, KOSIS 통계표와 국제기구 자료를 대상으로 아래의 사항들을 점검한다.

(1) 통계표 형식 및 내용 점검

기준자료와 KOSIS 통계표의 형식 및 내용, 용어, 단위, 주석, 출처, 항목명 등을 점검한다.

(2) 통계표 수치자료 점검

기준자료와 KOSIS 통계표에 수록된 내용을 비교하여 수치를 점검한다. 단순오류나 오타뿐만 아니라 과거 시계열, 다른 통계표 등과 비교하여 논리적 타당성을 점검한다.

(3) 국제기구 자료 제공 일치 여부 점검

OECD, ILO, UN 등 국제기구에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국제기구 요구자료 및 제공현황을 파악하고, 국제기구에 제출한 자료와 국제기구의 간행물이나 DB 등에 서비스되는 자료의 일치 여부를 비교하고 그 원인을 파악한다.

2. 점검 결과

(1) 통계표 형식 및 내용 점검

성희롱실태조사는 조사결과 중 92개의 통계표를 KOSIS에 공표하고 있다. 본 통계의 원본보고서와 KOSIS 공표 통계표 형식을 점검한 결과, 두 자료 간 통계표명과 분류값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부적으로 [정부의 직장 내 성희롱 방지대책 인지 여부(업무담당자)] 통계표는 [정부의 직장 내 성희롱 방지대책 인지도]로 통계표 명칭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성희롱 유형별 피해 경험(일반직원)] 통계표의 분류값 중 ‘성희롱 유형별 피해 경험-성적 요구를 전제조건으로 고용, 평가 등의 이익을 암시하거나 제안하는 행위’에서 ‘성희롱 유형별 피해 경험-’ 부분을 삭제, [성희롱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정책(일반직원)] 통계표의 분류값 중 ‘사업주/기관장에 대한 책무(위반 시 과태료 등) 강화’를 ‘사업주에 대한 책임(위반 시 과태료 등) 강화’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현재는 수정된 자료가 제공되고 있다.

(2) 통계표 수치자료 점검

통계표 상 수치자료를 점검한 결과, 점검기준자료와 KOSIS 통계표의 개별수치, 합계, 개별수치와 합산결과 값이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3) 국제기구 자료 제공 일치 여부 점검

본 조사는 국제기구에 통계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점검에서 제외하였다.

붙임4

조사표 설계 및 유사통계 비교분석 점검

| | |
|---------|----------|
| 통 계 명 | 성희롱실태조사 |
| 승 인 번 호 | 154018 |
| 작 성 기 관 | 여성가족부 |
| 연 구 원 | 오유진 |
| 연구보조원 | 박연진, 최다빈 |

제1부 **점검 개요**

I. 점검 개요

- 조사표 설계 및 유사통계 비교·분석 점검 시 검토한 자료
 - 통계정보보고서
 - 조사표
 - 조사지침서
 - 에디팅가이드
 - 통계자료(KOSIS, 보고서)
 - FGI 이용자 의견

II. 통계 개요

| | | |
|---------|---|-----------|
| 통 계 명 | 성희롱실태조사 | |
| 작성기관명 | 여성가족부 | |
| 작성주기 | 3년 | |
| 점검기준년도 | 2021년 | |
| 전수/표본조사 | 전 수 () | 표 본 (●) |
| 조사목적 | ○ 성희롱에 대한 인식과 실태 및 관련 제도의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여, 향후 효과적인 성희롱 방지정책 수립 및 개선을 위한 기초 및 근거 자료 제공 | |
| 조사대상 |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민간 사업체 | |
| 조사방법 |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1:1 현장 면접조사 또는 온라인 조사 - 응답자 자기기입식 기준(상황에 따라 조사원 타계식 진행) | |
| 주요조사항목 | ○ 업무담당자용(A) - 성희롱 관련 업무 운영 현황,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업무 수행 및 정책 수요, 응답자 특성 ○ 일반직원용(B) - 직장내 조직문화,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피해 경험, 성희롱 업무 부서 인지도 및 정책 수요, 응답자 특성 등 | |

제2부 점검 결과 요약

| 구 분 | 점검결과 | 개선 의견 | 비 고 |
|-------------------|---|--------------------|--|
| 주요 용어 및 항목별 정의 | - 각 용어 및 항목에 대한 정의가 대체로 적절함 - 조사표와 조사지침서에 각 용어 및 항목에 대한 정의 보완이 필요함 | - 용어 설명 추가 | 정량평가 (II-1-1. 주요 용어 및 항목별 정의의 적절성) |
| 조사표 구성 | - 조사표 수록사항 10개 중 10개 확인 | - | 정량평가 (II-3-3. 조사표 구성) |
| 조사표 설계 및 변경 절차 | - 조사표 설계 및 변경 절차가 적절함 | - | 정량평가 (II-4-1. 조사표 설계 및 변경 절차나 방법의 적절성) |
| 조사항목의 적정성 | - 조사항목 구성 및 질문 방식이 대체로 적절함 - 공통항목과 업무담당자용 조사표의 조사항목과 질문표현 수정 필요 | - 조사표 보완 검토 | 정성평가 |
| 응답항목 및 지시문의 적정성 | - 응답항목 구성과 지시문이 대체로 적절함 - 공통항목과 업무담당자용 및 일반직원용 응답항목과 지시문 수정 필요 | - 조사표 보완 검토 | 정성평가 |
| 기준시점의 적정성 | - 조사항목별 기준시점이 적절하지 않음 | - 통계자료의 기준시점 개선 필요 | 정성평가 |
| 조사표 변경 이력 관리 | - 조사표 변경 이력 관리가 적절함 | - | 정량평가 (II-5-1. 조사표 변경 이력 관리) |
| 조사항목별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 조사항목별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이 적절함 | - | 정량평가 (III-7-1. 주요 조사항목별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의 적절성) |
| 동일영역 통계와 일관성 | - 동일영역 통계의 명칭 및 개요를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검토함 | - | 정량평가 (V-8. 동일영역 통계와 일관성) |
| 유사통계항목 간 수치의 정확성 | - 유사통계항목은 있으나 작성대상 차이로 인해 직접 비교가 불가능함 | - | 해당없음 |

제3부 조사표 설계 및 유사통계 비교·분석 점검 결과

1. 점검 개요

「조사표 설계 및 유사통계 비교·분석 점검」은 응답자의 응답 부담 경감, 이해도 제고를 위해 조사표 설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측정오차를 점검하는 과정으로, 자료수집의 정확성 진단을 강화하기 위하여 점검하는 과정이다.

조사표는 조사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를 응답자로부터 얻기 위하여 고안된 질문들을 모아놓은 표이다. 조사표는 자료수집과정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자료가 조사표의 질문에 근거하여 수집되기 때문에 조사표는 자료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유사통계는 서로 다른 통계더라도 동일한 공표항목이 존재하는 통계를 말한다. 예를 들어 동일한 영역에서 조사통계 간 유사한 통계 항목이 존재할 수 있으며, 보고·가공통계에서 공표하고 있는 항목이 조사통계에서도 조사 후 공표되는 항목이 있을 수 있다. 통계마다 목적, 대상 범위, 표본설계가 다르므로 완벽하게 동일한 결과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유사한 내용을 공표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어야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다.

진단에서는 통계정보보고서를 기반한 절차적 점검과 조사표 항목 점검 및 유사통계 비교·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가) 조사표 설계 적정성 진단

통계정보보고서 및 기타 설명자료 등을 기반으로 주요 용어 및 항목별 정의, 조사표 구성, 조사표 설계 및 변경 절차, 조사표 변경 이력을 점검한다. 그리고 조사표 점검 및 FGI 의견을 토대로 조사항목 구성 및 질문 방식의 적정성, 응답항목 및 지시문의 적정성, 기준시점의 적정성, 조사항목별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등을 점검한다.

나) 유사통계 비교·분석 점검

점검대상이 공표하고 있는 통계 중 동일하거나 유사한 통계가 있는지 파악한다. 점검통계와 유사한 항목이 있는 통계 간의 작성기관, 작성목적, 작성대상 및 범위, 작성단위, 작성주기, 기준시점, 공표시기, 표본조사 여부, 작성규모를 비교하고 유사항목의 결과값 및 추이가 유사한지 파악한다.

2. 점검 결과

가) 조사표 설계 적정성 진단

(1) 주요 용어 및 항목별 정의

성희롱실태조사의 주요 용어 및 항목별 정의가 보고서와 조사지침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성인지 감수성’, ‘성희롱 예방교육’, ‘고충 상담원’ 등 본 조사에 사용되는 용어 설명이 보고서에만 제시되어 있어 응답자를 위해 조사표와 조사지침서에도 용어 설명을 추가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2) 조사표 구성

조사표 수록사항인 조사명, 조사목적, 법적근거, 국가승인통계로고, 작성승인번호, 응답자 협조사항, 조사협조 감사인사, 조사기관, 응답자 비밀보호 정책, 문의사항 연락처 10가지 항목이 모두 수록된 것을 확인하였다.

본 통계는 업무담당자용(A)과 일반직원용(B)으로 조사표가 구분되어 있어 조사표 점검 시 공통항목과 2종의 조사표를 점검하였다.

(3) 조사표 설계 및 변경 절차

본 통계의 조사표 설계 및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조사 결과 관련 자료를 수집 및 분석과 기존 조사항목의 타당성 검토 후, 조사항목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조사항목 개선안을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검토하고 사전 조사와 조사원 간담회 실시를 통해 조사표 보완하는 과정을 거친 후 변경승인 신청을 통해 최종 조사표를 확정 짓는 것으로 나타나 조사표 설계 및 변경 절차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조사항목의 적정성⁴⁾

성희롱실태조사의 조사항목 구성과 질문표현의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공통항목과 업무담당자용(A) 조사표의 조사항목과 질문표현에 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4) 조사항목의 적정성’에 작성된 의견은 한국통계진흥원 통계품질센터 연구진의 의견으로 통계청 견해가 아님

① 공통항목

A형 조사표 문10과 B형 조사표 문5는 <그림 1>과 같이 2차 피해 목격 경험과 성희롱 피해 목격 경험을 묻고 있는데, 질문표현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FGI에서 제기되었다. 조사목적에 고려하여 구체적인 기준 등을 작성하거나 (예 : 소문 포함 등) ‘피해자에게 직접 듣거나 목격한 적’ 등으로 명시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림 1> A형 조사표 10번 조사항목

| | | |
|--|---|------------------------------|
| 10 | 4 | 항에서 ‘② 1건 이상 발생하였다’에 응답하신 경우 |
| 지난 3년간(2018년 8월 ~ 2021년 7월) 귀하는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 성희롱 피해자(조력자, 신고자 포함)가 아래와 같은 상황에 놓인 것을 <u>전해 듣거나, 목격한 적</u> 있습니까? (1)~(20)은 성희롱 사건처리 및 회복 과정에서 겪는 정신적·신체적 피해 및 손상, 불이익 등 '2차 피해'에 해당하는 행위들입니다. | | |

* B형 조사표는 5번임

② 업무담당자용(A) 조사표

먼저, 문3과 관련하여 고충상담 건수 조사 시 기간 내 전체 고충상담 건수가 아닌 피상담자의 성별에 따라 상담 건수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FGI에서 제기되었다.

<그림 2> A형 조사표 3번 조사항목

| 3 | 지난 3년간(2018년 8월 ~ 2021년 7월) 귀 사/기관의 성희롱 관련 <u>고충상담 건수는 몇 건이었습니까?</u> ※ 유의사항 : 자발적으로 상담을 요청하거나 상담원이 인지하여 상담을 실시한 경우 등을 모두 포함. 또한, 후속상담에 대해선 동일 건으로 간주함. | | | | | | | |
|--|--|---|-----|-----|--|---------------------|--|---|
| <table border="1" style="margin: auto;"> <thead> <tr> <th style="width: 40%;">기 간</th> <th style="width: 40%;">건 수</th> <th style="width: 20%;"></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18년 8월 ~ 2021년 7월</td> <td style="text-align: center;"> </td> <td style="text-align: center;">건</td> </tr> </tbody> </table> | | | 기 간 | 건 수 | | 2018년 8월 ~ 2021년 7월 | | 건 |
| 기 간 | 건 수 | | | | | | | |
| 2018년 8월 ~ 2021년 7월 | | 건 | | | | | | |
| 3 항에서 1건도 없는 경우 → 4 항으로 이동 | | | | | | | | |

두 번째, 문3-1은 <그림 3>과 같이 고충상담 시 조치 여부를 조사하는 항목이다. 다만, 조사항목과 응답항목을 고려하여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 표현보다 ‘다음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림 3> A형 조사표 3-1번 조사항목

| | | | |
|-----|---|-----|-----|
| 3-1 | 3 항에서 1건 이상 응답하신 경우 | | |
| | 귀 사/기관에서는 성희롱 관련 고충상담 시 <u>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u> | | |
| | 항 목 | 그렇다 | 아니다 |
| | (1) 피해자에게 조사 및 구제 방식을 안내한다 | ① | ② |
| | (2) 상담내용에 대해 비밀이 유지될 것임을 안내한다 | ① | ② |
| | (3) 피해자가 원하는 해결방식에 대해 청취한다 | ① | ② |
| | (4) 상담내용을 기록하여 정리한다 | ① | ② |
| | (5) 성희롱 발생 인지 시 즉각 성희롱 업무 관련 상급자에게 보고한다 | ① | ② |
| | (6) 고충상담 접수 내용을 정기적으로 사업주/기관장에게 보고한다 | ① | ② |

세 번째, 문4는 성희롱 사건의 발생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데, ‘② 1건 이상 발견하였다.’에 해당한다면 이어지는 분기 문항 문4-1을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다만, <그림 4>와 같이 문4와 문 4-1의 질문이 중복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문4-1을 문4의 응답항목 ② 1건 이상 발견하였다.’에서 몇 건이 발생하였는지 추가로 조사될 수 있도록 조사항목을 축소 및 통합할 필요가 있다.

<그림 4> A형 조사표 4번~4-1번 조사항목

| | | |
|-----|--|-----|
| 4 | 지난 3년간(2018년 8월 ~ 2021년 7월) 귀 사/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였습니까? 담당부서(기구)에 접수되어 처리된 사건 뿐 아니라 고충상담원, 담당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거나, 외부경로를 통해 인지된 사건 등을 모두 포함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
| | ① 1건도 없다 → 7 페이지 11 항으로 이동 ② 1건 이상 발생하였다 | |
| 4-1 | 지난 3년간(2018년 8월 ~ 2021년 7월) 귀 사/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은 몇 건이었습니까? 담당부서(기구)에 접수되어 처리된 사건 뿐 아니라 고충상담원, 담당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거나, 외부경로를 통해 인지된 사건 등을 모두 포함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
| | 기 간 | 건 수 |
| | 2018년 8월 ~ 2021년 7월 | |

네 번째, 문6은 성희롱 사건 심의를 위해 위원회가 개최된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하며, 문6-1과 문6-2에서 위원회의 명칭과 구성원을 조사하고 있다. 다만, <그림 5>와 같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심의 및 판단’, ‘성희롱 여부의 심의 및 판단’ 으로 용어가 혼합되어 사용되고 있어, 응답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문6의 용어와 통일하거나 조사지침서처럼 ‘성희롱의 심의 및 판단을 위한’ 으로 문6-1과 문6-2의 질문표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림 5> A형 조사표 6번~6-2번 조사항목

| 2021년 성희롱실태조사 조사표 | | | | | |
|---------------------|---|-----|-----|---------------------|---|
| 6 | <p>4 항목에서 '② 1건 이상 발생하였다'에 응답하신 경우</p> <p>지난 3년간(2018년 8월 ~ 2021년 7월) 귀 사/기관의 <u>성희롱 사건 심의를 위한 위원회가 개최된 사건</u>은 몇 건이었습니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width: 50%;">기 간</th> <th style="width: 50%;">건 수</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18년 8월 ~ 2021년 7월</td> <td style="text-align: center;"> <input type="text"/> 건 6 항목에서 1건도 없는 경우 → 5 페이지 7 항목으로 이동 </td> </tr> </tbody> </table> | 기 간 | 건 수 | 2018년 8월 ~ 2021년 7월 | <input type="text"/> 건 6 항목에서 1건도 없는 경우 → 5 페이지 7 항목으로 이동 |
| 기 간 | 건 수 | | | | |
| 2018년 8월 ~ 2021년 7월 | <input type="text"/> 건 6 항목에서 1건도 없는 경우 → 5 페이지 7 항목으로 이동 | | | | |
| 6-1 | <p>6 항목에서 1건 이상 응답하신 경우</p> <p><u>성희롱 사건에 대한 심의 및 판단</u> 등을 논의하는 <u>위원회의 명칭</u>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주된 위원회 1개만 응답해 주십시오.</p> <p>① 고충심의위원회/성희롱심의위원회 ② 인사위원회 ③ 징계위원회 ④ 기타(적어주세요 : _____)</p> | | | | |
| 6-2 | <p>6 항목에서 1건 이상 응답하신 경우</p> <p><u>성희롱 여부의 심의 및 판단</u> 등을 위한 <u>위원회의 구성원</u>은 어떠합니까? 해당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p> <p>① 사업주/기관장 ② 임원 및 관리자급 ③ 노동조합 간부 ④ 성희롱 관련 외부 전문가 ⑤ 감사부서 담당자 ⑥ 인사부서 담당자 ⑦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⑧ 기타(적어주세요 : _____)</p> | | | | |
| 2021년 성희롱실태조사 조사지침서 | | | | | |
| 6 | <p>[<u>성희롱 심의 및 판단을 위한 위원회 개최 건수</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3년간 성희롱 사건 심의를 위한 위원회가 개최된 사건의 건수를 기입 ● 6 항목에서 1건도 없는 경우 → 7 항목으로 이동 ● 6 항목에서 1건 이상 응답한 경우 → 6-1 항목부터 응답 | | | | |
| 6-1 | <p>[<u>성희롱 심의 및 판단을 위한 위원회의 명칭</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희롱 사건 심의를 위해 개최된 위원회의 명칭을 응답 | | | | |
| 6-2 | <p>[<u>성희롱 심의 및 판단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원 (복수응답)</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의 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모두 응답 | | | | |

다섯 번째, III.성희롱 업무 수행 및 정책 수요에서 문18은 성희롱 예방교육 진행 시의 어려움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는 성희롱 예방교육 애로사항 관련 항목으로, 조사항목 간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II.성희롱 예방교육으로 이동 배치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통계 조사항목과 관련하여 FGI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기되었다. 업무담당자용 조사표에서 변화 인식, 도움 정도 등을 다루고 있으나 업무담당자 1인의 응답으로 일반화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응답자의 응답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해당 항목을 대신하여 II.성희롱 예방교육 부문의 구체적인 피교육자와 교육 시간 등 교육 현황 관련 조사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5) 응답항목 및 지시문의 적정성⁵⁾

본 통계의 응답항목과 지시문의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공통항목과 2중 조사표의 응답항목과 지시문에 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① 공통항목

먼저, 사업주 및 기관장의 성희롱 방지에 대한 법적 의무 인지 및 제도적 조치 이행 정도에 관해 묻는 문항의 경우 <그림 6>과 같이 사업주 및 기관장이 적극적으로 이행하고자 노력한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라는 표현은 ‘그렇다/아니다’ 로 응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전혀 아니다’ ~ ‘매우 그렇다’ 등의 척도 항목으로 응답항목 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분기 문항인 문2-1은 척도의 정도에 따라 응답하도록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5) (5) 응답항목 및 지시문의 적정성에 작성된 의견은 한국통계진흥원 통계품질센터 연구진의 의견으로 통계청 견해가 아님

<그림 6> A형 조사표 2번 조사항목

2 귀 사/기관의 사업주/기관장은 직장 내 성희롱 방지에 대한 법적 의무(책무)를 인지하고, 관련 제도적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자 노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3** ③ 함으로 이동

2-1 귀 사/기관의 사업주/기관장은 직장 내 성희롱 방지, 공정한 사건처리 등에 대한 책무 혹은 이행과 관련해서 전체 구성원 혹은 업무담당자에게 직접 언급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B형 조사표는 7번 문항임

두 번째, <그림 7>과 같이 직장 내 성희롱 방지대책에 관한 인지 여부와 도움 정도를 2종의 조사표에서 공통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지시문에 따르면 5개의 성희롱 방지대책의 내용을 모두 잘 알고 있는 경우만 도움 정도를 응답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다만, 본 통계의 조사목적인 성희롱 관련 제도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하나라도 ‘③ 내용을 잘 알고 있다’에 응답한다면 도움 정도 관련 항목을 응답할 수 있도록 지시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림 7> A형 조사표 20번~21번 조사항목

20 귀하는 정부에서 추진한 다음의 직장 내 성희롱 방지대책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 항 목 | 전혀 모른다 |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 | 내용을 잘 알고 있다 |
|---|--------|----------------------|-------------|
| (1)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는 신고센터 운영 | ① | ② | ③ |
| (2)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기관의 공정한 사건처리에 대한 현장점검 및 행정지도 강화 | ① | ② | ③ |
|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표준지침 마련 등 제도적 기반 강화 | ① | ② | ③ |
| (4) 공공부문의 가해자 제재 및 처벌 강화,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사업주 책임 강화(위반 시 과태료 상향 등) | ① | ② | ③ |
| (5) 관리자 교육 확대 등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 ① | ② | ③ |

20 항목의 (1) - (5) 중 5개 모두 '③ 내용을 잘 알고 있다'에 응답한 경우 → **21** 항목부터 응답
21 항목으로 이동하는 경우 이외엔 모두 → 12 페이지 **22** 항목으로 이동

21

20 항목의 5개 모두 '③ 내용을 잘 알고 있다'에 응답한 경우

귀하는 20 항목에서 언급된 정부의 직장 내 성희롱 대책이 직장 내 성희롱 방지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B형 조사표는 12번, 13번 문항임

마지막으로, 문22는 직장 내 성희롱 관련해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조사하는 문항이며 총 13개의 소문항이 있다. <그림 8>과 같이 ‘(6) 성희롱 행위 발생 시, 즉시 문제를 제기하는 분위기가 조성됨’, ‘(9) 고충처리기구(고충상담창구, 사이버신고센터 등)를 이용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됨’ 등은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고충처리 기구가 회사 내에 없는 경우에는 응답 가능한 항목이 없으므로 모든 조사 응답자가 응답해야 하는 항목인 점을 고려하여 ‘해당없음’ 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그림 8> A형 조사표 22번 소문항 (6), (9)

| 22 귀하는 지난 3년 동안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해 어떠한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약간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6) 성희롱 행위 발생 시, 즉시 문제를 제기하는 분위기가 조성됨 | ① | ② | ③ | ④ |
| (9) 고충처리기구(고충상담창구, 사이버신고센터 등)를 이용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됨 | ① | ② | ③ | ④ |

* B형 조사표는 14번 문항임

② 업무담당자용(A) 조사표

먼저, 조사 진행된 성희롱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 진행 상황의 알림 여부를 <그림 9>와 같이 조사하고 있는데, ‘③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는다.’의 경우,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알리지 않는 것과 피해자의 요청 여부 관계없이 알리지 않는 것으로 구분될 수 있으므로, 응답항목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림 9> A형 조사표 5-3번 조사항목

| | |
|-----|---|
| 5-3 | 5 항에서 1건 이상 응답하신 경우 조사 진행 상황을 피해자에게 알리고 있습니까? |
| | ①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알린다 ② 피해자의 요청여부에 상관없이 알린다 ③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는다 |

다음으로, 성희롱 사건 심의를 위한 위원회가 개최된 사건에 관하여 절차에 따른 피해자의 의견 청취 여부를 <그림 10>과 같이 묻고 있는데, 의견 청취 여부는 ‘그렇다/아니다’ 혹은 ‘예/아니오’ 로 응답 가능한 항목이므로 척도 응답항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림 10> A형 조사표 6-4번 조사항목

| 6-4 | 6 항에서 1건 이상 응답하신 경우 지난 3년간(2018년 8월 ~ 2021년 7월) 귀 사/기관은 성희롱 심의 및 행위자 징계 결정 등의 절차에서 사전청취 결과 보고, 서면제출, 출석 등을 통해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확인하였습니까? | | | | | | |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항 목</th> <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매우 그렇다</th> <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약간 그렇다</th> <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그렇지 않다</th> <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전혀 그렇지 않다</th> <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비해당</th> </tr> </thead> <tbody> <tr> <td>(1) 성희롱 심의·판단 시</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td> </tr> <tr> <td>(2) 행위자 징계 결정 시 * 비해당 : 성희롱 행위자 징계 결정까지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body> </table> | 항 목 | 매우 그렇다 | 약간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비해당 | (1) 성희롱 심의·판단 시 | ① | ② | ③ | ④ | | (2) 행위자 징계 결정 시 * 비해당 : 성희롱 행위자 징계 결정까지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 ① | ② | ③ | ④ | ⑤ |
| 항 목 | 매우 그렇다 | 약간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비해당 | | | | | | | | | | | | | | |
| (1) 성희롱 심의·판단 시 | ① | ② | ③ | ④ | | | | | | | | | | | | | | | |
| (2) 행위자 징계 결정 시 * 비해당 : 성희롱 행위자 징계 결정까지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 | | | | | | | | | |

마지막으로, 문13에서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 강좌 안내(홍보)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데, <그림 11>과 같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를 묻는 문12에서 실시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만 문13을 응답하도록 지시문이 작성되어있다. 다만,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 강좌 안내(홍보) 여부는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에 상관없이 조사될 필요가 있으므로, 지시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림 11> A형 조사표 13번 조사항목

| | |
|--|----------------------------------|
| 13 | 12. 형에서 '② 1회 이상 실시하였다'에 응답하신 경우 |
| 귀 사/기관은 지난 한 해(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동안 금융사 또는 보험사 등 외부업체로부터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 강좌에 대한 안내(홍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
| ※ 무료강좌 : 금융사 또는 보험사 등의 영업방식의 일환. 해당 금융사/보험사 직원이 예방교육을 진행하면 교육 전·후에 금융/보험 상품을 설명하는 강좌형태. 금융사/보험사가 아닌 다른 업종의 외부업체가 상품홍보와 예방교육 진행을 제안·홍보 받는 경우도 포함함 | |
| ① 있다 | ② 없다 |

③ 일반직원용(B) 조사표

먼저, 문4-5는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 피해 당시의 행동 및 대처에 관해 묻고 있는데, <그림 12>의 응답항목 ‘⑤ 성희롱 행위자에게 적당히 호응해 주었다’의 ‘적당히 호응’이라는 표현은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표현이라고 사료되며, 응답항목 표현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FGI 참석자 모두 본 점검사항에 관해 동의하였다.

<그림 12> B형 조사표 4-5번 조사항목

| | |
|--|---|
| 4-5 | 성희롱을 경험한 당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주된 경우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 ① 성희롱 행위자에게 바로 중단을 요구했다 ② 화제를 돌리거나 그 자리를 피했다 ③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④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다 ⑤ 성희롱 행위자에게 적당히 호응해 주었다 ⑥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 |

(6) 기준시점의 적정성

2021년 성희롱실태조사의 조사기준시점은 2021년 8월 1일로 확인되었다. ‘지난 1년간’, ‘지난 3년간’ 등의 조사항목에 대해서는 조사기준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두었으므로 본 통계의 조사항목별 기준시점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통계설명자료, 조사지침서, 승인내역 등에는 조사기준시점이 2021년 7월 31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다.

(7) 조사표 변경 이력 관리

성희롱실태조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통계작성 변경이력에 대한 기록 및 관리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다. 본 통계는 조사표의 변경 내용 및 사유를 이전 조사표와 비교하여 기록 및 관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8) 조사항목별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본 통계는 조사항목별로 설명, 작성 방법 등의 작성요령과 유의사항을 조사지침서에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조사항목별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유사통계 비교·분석 점검

(1) 동일영역 통계와 일관성

성희롱실태조사는 성범죄 관련하여 조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폭력안전실태조사(여성가족부), 여성폭력실태조사(여성가족부)가 동일영역 통계로 확인되었으며, 작성기관은 동일영역 통계 간 현황 및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동일영역 통계 현황

| 구분 | 성희롱실태조사 | 성폭력안전실태조사 | 여성폭력실태조사 |
|-----------|--|--|--|
| 작성기관 |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
| 통계종류 | 조사통계 | 조사통계 | 조사통계 |
| 작성목적 | 성희롱에 대한 인식과 실태 및 관련 제도의 운영현황 등을 파악하여, 향후 효과적인 성희롱 방지정책 수립 및 개선을 위한 기초 및 근거 자료 제공 | 성폭력 관련 인식과 정책 수요, 성폭력 유형별 피해 양상, 영향, 대응 등의 실태를 파악하여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 제공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2조(실태조사)를 근거로 누락된 여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여성폭력방지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 작성대상 및 범위 | 전국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체 대상 | 전국 19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남녀 | 전국 17개 시도의 일반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여성 |
| 작성단위 | 개인 | 개인 | 개인 |
| 작성주기 | 3년 | 3년 | 3년 |

| 구분 | 성희롱실태조사 | 성폭력안전실태조사 | 여성폭력실태조사 |
|-------|--|--------------|-----------|
| 공표시기 | 조사기준년도 익년 6월 | 조사기준년도 익년 2월 | 조사기준년도 익년 |
| 표본/전수 | 표본조사 | 표본조사 | 표본 |
| 작성규모 | - 업무담당자 : 공공기관 770명, 민간사업장 1,760명 - 일반직원 : 공공기관 10,514명, 민간사업장 4,644명 | 약 10,000명 | 약 7,000명 |

(2) 유사통계항목 간 수치의 정확성

성희롱실태조사 공표항목 중 유사한 항목을 공표하고 있는 통계를 탐색하여 작성목적, 작성대상 및 범위 등을 <표 2>와 같이 검토하였다.

성폭력안전실태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남녀를 작성대상으로 하고, 근로환경조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는 조사 전 주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만 15세 이상 취업자와 자영업자 및 사업주가 작성대상이며, 본 통계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민간사업체와 공공기관의 성희롱 관련 업무담당자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므로 조사대상의 차이로 인해 구체적인 수치 비교는 하지 않았다.

<표 2> 유사항목 통계 현황

| 구분 | 성희롱실태조사 | 성폭력안전실태조사 | 근로환경조사 |
|-----------|--|--|--|
| 유사항목 | 성희롱 피해경험 여부 | 성희롱 피해 경험 | 성희롱 피해여부 |
| 작성기관 |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통계종류 | 조사통계 | 조사통계 | 조사통계 |
| 작성목적 | 성희롱에 대한 인식과 실태 및 관련 제도의 운영현황 등을 파악하여, 향후 효과적인 성희롱 방지정책 수립 및 개선을 위한 기초 및 근거 자료 제공 | 성폭력 관련 인식과 정책 수요, 성폭력 유형별 피해 양상, 영향, 대응 등의 실태를 파악하여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 제공 | 근로환경 중 건강위험 요인실태 파악하여 작업관련성질환, 건강위험이 높은 업종과 직종에 대해 안전보건정책을 수립하며 근로환경 변화 추이를 밝혀 안전보건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
| 작성대상 및 범위 | 전국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체 대상 | 전국 19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남녀 | 조사시점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 내 만 15세 이상 취업자 |
| 작성주기 | 3년 | 3년 | 3년 |
| 표본/전수 | 표본조사 | 표본조사 | 표본조사 |
| 작성규모 | - 업무담당자 : 공공기관 770명, 민간사업장 1,760명 - 일반직원 : 공공기관 10,514명, 민간사업장 4,644명 | 약 10,000명 | 약 50,000명 |

3. 주요 개선의견

(1) 용어 설명 추가

조사목적에 부합하는 조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조사에서 사용하는 조사항목과 관련된 개념을 분명하게 설명하여 조사항목이나 용어로 인한 혼선을 없애야 한다. 성희롱실태조사의 경우 조사표와 조사지침서에 ‘성인지 감수성’, ‘성희롱 예방교육’ 등의 정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 조사원 및 통계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정의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2) 조사표 보완 검토

조사항목의 적정성과 응답항목 및 지시문의 적정성 점검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사표를 보완 및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3> 2021년 성희롱실태조사 조사표 보완 검토사항

| 구분 | 문항번호 | 내용 |
|-----------|------|------------------------|
| 공통항목* | 2번 | - 응답항목 척도형으로 수정 필요 |
| | 10번 | - 질문표현 수정 필요 |
| | 20번 | - 지시문 수정 필요 |
| | 22번 | - ‘해당없음’ 항목 추가 필요 |
| 업무담당자용(A) | 3번 | - 피상담자의 성별을 구분하여 조사 필요 |
| | 3-1번 | - 질문표현 수정 필요 |
| | 4번 | - 조사항목 축소 및 통합 필요 |
| | 4-1번 | |
| | 5-3번 | - 응답항목 재구성 필요 |
| | 6-1번 | - 질문표현 수정 필요 |
| | 6-2번 | |
| | 6-4번 | - 응답항목 양자택일형으로 수정 필요 |
| | 13번 | - 지시문 수정 필요 |
| | 18번 | - 문항 이동 배치 필요 |
| 일반직원용(B) | 4-5번 | - 응답항목 표현 수정 필요 |

* 업무담당자용(A) 기준 문항 번호임

(3) 통계자료의 기준시점 개선 필요

본 통계는 통계자료의 기본이 되는 승인내역, 통계설명자료, 보고서 등 공표하고 있는 자료에 기준시점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계이용자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조사 기준시점에 대한 변경승인과 표기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 | |
|---------|----------|
| 통 계 명 | 성희롱실태조사 |
| 승 인 번 호 | 154018 |
| 작 성 기 관 | 여성가족부 |
| 연 구 원 | 이영민 |
| 연구보조원 | 전재현, 송은주 |

제1부 **점검 개요**

I. 점검 개요

- 표본설계 점검 시 검토한 자료
 - 통계정보보고서
(조사개요, 작성목적, 조사설계, 통계추정 및 분석)
 - 표본설계보고서(2021)
 - 2021년도 성희롱실태조사 연구(2022),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여성가족부

II. 조사 개요

| | | |
|-----------|--|-----------|
| 조 사 명 | 성희롱실태조사 | |
| 작 성 기 관 명 | 여성가족부 | |
| 작 성 주 기 | 3년 | |
| 전수/표본조사 | 전 수 () | 표 본 (●) |
| 표본설계주체 | 자체설계() | 외부용역(●) |
| 조 사 목 적 | ○ 직장 내 성희롱 실태와 변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된 제도와 시스템의 운영 현황 등을 확인하여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 | |
| 조 사 대 상 | ○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체, 공공기관 770개, 민간사업장 1,760개에서 근무하는 공공기관 종사자 및 민간사업체 근로자 (업무담당자와 일반직원) | |
| 조 사 방 법 | ○ 공공기관 : 온라인 조사 ○ 민간사업체 : 현장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체 사정에 따라 사업체 내 담당자를 통한 유치조사, 우편/이메일 조사 병행 | |

제2부 점검 결과 요약

| 구 분 | 점검결과 | 개선 의견 | 비 고 |
|-----------------|--|---------------------|----------------------------------|
| 목표모집단과 조사모집단 | - 목표모집단과 조사모집단에 대한 정의가 명확함 | - | 정량평가 (II-6-1~2. 목표모집단과 조사모집단) |
| 표본추출틀 | - 표본추출틀은 '19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통계청) 자료로 제시되어 있음 | - | 정량평가 (II-7.표본추출틀) |
| 표본설계 방법 및 결과 | - 민간 사업체 : 업종(6)과 종사자 규모(4)를 고려하여 24개 층, 표본규모 민간 1,760개 - 공공기관 : 기관유형(4)과 종사자 규모(4)를 고려하여 16개 층, 표본규모 공공기관 770개 | - | 정량평가 (II-8-1~3. 표본설계 방법 및 결과) |
| 무응답 대처 | - 항목무응답, 단위무응답 대처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 - | 정량평가 (III-11.무응답 대처) |
| 표본대체 | - 표본 대체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 - | 정량평가 (III-12.표본대체) |
| 항목무응답 실태 | - 최초 항목무응답률 제시함 - 항목무응답률 산식 제시함 | - | 정량평가 (IV-4.주요 항목 무응답 실태) |
| 항목무응답 대체 | - 항목무응답 대체하지 않음 | - | 정량평가 (IV-5.항목 무응답 대체) |
| 단위무응답 실태 | - 최초 단위무응답률 제시 - 단위무응답률 산식 제시함 | - | 정량평가 (IV-6.단위무응답 실태) |
| 가중치 조정 | - 사업체가중치(설계가중치, 무응답가중치,사후가중치)에 대해 제시함 - 근로자가중치에 대해 제시함 | - 근로자 가중치 수식 수정해야 함 | 정량평가 (IV-7.가중치 조정) |
| 통계추정 산식 및 내용 | - 총계 추정, 총계의 분산 추정식 제시함 | - | 정량평가 (IV-8.통계추정 산식 및 내용) |
| 표집오차 추정 방법 및 결과 | - 상대표준오차 추정량 산식, - 주요항목에 대한 상대표준오차 제시함 | - | 정량평가 (IV-9.표집오차 추정 방법 및 결과) |

제3부 표본설계 점검 결과

1. 점검 개요

성희롱실태조사의 통계명, 승인번호, 작성기관,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통 계 명 : 성희롱실태조사(작성주기 : 3년)
- (2) 승인번호 : 제154018호
- (3) 작성기관 : 여성가족부
- (4) 조사목적 : 직장 내 성희롱 실태와 변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된 제도와 시스템의 운영 현황 등을 확인하여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
- (5) 조사대상 :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체, 공공기관 770개, 민간사업장 1,760개에서 근무하는 공공기관 종사자 및 민간사업체 근로자(업무담당자와 일반직원)
- (6) 조사방법
 - 공공기관 : 온라인 조사
 - 민간사업체 : 현장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체 사정에 따라 사업체 내 담당자를 통한 유치조사, 우편/이메일 조사 병행
- (7) 표본설계연도 : 2021년

본 표본설계 진단은 「성희롱실태조사(2021 기준)」에 대하여 표본설계 진단 항목을 4개의 부문(모집단 및 표본추출틀, 표본추출방법, 무응답 처리, 추정)으로 구분하여 진단하였으며, 이는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한 통계정보보고서, 표본설계내역서, 결과보고서에 근거하여 실시하였다.

2. 점검 결과

가. 모집단 및 표본추출틀

(1) 현황

□ 목표모집단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민간 사업체 및 공공기관

□ 조사모집단

-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작성된 「전국사업체조사」 결과 중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민간 사업체 및 공공기관
 - 교육서비스업 중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는 공공기관 모집단에 포함하고 민간 사업체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 민간 사업체 : 농업, 임업 및 어업(A), 광업(B), 가사 서비스업(S), 국제기구 및 기타 외국기관(T) 등을 제외한 전 산업의 종사자(상용, 임시·일용 종사자) 3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전체 사업체이며, 사업체로부터 성희롱 업무담당자와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함
- 공공기관 : 2019년 12월 말 기준의 「전국사업체조사」 결과 중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교육서비스업(P) 중 일부를 대상으로 하며, 종사자(상용, 임시, 일용 종사자) 3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함

□ 표본추출틀

- 2019년 12월 말 기준 「전국사업체조사」(통계청) 결과 중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민간 사업체 및 공공기관

① 민간사업체

<표1-1> 민간사업체(사업체 수)

| 업종 | 30-99인 | 100-299인 | 300-499인 | 500인 이상 | 계 | 비중 |
|------------------------------|--------|----------|----------|---------|--------|--------|
| C. 제조업 | 17,234 | 3,367 | 368 | 314 | 21,283 | 29.4% |
|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337 | 85 | 22 | 14 | 458 | 0.6% |
| E.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 906 | 88 | 2 | 1 | 997 | 1.4% |
| F. 건설업 | 4,779 | 1,048 | 165 | 161 | 6,153 | 8.5% |
| G. 도매 및 소매업 | 4,997 | 926 | 107 | 52 | 6,082 | 8.4% |
| H. 운수업 | 3,065 | 1,121 | 89 | 56 | 4,331 | 6.0% |
| I. 숙박 및 음식점업 | 1,807 | 140 | 22 | 22 | 1,991 | 2.7% |
|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2,565 | 739 | 119 | 79 | 3,502 | 4.8% |
| K. 금융 및 보험업 | 1,462 | 277 | 62 | 85 | 1,886 | 2.6% |
|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 907 | 152 | 22 | 16 | 1,097 | 1.5% |
|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 3,534 | 878 | 189 | 170 | 4,771 | 6.6% |
|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3,351 | 1,320 | 302 | 327 | 5,300 | 7.3% |
| P. 교육 서비스업 | 1,498 | 157 | 12 | 3 | 1,670 | 2.3% |
|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 | 7,991 | 1,721 | 162 | 199 | 10,073 | 13.9% |
|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1,099 | 187 | 24 | 11 | 1,321 | 1.8% |
|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1,318 | 158 | 6 | 4 | 1,486 | 2.1% |
| 합계 | 56,850 | 12,364 | 1,673 | 1,514 | 72,401 | 100.0% |
| 비중 | 78.5% | 17.1% | 2.3% | 2.1% | 100.0% | |

<표1-2> 민간사업체(근로자 수)

| 업종 | 30-99인 | 100-299인 | 300-499인 | 500인 이상 | 계 | 비중 |
|------------------------------|-----------|-----------|----------|-----------|-----------|--------|
| C. 제조업 | 853,061 | 535,725 | 139,793 | 572,514 | 2,101,093 | 28.3% |
|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19,047 | 14,596 | 8,448 | 16,803 | 58,894 | 0.8% |
| E.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 42,238 | 12,677 | 765 | 1,236 | 56,916 | 0.8% |
| F. 건설업 | 229,668 | 170,040 | 60,258 | 179,447 | 639,413 | 8.6% |
| G. 도매 및 소매업 | 237,442 | 143,125 | 40,721 | 50,439 | 471,727 | 6.4% |
| H. 운수업 | 163,302 | 175,672 | 32,562 | 71,945 | 443,481 | 6.0% |
| I. 숙박 및 음식점업 | 82,684 | 22,380 | 8,357 | 16,109 | 129,530 | 1.7% |
|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131,166 | 120,383 | 45,057 | 97,604 | 394,210 | 5.3% |
| K. 금융 및 보험업 | 72,036 | 44,052 | 24,215 | 92,284 | 232,587 | 3.1% |
|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 41,634 | 23,599 | 8,004 | 17,222 | 90,459 | 1.2% |
|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 177,298 | 142,882 | 72,345 | 238,536 | 631,061 | 8.5% |
|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176,535 | 228,884 | 114,907 | 331,958 | 852,284 | 11.5% |
| P. 교육 서비스업 | 67,842 | 23,189 | 4,832 | 2,012 | 97,875 | 1.3% |
|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 | 413,359 | 273,480 | 60,930 | 275,311 | 1,023,080 | 13.8% |
|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55,540 | 28,550 | 9,067 | 15,015 | 108,172 | 1.5% |
|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60,862 | 22,683 | 2,186 | 2,790 | 88,521 | 1.2% |
| 합계 | 2,823,714 | 1,981,917 | 632,447 | 1,981,225 | 7,419,303 | 100.0% |
| 비중 | 38.1% | 26.7% | 8.5% | 26.7% | 100.0% | |

② 공공기관

<표2> 공공기관 표본추출률

| 공공기관 유형 | 공공기관 종사자규모별 사업체 수 | | | | | | 상시근로자 수 | |
|------------|-------------------|----------|----------|---------|--------|--------|-----------|--------|
| | 30-99인 | 100-299인 | 300-499인 | 500인 이상 | 계 | 비중 | 근로자 | 비중 |
| 국가기관 | 2,047 | 728 | 160 | 97 | 3,032 | 22.6% | 368,328 | 24.6% |
| 지방자치단체 | 580 | 76 | 69 | 205 | 930 | 6.9% | 281,843 | 18.8% |
| 초·중·고등학교 | 8,073 | 764 | 1 | 0 | 8,838 | 65.8% | 583,657 | 38.9% |
| 대학교 | 204 | 170 | 97 | 155 | 626 | 4.7% | 265,513 | 17.7% |
| 합계 | 10,904 | 1,738 | 327 | 457 | 13,426 | 100.0% | 1,499,341 | 100.0% |

(2) 점검결과

조사모집단의 정의와 표본추출률에 사용된 자료의 출처가 명확하고 표본추출률 현황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나. 표본추출방법

(1) 현황

□ 층화

○ 민간사업체

- 1차 층화 : 업종(6)(①C, ②F, E, D ③개인서비스업(G, I) ④ 유통서비스업(H, J) ⑤ 사업서비스업(K, L, M, N) ⑥ 사회서비스업(P, Q, R, S))
- 2차 층화 : 종사자 규모((4)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 공공기관

- 1차 층화 : 기관유형((4) 국가기관, 지방자치, 초·중·고, 대학)
- 2차 층화 : 종사자 규모((4)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 표본 크기

○ 민간사업체와 공공기관

- 사업체 대상 조사에서 95% 신뢰수준에서 모비율 추정의 오차한계는 민간 사업체에서 ±2.4%p, 공공기관에서 ±3.6%p 수준
- 최종 표본크기는 민간사업체 1,760개소와 공공기관 770개소

○ 근로자

- 근로자 조사에서는 민간 사업체의 근로자 조사에서 ±1.0%p, 공공기관의 근로자 조사에서 ±1.5%p 수준
- 최종 표본크기는 민간 사업체에서 약 10,510명, 공공기관에서 약 4,640명
- 공공기관은 기관의 특성상 성희롱 실태에 대한 유사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표본의 크기를 770개소(4개 각 유형에 대해서 100개 표본을 우선할당 후 비례배분법을 적용)

<표3> 2018년 조사의 조사항목의 추정값 및 상대표준오차

| 구 분 | 2018년 조사 표본크기 | 직장내 성희롱 심각성(5점) | | |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여부 | | | |
|---------------|------------------|-----------------|--------|--------|----------------|-------|--------|------|
| | | 평균 | 표준오차 | 상대표준오차 | 비율 | 표준오차 | 상대표준오차 | |
| 전 체 | 9,233 | 1.80 | 0.0179 | 1.0% | 91.0% | 0.006 | 0.7% | |
| 민간 사업 체 | 제조업 | 1,520 | 1.74 | 0.0379 | 2.2% | 89.7% | 0.015 | 1.7% |
| | 건설업 등 | 913 | 1.77 | 0.0520 | 2.9% | 87.3% | 0.021 | 2.4% |
| | 개인서비스업 | 984 | 1.81 | 0.0571 | 3.2% | 92.5% | 0.015 | 1.6% |
| | 유통서비스업 | 1,065 | 1.68 | 0.0407 | 2.4% | 90.7% | 0.018 | 2.0% |
| | 사업서비스업 | 1,471 | 1.88 | 0.0469 | 2.5% | 89.7% | 0.015 | 1.6% |
| | 사회서비스업 | 1,195 | 1.78 | 0.0493 | 2.8% | 90.8% | 0.014 | 1.5% |
| | 소 계 | 7,148 | 1.78 | 0.0203 | 1.1% | 90.0% | 0.007 | 0.8% |
| 공공 기관 | 국가기관 | 525 | 1.98 | 0.0603 | 3.0% | 98.5% | 0.006 | 0.6% |
| | 지방자치단체 | 518 | 2.27 | 0.0686 | 3.0% | 89.4% | 0.027 | 3.0% |
| | 초중고등학교 | 470 | 1.56 | 0.0441 | 2.8% | 98.9% | 0.007 | 0.7% |
| | 대학교 | 572 | 2.09 | 0.1083 | 5.2% | 97.1% | 0.008 | 0.8% |
| | 소 계 | 2,085 | 1.89 | 0.0345 | 1.8% | 96.6% | 0.006 | 0.7% |

- 주요 공표단위에서 핵심 조사항목에 대한 추정결과의 상대표준오차는 5% 이내를 나타내고 있음. 새로운 표본설계의 표본크기는 약 15,000명으로 현행 표본크기와 비교하여 상당히 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좀 더 안정적인 추정이 가능함

□ 표본배분

○ 민간사업체

- 1차 층화 : 업종(6) 층별 사업체 수를 기준으로 업종별 우선할당비례
- 2차 층화 : 종사자 규모((4)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층별 사업체 수를 기준으로 제곱근비례배분

<표4-1> 민간사업체의 업종별 표본배분(업종별 우선할당비례)

| 업종 구분 | 사업체 수 | 우선할당 비례 | 30-99인 | 100-299인 | 300-499인 | 500인 이상 | |
|-----------------------------------|--------|---------|--------|----------|----------|---------|----|
| 제조업 | 21,283 | 441 | 256 | 113 | 37 | 35 | |
| 건설업,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7,608 | 222 | 123 | 56 | 22 | 21 | |
| 서비스업 | 개인서비스업 | 8,073 | 229 | 140 | 55 | 19 | 15 |
| | 유통서비스업 | 7,833 | 226 | 118 | 67 | 23 | 18 |
| | 사업서비스업 | 13,054 | 309 | 152 | 81 | 38 | 38 |
| | 사회서비스업 | 14,550 | 333 | 196 | 85 | 26 | 26 |
| 전체 | 72,401 | 1,760 | 985 | 457 | 165 | 153 | |

- 산업대분류별 표본배분은 사업체 수 기준의 비례배분법

<표4-2> 민간사업체의 산업대분류별 표본배분

| 업종 | 30-99인 | 100-299인 | 300-499인 | 500인 이상 | 계 |
|----------------------------|--------|----------|----------|---------|-------|
| C. 제조업 | 256 | 113 | 37 | 35 | 441 |
|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7 | 4 | 3 | 2 | 16 |
| E.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 19 | 4 | 0 | 0 | 23 |
| F. 건설업 | 97 | 48 | 19 | 19 | 183 |
| G. 도매 및 소매업 | 103 | 48 | 16 | 11 | 178 |
| H. 운수업 | 64 | 40 | 10 | 7 | 121 |
| I. 숙박 및 음식점업 | 37 | 7 | 3 | 4 | 51 |
|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54 | 27 | 13 | 11 | 105 |
| K. 금융 및 보험업 | 24 | 10 | 4 | 5 | 43 |
|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 15 | 5 | 1 | 1 | 22 |
|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 58 | 27 | 12 | 11 | 108 |
|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54 | 41 | 20 | 21 | 136 |
| P. 교육 서비스업 | 25 | 6 | 2 | 0 | 33 |
|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 | 131 | 66 | 21 | 24 | 242 |
|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18 | 7 | 3 | 1 | 29 |
|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22 | 6 | 1 | 0 | 29 |
| 합계 | 984 | 459 | 165 | 152 | 1,760 |

○ 공공기관

- 1차 층화 : 기관유형(4)(국가기관, 지방자치, 초·중·고, 대학) , 공공기관 유형별로 100개씩 우선할당 후 사업체 수 기준으로 비례배분법
- 2차 층화 : 종사자 규모(4)(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공공기관 유형 내 사업체 규모별 표본배분은 사업체 수 기준으로 제곱근 비례배분법

<표5> 공공기관 유형별 규모별 표본배분

| 공공기관 유형 | 계 | 30-99인 | 100-299인 | 300-499인 | 500인 이상 |
|----------|-----|--------|----------|----------|---------|
| 국가기관 | 184 | 88 | 52 | 25 | 19 |
| 지방자치단체 | 126 | 54 | 20 | 19 | 33 |
| 초·중·고등학교 | 343 | 260 | 82 | 1 | - |
| 대학교 | 117 | 34 | 31 | 23 | 29 |
| 합계 | 770 | 436 | 185 | 68 | 81 |

□ 표본추출

○ 민간사업체 공공기관의 사업체 추출

- 해당 층에서 행정구역에 따라 정렬 후 계통추출함(각 층에 배분된 표본사업체 수에 해당하는 본 표본과 5배수의 예비표본 사업체를 구성, 본표본에 대해서 수차례 접촉으로도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비표본 사업체 리스트를 이용하여 접촉하도록 하였음. 예비표본 대체 과정에서 조사원의 임의적 대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예비표본 대체순서를 제시)

○ 근로자 추출

- 표본사업체 내에서는 성희롱 담당자와 근로자 대상 조사로 구분됨. 대개의 표본사업체에서 성희롱 담당자는 1인 또는 소수 인원이므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
- 표본사업체 내 조사대상자의 선정은 사업체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되 평균 6명(4-8명)을 조사하며, 성과 연령대 구분(40대 미만, 40대 이상)을 할당 기준으로 하는 할당추출법을 적용
- 표본 사업체에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성별 및 연령대별 분포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연령대 구분을 대신하여 직책을 기준으로 일반직원과 관리직으로 구분하여 조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표6> 사업체 규모별 조사 근로자 수

| 구분 | | 30-99인 | 100-299인 | 300-499인 | 500인 이상 | 계 |
|-----------|--------------|--------|----------|----------|---------|--------|
| 민간 사업체 | 표본사업체수 | 984 | 459 | 165 | 152 | 1,760 |
| | 사업체당 조사 근로자수 | 5 | 6 | 8 | 10 | |
| | 조사 근로자 수 | 4,920 | 2,754 | 1,320 | 1,520 | 10,514 |
| 공공기관 | 표본사업체수 | 436 | 185 | 68 | 81 | 770 |
| | 사업체당 조사 근로자수 | 5 | 6 | 8 | 10 | |
| | 조사 근로자 수 | 2,180 | 1,110 | 544 | 810 | 4,644 |

○ 근로자 성별 연령대별 할당 기준

- 추출률 : 남자 < 여성, 40대 미만 > 40대 이상

| 구분 | | 30-99인규모 | 100-299인 규모 | 300-499인 규모 | 500인 이상 규모 |
|----------|--------|----------|-------------|-------------|------------|
| 조사 근로자 수 | | 5 | 6 | 8 | 10 |
| 남자 | 40대 미만 | 1 | 1 | 2 | 2 |
| | 40대 이상 | 1 | 1 | 1 | 2 |
| 여자 | 40대 미만 | 2 | 3 | 3 | 4 |
| | 40대 이상 | 1 | 1 | 2 | 2 |

(2) 점검결과

표본설계 점검결과, 층화계통추출방법에 따른 층화 및 표본배분, 표본사업체, 근로자 추출방법이 절차에 맞게 잘 작성하고 있다.

다. 무응답 처리

(1) 현황

□ 무응답 대처

○ 항목무응답 대처 방법

1) 공공기관

- 문항별로 응답 범위 및 로직이 설정된 웹 조사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항목무응답 발생을 허용하지 않음

2) 민간사업체

- 주요 문항, 분기 문항, 응답자 특성 문항 등은 무응답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조사원 교육을 통해 무응답 발생 가능성이 높은 문항에 대해 교육하여 항목 무응답 방지
 - 조사원이 현장에서 항목무응답을 확인한 경우 응답자에게 즉시 확인 또는 전화하여 보완하며, 조사관리자의 내용 검토 중 항목무응답이 발견된 경우 사후 전화확인을 통해 보완조치함
 - COVID-19 상황에서 유치조사를 한 경우 무응답 하는 경우 발생하는 경우 전화로 재확인하고 불응하는 경우 무응답 허용
 - 그 외 개방형 문항을 ‘모름’으로 응답한 경우 범주형으로 다시 질문하고 강하게 응답 거절하는 경우 무응답 허용

○ 단위무응답 대처 방법

- 사전 접촉 단계에서 조사협조 공문 및 조사안내 팜플렛 발송하여 협조도 제고
- 조사 거절 유형별로 대처
 - 불응 : 최소 3회 이상 최대 4회 까지 시간대를 달리하여 접촉을 시도하고 강력거절하는 경우 최종거절 처리하고 표본대체
 - 부재 : 성희롱 관련 업무 담당자가 부재하는 경우 추후 접촉 가능한 시기를 확인하여 재접촉 시도 하고 접촉을 회피하는 경우는 조사관리자가 직접 연락하여 조사참여 독려
 - 부적격 : 명부 상의 업체가 아니거나 휴폐업 된 경우 표본대체
- 단위 무응답 발생 시 표본대체로 진행
 - 불응이나 불능사업체 발생으로 표본대체가 필요한 경우 연구진에게 보고 후 상황 검토를 거쳐 표본대체

□ 표본 대체

○ 표본 대체 허용 기준

- 단위 무응답에 따른 표본 대체 시 본표본과 업종, 종사자규모, 지역을

고려하여 가장 유사한 표본으로 대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본표본으로 선정된 사업체(기관)의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휴·폐업, 해당기관 아님 등) 사유에 대해 입력하도록 하고 접촉이 가능한 경우(재방문 요청, 담당자 부재 등)는 요일과 시간대를 달리하여 최대 4회까지만 접촉 시도함

<사업체 표본대체 허용 기준>

| 구 분 | 내 용 |
|----------|---------------------------------------|
| 조사 불응 | 조사대상 사업체 또는 이용자가 조사응답을 강력 거절 하는 경우 |
| 해당 기관 아님 | 조사대상 사업체가 업종 변경 등으로 모집단 정보와 다른 경우 |
| 휴·폐업 | 조사 대상 사업체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여 사업 활동하지 않는 경우 |
| 리스트 중복 | 조사대상 사업체가 표본사업체 명부에서 중복되어 있는 경우 |

○ 표본 대체 절차 및 방법

- 각 층에 배분된 표본사업체 수에 해당하는 본 표본과 5배수의 예비표본 사업체를 구성하고 본표본에 대해서 수차례 접촉으로도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비 표본 사업체 리스트를 이용하여 접촉하도록 하였음
- 조사대상 접촉 시 모바일(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 실사관리시스템에 접촉 상황을 입력하며, 최대 4회까지 접촉 기록을 입력하고 대체 필요한 경우 조사관리자에게 보고 후 담당연구원의 지침에 따라 대체 진행
- 표본대체는 [조사원→소속 실사 지점 SV→총괄 SV→담당연구원]의 과정을 거치며, 조사관리자 및 연구진은 접촉 기록을 확인하여 대체가 필요한 사업체(기관)에 대해 대체하도록 하며, 예비표본 대체 과정에서 조사원의 임의적 대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예비표본 대체순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였음
- 표본대체 허용기준에 따라 대체를 진행하고 동일한 업종, 종사자규모, 지역 등에서 대체표본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최근접층(1순위: 업종(기관유형), 2순위: 종사자 규모, 3순위: 지역)으로 대체
- 본표본과 대체표본을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 관리함

□ 주요 항목무응답 실태

○ 최초 항목무응답률

1) 공공기관

- CAWI(웹조사 시스템)상에서 입력 시 무응답을 허용하지 않아 항목무응답이 발생하지 않음

2) 민간사업체

- 항목 무응답은 대부분 조사과정 및 전화 검증 과정에서 보완되었으나, 일부 검증이 어려운 경우는 대체하지 않고 무응답 허용
- 항목 무응답률
 - 일반직원: 0.04% ~ 7.0%로 분포
 - 업무담당자: 0.07% ~ 0.4%로 분포

○ 주요 항목별 무응답률

1) 일반직원

| 구분 | 내 용 | 무응답률 |
|---------------------|------------------------------------|------------|
| 문4-8-4-1 ~ 문4-8-4-6 | 피해 신고 후 조력자가 사업주/기관장에 의해 불이익 받은 경험 | 5.26~7.02% |
| 문3-2 | 가장 최근에 받았던 성희롱 예방교육 방법 | 5.24% |
| 문4-9-1 ~ 문4-9-14 | 2차 피해경험 | 4.67~4.77% |
| 문4-1~문4-14 | 성희롱 피해경험 | 0.1% |

2) 업무담당자

| 구분 | 내 용 | 무응답률 |
|-----------------|----------------------|----------|
| 문3-1-1 ~ 문3-1-6 | 성희롱 관련 고충 상담 시 조치방법 | 0.4% |
| 문19 | 성희롱 사건처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 0.2~0.3% |
| DQ5 | 성희롱 방지관련 업무 담당 기간 | 0.3% |
| 문4 | 성희롱 발생 여부 | 0.04% |

○ 항목 무응답률 산출 산식

- 항목 무응답률(%) = $\frac{\text{항목에 응답하지 않은 조사 단위 수}}{\text{항목에 응답해야 하는 조사 단위 수}} \times 100$

□ 항목무응답 대체

○ 항목무응답 대체 방법

- 조사과정 및 전화검증 과정에서 무응답의 대부분을 보완했고 연구진 및 전문가 검토 후 일부 무응답을 허용하고 대체하지 않음
- 무응답된 기업체와 가장 유사한 대체층의 평균값으로 대체하는 경우, 무응답된 기업의 일반적인 특성을 반영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으나, 세부적인 기업내부 환경 등을 반영하기는 어려움
- 항목 무응답을 대체하지 않은 이유는 조사 주제 특성상 무응답 사례가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항목 무응답률이 낮음

□ 단위무응답 실태

○ 최초 단위무응답률 수치

- 본표본 공공기관 및 사업체에 대한 최초 단위 무응답률은 업무담당자 62.6%(공공 74.5%, 민간 57.4%), 일반직원 62.1%(공공 73.5%, 민간 57.1%)로 나타남

○ 단위무응답률 산출 산식

- 최초 단위 무응답률(%) = $\frac{\text{본표본사업체중조사미진행사업체수}}{\text{본표본사업체수}} \times 100$
- 표본 설계 시 예비표본을 미리 추출하여 대체가 필요한 경우 예비표본으로 조사 실시함

○ 주요 하위그룹 및 무응답 사유별 무응답률

- 공공기관

| 구분 | | 단위무응답 | | | 무응답사유 | | |
|-------------|--------|-------|------|-------|-------|-------|-------|
| | | 본표본 | 무응답수 | 무응답률 | 불응 | 접촉불가 | 부적격 등 |
| 전체 | | 770 | 574 | 74.5% | 47.2% | 41.1% | 11.7% |
| 공공 기관유형 | 국가기관 | 184 | 126 | 68.5% | 37.3% | 42.1% | 20.6% |
| | 지방자치단체 | 126 | 93 | 73.8% | 40.9% | 50.5% | 8.6% |
| | 초/중/고 | 343 | 271 | 79.0% | 55.0% | 37.6% | 7.4% |
| | 대학 | 117 | 84 | 71.8% | 44.0% | 40.5% | 15.5% |
| 공공기관 종사자 | 30~99인 | 436 | 352 | 80.7% | 50.3% | 39.2% | 10.5% |

| | | | | | | | |
|----|----------|-----|-----|-------|-------|-------|-------|
| 규모 | 100~299인 | 185 | 132 | 71.4% | 41.7% | 47.0% | 11.4% |
| | 300~499인 | 68 | 41 | 60.3% | 48.8% | 34.1% | 17.1% |
| | 500인 이상 | 81 | 49 | 60.5% | 38.8% | 44.9% | 16.3% |

- 민간사업체

| 구분 | | 단위무응답 | | | 무응답사유 | | |
|------------------------|------------------------------------|-------|-------|-------|-------|-------|-------|
| | | 본표본 | 무응답수 | 무응답률 | 불응 | 접촉불가 | 부적격 등 |
| 전체 | | 1,760 | 1,011 | 57.4% | 47.0% | 45.4% | 7.6% |
| 사업체 유형 | 제조업 | 441 | 272 | 61.7% | 48.9% | 44.9% | 6.3% |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222 | 133 | 59.9% | 44.4% | 41.4% | 14.3% |
| | 개인서비스업 | 229 | 123 | 53.7% | 50.4% | 43.1% | 6.5% |
| | 유통서비스업 | 226 | 127 | 56.2% | 50.4% | 43.3% | 6.3% |
| | 사업서비스업 | 309 | 175 | 56.6% | 34.9% | 58.9% | 6.3% |
| | 사회서비스업 | 333 | 181 | 54.4% | 53.0% | 39.2% | 7.7% |
| 민간 사업체 종사자 규모 | 30~99인 | 984 | 565 | 57.4% | 45.8% | 43.9% | 10.3% |
| | 100~299인 | 459 | 253 | 55.1% | 46.2% | 47.8% | 5.9% |
| | 300~499인 | 165 | 105 | 63.6% | 52.4% | 46.7% | 1.0% |
| | 500인 이상 | 152 | 88 | 57.9% | 50.0% | 46.6% | 3.4% |

(2) 점검결과

본 조사는 항목무응답 현황과 단위무응답을 잘 관리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원표본 단위무응답률과 하위그룹별 무응답사유 등에 대해서도 잘 파악하고 있다.

라. 추정

(1) 현황

□ 가중치 산출

1) 설계가중치 산출

- 민간사업체 대상 조사의 표본사업체는 산업대분류(16)와 사업체 규모(4)를 층으로 하는 층화계통추출법에 의해서 추출되었음. 따라서, 산업대분류와 사업체 규모로 결정되는 각 세부 층에서 표본사업체의 추출률은 동일함.

$$\text{추출확률} = \frac{\text{해당 층의 표본 사업장 수}}{\text{해당 층의 모집단 사업장 수}} = \frac{n_h}{N_h}$$

- 각 표본 사업장의 설계 가중치(design weight)는 앞서 구한 표본사업체 추출확률의 역수로 다음과 같이 계산됨

$$w_i = 1/\text{추출확률} = N_h/n_h$$

- 공공기관 대상 조사의 표본사업체는 유형 구분(4)와 규모(4)를 층으로 하는 층화계통추출법에 의해서 추출되었음. 따라서 유형 구분과 규모로 결정되는 각 세부 층에서 표본 공공기관의 추출률은 동일함.

$$\text{추출확률} = \frac{\text{해당 층의 표본 공공기관 수}}{\text{해당 층의 모집단 공공기관 수}} = \frac{n_h}{N_h}$$

- 각 표본 공공기관의 설계 가중치(design weight)는 추출확률의 역수로 다음과 같이 계산됨

$$w_i = 1/\text{추출확률} = N_h/n_h$$

2) 무응답가중치 조정

- 표본설계에서의 층화변수와 마찬가지로 산업대분류 구분(공공기관의 경우는 기관유형 구분)과 사업체 규모를 고려함

$$\text{무응답 보정 가중치} = \frac{n_h}{r_h}$$

· 여기서, n_h : h 층의 표본 사업체 수, r_h : h 층의 실제 응답 사업체 수

3) 사후가중치 조정

- 사후층화(post-stratification) 조정은 사업체 특성 변수에 대해서 모집단과 표본 자료의 분포를 일치시키는 과정임. 사후층화 단계에서도 산업대분류 (또는 기관 유형)와 사업체 규모 구분을 층화변수로 이용함. 최종 사업체 가중치는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최신 모집단 정보를 이용하여 사후층화 보정의 단계를 거쳐서 다음과 같이 구함
- 사후층화 단계에서는 사업체 수와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두 가지

유형의 가중치를 산출함.

- 사업체 수 기준의 가중치는 사업체 수준의 응답항목에 대한 분석에 활용
- 상시근로자 수 기준의 가중치는 각종 근로자 수 추정의 목적에 활용하도록 함

4) 사업체 최종 가중값

- 사업체 최종 가중치 = 설계가중치×무응답조정계수×사후층화보정 가중치

5) 근로자 1차 가중값

- 사업체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근로자 개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됨.
근로자 조사 가중치는 사업체 대상의 가중치 중 무응답 조정까지 반영된 가중치에 대해서 이후 표본 사업체 내 근로자 추출률의 역수를 이용하여 조사 근로자에 대한 가중치를 산출함

$$\text{근로자 1차 가중치} = \text{설계가중치} \times \frac{\text{표본사업체의 해당 성 및 연령대의 전체 근로자 수}}{\text{표본사업체의 해당 성 및 연령대의 응답 근로자 수}}$$

6) 근로자 최종가중값

- 근로자에 대한 1차 가중치에 사후층화 조정을 거쳐 최종 가중치를 산출함.
사후층은 최신 모집단의 산업대분류와 사업체 규모 구분, 최종 가중치는 의 근로자 수에 대해서 사후층화 보정의 단계를 거쳐 다음과 같이 구함

$$\text{근로자 최종 가중치} = \text{근로자 1차 가중치} \times \text{사후층화 조정값}$$

- 근로자를 추출하는 과정은 해당 표본사업체에서 전체 근로자 명부를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근로자 조사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가중치를 엄밀한 절차에 따라 산출하기 어려운 상황임.
-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근로자 조사를 위한 가중치는 해당 표본 사업체에서 전체 근로자 중에서 랜덤추출된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한 것으로 실제 표본사업체 내 근로자 추출 과정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따라서 가중치를 반영하여 분석된 결과를 해석할 때는 이와 같은 한계점을 인식해서 주의하여 해석해야 할 것임

□ 통계추정 산식 및 내용

○ 추정하고자 하는 주요 모수

- 지난 3년간 성희롱 피해 경험율, 지난 3년간 2차 피해 경험율의 모비율

○ 추정 산식

- 모평균(모비율) 추정을 위해서 사용된 가중치를 이용한 추정량

$$\bar{y} = \frac{\sum_{h=1}^L \sum_{i=1}^{n_h} w_{hi} y_{hi}}{\sum_{h=1}^L \sum_{i=1}^{n_h} w_{hi}} = \frac{\sum_{h=1}^L \sum_{i=1}^{n_h} w_{hi} y_{hi}}{w_{..}}$$

- 여기서, y_{hi} 는 각 표본 사업체에서 얻은 조사값이고, w_{hi} 는 각 응답 사업체 또는 근로자에 부여된 가중치이고, y_{hi} 는 각 응답결과로 모비율 추정의 경우는 특정 속성을 갖고 있는 경우는 1, 아니면 0의 값을 갖게 됨. L 은 층 수, n_h 는 층 h 에서의 응답한 사업체 또는 응답자 수임.

$$w_{..} = \sum_{h=1}^L \sum_{i=1}^{n_h} w_{hi} \text{은 전체 응답자에 대한 가중치의 합계}$$

□ 표본오차 추정 방법 및 결과

1) 분산, 표준오차 등의 추정방법

○ 추정량의 분산

- 분산추정량 : $\widehat{var}(\bar{y}) = \sum_{h=1}^L \frac{n_h(1-f_h)}{n_h-1} \sum_{i=1}^{n_h} (e_{hi} - \bar{e}_h)^2$

· 여기서, $e_{hi} = \left(\sum_k w_{ki} (y_{ki} - \bar{y}) \right) / w_{..}$, $\bar{e}_h = \left(\sum_{i=1}^{n_h} e_{hi} \right) / n_h$, $w_{..} = \sum_{h=1}^L \sum_{i=1}^{n_h} w_{hi}$

○ 표준오차

$$\widehat{se}(\bar{y}) = \sqrt{v(\bar{y})}$$

- 상대표준오차(변동계수)

$$rse(\bar{y}) = \frac{se(\bar{y})}{\bar{y}} \times 100(\%)$$

- 95% 신뢰수준의 오차의 한계

$$1.96 \times \sqrt{v(\hat{p})}$$

2) 주요 항목들에 대한 상대표준오차, 신뢰구간

- 2021년 기준 성희롱실태조사 연구 보고서
 - II. 조사설계 부문의 5. 오차분석(가. 오차분석 방법, 나. 주요 통계표에 대한 오차분석 결과)을 통해 상대표준오차와 상세한 분석을 제시함

36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 연구

보면, 전반적으로 RSE 값이 25% 미만으로 신뢰성에 문제가 없는 양호한 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사건 처리 단계별로 보면, 각각 사건조사 6.1%, 사건 발생 7.1%, 사건(성희롱) 인정 7.9% 순으로 낮았고, 사건심의가 8.1%로 가장 높았다.

〈표 II-18〉 지난 3년간 성희롱 사건 처리 현황(합계)

(단위: 건, %)

| 구분 | 발생 건수 | 조사 건수 | 심의 건수 | 성희롱 인정 건수 |
|-----|-------|-------|-------|-----------|
| 합계 | 7,651 | 6,028 | 4,407 | 3,708 |
| RSE | 7.1 | 6.1 | 8.1 | 7.9 |

주: 합계는 발생 건수 252명, 조사 건수 252명, 심의 건수 224명, 인정 건수 180명의 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2) 점검결과

가중치 산출과정에서 설계가중치, 무응답조정가중치, 사후층화가중치를 산출하여 사업체 최종가중치를 작성하고, 이후 사업체 내 근로자의 분포를 이용하여 근로자 가중치를 작성하는 과정을 자세히 기술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수식을 수정하도록 한다.

- 수정 전

근로자 1차 가중치

$$= \text{설계가중치} \times \frac{\text{표본사업체의 해당 성 및 연령대의 전체 근로자수}}{\text{표본사업체의 해당 성 및 연령대의 응답 근로자수}}$$

- 수정 후

근로자 1차 가중치

$$= \text{사업체최종가중치} \times \frac{\text{표본사업체의 해당 성 및 연령대의 전체 근로자수}}{\text{표본사업체의 해당 성 및 연령대의 응답 근로자수}}$$

그리고 주요 문항에 대해 결과보고서의 오차분석 부분을 할애하여 오차분석 방법과 주요 문항의 오차분석을 제시하고 있는 점은 통계청의 표본설계 및 관리지침을 아주 잘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붙임6

마이크로데이터 품질 점검 결과

| | |
|---------|----------|
| 통 계 명 | 성희롱실태조사 |
| 승 인 번 호 | 154018 |
| 작 성 기 관 | 여성가족부 |
| 연 구 원 | 오유진 |
| 연구보조원 | 최다빈, 조예주 |

제1부 **점검 개요**

I. 점검 개요

- 마이크로데이터 품질점검 시 검토한 자료
 - 통계정보보고서(통계작성 기획, 통계설계, 통계처리 및 분석)
 - 통계보고서
 - 조사표, 항목 및 코드집, 가중치
 - 통계승인사항

- 마이크로데이터 품질점검 내용
 - 관리 주체, 마이크로데이터 메타자료 현황 점검
 - 표본설계와의 일치성 점검
 - 공표자료와 마이크로데이터 집계치의 일치율 점검

II. 마이크로데이터 개요

| | | |
|-----------|---|----------|
| 조 사 명 | 성희롱실태조사 | |
| 작 성 기 관 명 | 여성가족부 | |
| 작 성 주 기 | 3년 | |
| 작성기준년도 | 2021년 | |
| 전수/표본조사 | 전 수() | 표 본(●) |
| 조 사 대 상 |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민간 사업체 | |
| 주요 조사항목 | ○ 업무담당자용 - 성희롱 관련 업무 운영 현황,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업무 수행 및 정책 수요, 응답자 특성 ○ 일반직원용 - 직장내 조직문화,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피해 경험, 성희롱 업무 부서 인지도 및 정책 수요, 응답자 특성 등 | |

제2부 점검 결과 요약

| 구 분 | 점검결과 | 개선의견 | 비 고 |
|-----------------------|--|-------------------------------|----------------------------|
| 마이크로데이터 생성·관리 현황 | - 작성기관, 위탁기관, 용역기관에서 생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 | 정량평가 (V-13. 마이크로데이터 생성·관리) |
|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현황 | - 마이크로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지 않음 | - MDIS(통계청)를 통해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검토 | 정량평가 (V-14.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
| 마이크로데이터 관련 메타자료 보유 현황 | - 가중치를 포함한 마이크로데이터, 조사표, 코드집 및 파일설계서, 공표용 보고서 등의 메타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 | 정성평가 |
| 일치율 | - KOSIS 통계표와 마이크로데이터 간의 일치 여부 최종 점검 결과, 92개의 통계표 중 92개(100%)의 통계표가 일치함 - 점검 중 산출오류로 수치 불일치 확인되어 1개의 KOSIS 통계표가 수정됨 - 점검 중 데이터 오류로 수치 불일치가 확인되어 데이터 재제출 및 53개의 KOSIS 통계표가 수정됨 | - 체계적인 마이크로데이터 관리 | 정량평가 (V-15. 마이크로데이터 일치율) |
| 표본설계와의 일치성 | - 모수추정식에 따른 통계를 산출하고 있음 | - | 정성평가 (IV.통계처리 및 분석) |
| | - 표본 배분 결과와 마이크로데이터 건수가 다소 차이남 | - 표본설계에 따른 조사수행 관리 | 정성평가 (III.자료수집) |
| 기타 | - 일치율 점검 과정에서 KOSIS 통계표 수정에 따라 이전에 공표된 보고서도 수정됨 | - 공표 후 오류에 대한 조치사항 공지 | - |

제3부 마이크로데이터 품질 점검 결과

1. 점검 개요

마이크로데이터 품질점검은 통계작성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마이크로데이터 및 관련 메타자료를 제공받아 기초점검 및 실질점검(표본설계와의 일치성 점검, 일치율 점검)을 실시하였다.

기초점검은 관리기관 적합성과 메타자료 적정성(누락자료, 파일형태, 주요항목의 이상여부)을 점검하며, 실질점검은 표본설계와의 일치성(표본 크기, 모수 추정식 등)을 점검하고 현재 공표된 통계표와의 수치비교를 통하여 마이크로데이터 정합성을 점검하는 것이다.

점검결과는 관리기관 적합성, 메타자료 적정성에 대하여 점검 의견으로 정리하였고, 마이크로데이터 오류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마이크로데이터 품질점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요구사항 등을 종합하여 정리 및 분석하였다.

2. 점검 결과

(1) 마이크로데이터 생성·관리 현황

성희통실태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는 작성기관인 여성가족부와 위탁기관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그리고 용역기관에서 3년 주기로 생성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성희통실태조사는 구조화된 조사표 활용하며 용역업체에서 조사오류, 입력오류 점검을 하고 입력 후 오류점검은 용역업체, 위탁업체, 작성기관에서 다중 점검 후 오류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마이크로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생성된 마이크로데이터는 통계작성기관에서 원자료 관리 지침을 준용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현황

성희롱실태조사는 현재 마이크로데이터를 서비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낮은 성희롱 경험률로 인하여 주요 변수에 대한 세분화 시 개인정보 문제와 통계품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마이크로데이터를 서비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3) 마이크로데이터 관련 메타자료 보유 현황

통계이용자가 마이크로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데이터뿐만 아니라 마이크로데이터에 대한 메타자료도 필요하다. 데이터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메타자료에는 조사표, 코드집 및 파일설계서, 공표용 보고서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조사지침서, 내검규칙, 집계표설계서 등의 참고자료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 데이터 스크립트, 리코딩 방법, 가중치 산술식, 통계기법 설명자료 등이 필요하다. 성희롱실태조사의 경우, 조사표, 항목 및 코드집, 공표용 보고서, 가중치 등의 필수자료와 조사지침서, 내검 규칙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점검용 자료 제출여부>

| 항목 | 상세 | 제출여부 | 비고 |
|----------|---|------|----|
| 마이크로 데이터 | KOSIS 집계표 기준 모든 변수 및 가중치 포함 (TXT, SPSS, SAS, XLSX 등 형식) | 제출 | - |
| 필수 메타자료 | 조사표 | 제출 | - |
| | 코드집 및 파일설계서 (무응답 처리방법 포함) | 제출 | - |
| | 공표용 보고서 | 제출 | - |

(4) 일치율

성희롱실태조사는 보고서와 마이크로데이터를 통해 재현한 통계표 간 일치율 최종 점검 결과, 92개의 통계표 중 92개(100%)의 통계표가 모두 일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품질점검 과정에서 [업무담당자] 부문은 5개 통계표에서, [일반직원] 부문은 49개의 통계표에서 수치 불일치를 확인하였으며, 해당 통계표의 불일치 원인은 다음과 같다.

[업무담당자] 부문의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조치결과 (중복응답)] 통계표는 산출오류로, ‘민간사업체 업종별’ 에서 제조업 부문의 합계 건수에 오류가 있어 1개의 KOSIS 통계표가 수정되었다. [성희롱 예방교육 진행 방식 및 교육 방법] 통계표와 [정부의 직장 내 성희롱 방지대책 실효성] 통계표는 이전에 특정 응답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데이터가 집계되어야 하는데, 특정 조건이 반영되지 않아 수치 오류가 발생하였다. [성희롱 업무의 어려움] 통계표와 [성희롱 사건처리 과정의 어려움] 통계표의 경우, ‘성희롱방지업무 담당기간’ 을 공표하는데 분석변수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모름/무응답(99)’ 값이 ‘10년 이상’ 으로 포함되는 오류로 인해 수치 불일치가 발생하였다. 이에 작성기관은 수정된 마이크로데이터를 재제출하였으며, 4개의 KOSIS 통계표가 수정되었다.

[일반직원] 부문은 마이크로데이터 오류가 확인되었으며,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응답자의 연령값이 모두 ‘50대 이상’ 으로 입력되어 수치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작성기관에서 이를 수정하여 마이크로데이터를 재제출하였으며, [일반직원] 부문의 49개 통계표 모두 ‘연령’ 특성을 공표하기 때문에 KOSIS 통계표 49개가 수정되었다.

<최종 일치율 점검 결과>

| 계 | 점검 집계표 수(개) | | 일치율(%) |
|----|-------------|-------|--------|
| | 일치 수 | 불일치 수 | |
| 92 | 92* | 0 | 100 |

* 소수점 차이 포함(한 단위 이하)

(5) 표본설계와의 일치성¹⁾

정확성 높은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표본설계에 따른 추정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표본설계와의 일치성 점검에서는 주요 모수를 대상으로 추정식과

1) 점검용 마이크로데이터에서 확인 가능한 변수로 점검한 결과임

동일하게 집계하고 있는지 여부, 표본 설계된 표본크기와 마이크로데이터 건수 간 일치 여부를 점검한다.

먼저, 본 통계의 모수 추정식을 마이크로데이터 및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해 검증한 결과, <참고 1> 추정식과 동일하게 집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참고 1>

모수 추정식

$$\bar{y} = \frac{\sum_{h=1}^L \sum_{i=1}^{n_h} w_{hi} y_{hi}}{\sum_{h=1}^L \sum_{i=1}^{n_h} w_{hi}} = \frac{\sum_{h=1}^L \sum_{i=1}^{n_h} w_{hi} y_{hi}}{w_{..}}$$

(y_{hi} : 각 표본 사업체에서 얻은 조사값, 모비율 추정 시, 특정 속성을 갖고 있는 경우는 1, 아니면 0의 값)

(w_{hi} : 각 응답 사업체 또는 근로자 가중치, $w_{..} = \sum_{h=1}^L \sum_{i=1}^{n_h} w_{hi}$: 전체 응답자 가중치 합)

(L : 층 수, n_h : 층 h 에서의 응답한 사업체 또는 응답자 수)

본 통계는 민간사업체와 공공기관을 구분하여 표본 설계하였으며, 각 표본 사업체 내 조사대상자를 성희롱 업무담당자와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하였다. 표본설계와의 일치성 점검은 민간사업체와 공공기관 부문에서 추출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에 대해 표본설계와의 일치성을 점검한 결과, 우선 민간사업체 부문에서 <참고 2>와 같이 업종별과 종사자 규모별로 보면 대체로 일치하지만, 세부층으로 살펴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300-499인’, ‘숙박 및 음식점업의 100-299인’ 등에서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공공기관 부문에서는 <참고 3>과 같이 공공기관 유형 ‘초·중·고등학교’와 종사자규모 ‘500인 이상’ 층 등에서 표본 배분 결과와 마이크로데이터 건수 간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참고 2 (민간사업체)>

할당 표본 크기

(단위 : 개)

| 업종별 | 30-99인 | 100-299인 | 300-499인 | 500인 이상 | 계 |
|----------------------------|--------|----------|----------|---------|-------|
| C. 제조업 | 230 | 102 | 34 | 31 | 397 |
|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7 | 4 | 3 | 2 | 16 |
| E.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 20 | 5 | 0 | 0 | 25 |
| F. 건설업 | 105 | 52 | 20 | 20 | 197 |
| G. 도매 및 소매업 | 110 | 51 | 17 | 11 | 189 |
| H. 운수업 | 68 | 43 | 10 | 8 | 129 |
| I. 숙박 및 음식점업 | 40 | 8 | 4 | 4 | 56 |
|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57 | 29 | 14 | 12 | 112 |
| K. 금융 및 보험업 | 24 | 8 | 4 | 5 | 41 |
|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 15 | 5 | 1 | 1 | 22 |
|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 59 | 27 | 13 | 11 | 110 |
|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56 | 41 | 20 | 21 | 138 |
| P. 교육 서비스업 | 24 | 6 | 1 | 0 | 31 |
|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 | 130 | 65 | 20 | 25 | 240 |
|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18 | 7 | 3 | 1 | 29 |
|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21 | 6 | 1 | 0 | 28 |
| 합계 | 984 | 459 | 165 | 152 | 1,760 |

마이크로데이터 건수

(단위 : 개)

| 업종별 | 30-99인 | 100-299인 | 300-499인 | 500인 이상 | 계 |
|----------------------------|--------|----------|----------|---------|-------|
| C. 제조업 | 266 | 110 | 34 | 27 | 437 |
|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5 | 3 | 3 | 5 | 16 |
| E.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 22 | 3 | 0 | 0 | 25 |
| F. 건설업 | 79 | 54 | 19 | 16 | 168 |
| G. 도매 및 소매업 | 98 | 52 | 13 | 7 | 170 |
| H. 운수업 | 62 | 47 | 10 | 8 | 127 |
| I. 숙박 및 음식점업 | 38 | 5 | 3 | 6 | 52 |
|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48 | 30 | 12 | 11 | 101 |
| K. 금융 및 보험업 | 29 | 9 | 3 | 4 | 45 |
|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 16 | 6 | 1 | 1 | 24 |
|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 59 | 22 | 13 | 10 | 104 |
|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53 | 39 | 21 | 20 | 133 |
| P. 교육 서비스업 | 28 | 8 | 2 | 0 | 38 |
|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 | 134 | 68 | 26 | 23 | 251 |
|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22 | 8 | 3 | 1 | 34 |
|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20 | 7 | 1 | 0 | 28 |
| 합계 | 979 | 471 | 164 | 139 | 1,753 |

<참고 3 (공공기관)>

할당 표본 크기

(단위 : 개)

| 공공기관 유형 | 30-99인 | 100-299인 | 300-499인 | 500인 이상 | 계 |
|--------------|--------|----------|----------|---------|-----|
| 국가기관 | 88 | 52 | 25 | 19 | 184 |
|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 54 | 20 | 19 | 33 | 126 |
| 초·중·고등학교 | 260 | 82 | 1 | 0 | 343 |
| 대학교 | 34 | 31 | 23 | 29 | 117 |
| 합계 | 436 | 185 | 68 | 81 | 770 |

마이크로데이터 건수

(단위 : 개)

| 공공기관 유형 | 30-99인 | 100-299인 | 300-499인 | 500인 이상 | 계 |
|--------------|--------|----------|----------|---------|-----|
| 국가기관 | 105 | 89 | 44 | 14 | 252 |
|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 50 | 14 | 17 | 55 | 136 |
| 초·중·고등학교 | 194 | 66 | 0 | 0 | 260 |
| 대학교 | 25 | 32 | 22 | 32 | 111 |
| 합계 | 374 | 201 | 83 | 101 | 759 |

(6) 기타

마이크로데이터 일치율 점검과정에서 [일반직원] 부문의 [직장내 조직문화(1)] 등 49개, [업무담당자] 부문의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조치결과 (중복응답)] 등 5개의 KOSIS 통계표가 수정됨에 따라 이전에 공표된 보고서의 수정이 이루어졌다.

3. 주요 개선의견

(1) MDIS(통계청)를 통해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검토

통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통계청 MDIS를 통한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시 이용자들은 정책반영, 연구목적, 현황 파악 등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이용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MDIS를 통해 개인정보 및 사업체 기밀사항 등을 마스킹 처리하여 식별 가능성을 제거한 마이크로데이터와 메타자료가 제공될 수 있다. 메타자료에는 통계이용자들이 마이크로데이터를 오용하지 않도록 분석 방법 등의 설명이 제공되어야 한다.

(2) 체계적인 마이크로데이터 관리

통계공표에 사용한 최종 마이크로데이터는 작성기관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한다. 성희롱실태조사의 경우 품질점검 과정에서 데이터 오류와 산출오류 등으로 인해 KOSIS와 보고서의 통계표 수치가 수정되었다. 정확한 통계산출을 위해 마이크로데이터가 최종자료로 생성되기까지의 과정 등을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3) 표본설계에 따른 조사수행 관리

본 통계의 표본설계 내역서에 제시된 층별 표본 수와 마이크로데이터 건수 간 비교 결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민간사업체 부문의 세부층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300-499인’, ‘숙박 및 음식점업의 100-299인’ 등에서 표본 배분 결과와 마이크로데이터 건수 간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편차를 줄이기 위해 향후 작성기관에서 표본설계에 따른 조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표본오차를 줄이고, 통계의 정확성 향상 등 통계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4) 공표 후 오류에 대한 조치사항 공지

통계자료 공표 후 오류가 발견되어 수정 조치를 한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여 차후에 이런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수정 전 공표자료를 이용한 이용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오류의 내용, 원인, 수정 내용, 조치 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해 공지하여 이용자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 [참고] 점검 집계표 일치 여부

<점검 집계표별 일치 여부>

| 구분 | 영역 | 통계표명 | 일치 여부 | | |
|----------------|-------------------------------|------------------------------------|--------------|-----------------------------|----|
| KOSIS (92개) | 업 무 담 당 자 (43)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시스템 구축 현황 | 일치 | | |
| | | 사업주/기관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방지 위한 적극적 노력 여부 | 일치 | | |
| | | 사업주/기관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방지 위한 책무 언급 여부 | 일치 | | |
| | | 지난 3년간 성희롱 고충상담 건수 | 일치 | | |
| | | 지난 3년간 성희롱 고충상담 시 조치 | 일치 | | |
| | | 지난 3년간 성희롱 사건 발생 현황 | 일치 | | |
| | | 지난 3년간 성희롱 사건 처리 현황 | 일치 | | |
| | | 조사신청 후 조사종료까지의 소요 시간 | 일치 | | |
| | | 조사 진행자 (복수응답) | 일치 | | |
| | | 성희롱 재발방지 대책 수립 추진 여부 | 일치 | | |
| | | 성희롱 재발방지 대책 추진 내용 (복수응답) | 일치 | | |
| | | 성희롱 재발방지 대책의 여성가족부 제출 여부(공공기관만 해당) | 일치 | | |
| | | 성희롱 피해자의 2차 피해 목격 경험 여부 | 일치 | | |
| | | 성희롱 피해자의 2차 피해 목격 경험 | 일치 | | |
| | |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정책 | 일치 | | |
| | |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 | 일치 | | |
| | | 성희롱 피해 신고 활성화 위해 필요한 정책 | 일치 | | |
| | | 성희롱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정책 | 일치 | | |
| | | 성희롱 2차 피해 방지 위해 필요한 정책 | 일치 | | |
| | |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 | 일치 | | |
| | | 일 반 직 원 (49) | 직장 내 조직문화(1) | 직장 내 조직문화(1) | 일치 |
| | | | | 직장 내 조직문화(2) | 일치 |
| | | | | 성별에 기반한 부정적인 언행 경험 여부 | 일치 |
| | | | | 예방교육 현황 | 일치 |
| | | | | 성희롱 예방교육 이후 본인이 경험한 변화 | 일치 |
| | | | | 성희롱 예방교육의 효과 및 미효과 이유 | 일치 |
| | | | | 성희롱 피해 경험 여부 | 일치 |
| | | | | 성희롱 행위자와의 관계 | 일치 |
| | | | | 성희롱 유형별 피해 경험 | 일치 |
| | | | | 성희롱 행위자 성별 | 일치 |
| | | | | 성희롱 2차 피해에 대한 기관의 조치 (복수응답) | 일치 |
| | | | | 성희롱 목격 경험 여부 | 일치 |
| | | | | 정부의 직장 내 성희롱 방지대책의 실효성 | 일치 |
| | | | | 지난 3년간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변화 | 일치 |
| | | | |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정책 | 일치 |
| | | | |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 | 일치 |
| | | 성희롱 피해 신고 활성화 위해 필요한 정책 | 일치 | | |
| | | 성희롱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정책 | 일치 | | |
| | | 성희롱 2차 피해 방지 위해 필요한 정책 | 일치 | | |
| | |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 | 일치 | | |

* 점검한 총 92개 표 중 유형별 일부 집계표만 나열함

부 록. 통계품질진단 개요

1. 통계품질진단의 개념

현대적 의미의 통계품질은 ‘통계가 이용자에게 얼마나 이용하기 적합하게 작성 및 제공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특성’으로서 통계품질관리는 ‘통계이용자들에게 통계를 사용하는데 적합하도록 생산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 만족을 주면서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통계를 작성·보급·관리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통합하는 체계’를 말한다.

따라서, 통계품질진단이란 생산된 통계가 이용자에게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으로서 국가 정책 결정의 기초 자료로 이용되는 국가승인통계에 대한 품질수준을 진단하여 국가통계의 품질 향상 및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통계청에서는 통계품질의 수준을 관련성, 정확성, 시의성/정시성, 비교성/일관성, 접근성/명확성이라는 5가지 차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통계품질진단은 5가지 차원의 품질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고 각 차원의 품질수준을 높이기 위해 통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통계청이 제시한 통계품질진단의 과정은 첫째, 통계정보보고서를 활용한 품질진단, 둘째, 자료수집 체계 점검, 셋째, 조사표 설계 및 유사통계 비교·분석 점검, 넷째, 표본설계 점검, 다섯째,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실태 점검, 여섯째, 마이크로데이터 품질 점검, 일곱째, 공표자료 오류 점검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통계생산과정에 대한 품질관리에 기초한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이 높은 우수한 통계를 생산함과 동시에 이렇게 생산된 통계가 향후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통계품질진단의 필요성과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2. 통계품질진단 체계

가. 통계정보보고서 작성

통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통계자료와 함께 해당 통계의 작성 방법 등의 정보 요구도 높아졌다. 그동안의 품질진단에서는 통계작성 절차에 따른 양적·질적 정보를 「통계정보보고서」로 작성하여 통계 이용자에게 제공하였다. 또한, 통계생산자가 통계생산의 기반자료로 활용하여 절차적 품질 수준을 향상하도록 하였다.

이에 새롭게 생산된 통계도 이용자용 가이드이자 생산자용 편람으로 사용하기 위한 「통계정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통계는 기존에 작성된 「통계정보보고서」를 보완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나. 통계정보보고서 활용 진단

이용자의 정확한 이해와 활용, 통계제반과정 및 산출물에 대한 정보 등 각 과정에 대한 품질정보 제공을 위한 통계정보보고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단에서는 「통계정보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는 6개의 작성절차별로 품질지표를 구성하여 통계의 품질수준을 측정하며, 기본적인 통계작성절차를 준수하는지 여부도 점검한다.

(1) 제1장 통계작성 기획

통계 이용자의 입장에서 통계의 특성과 필요성 등 핵심적인 내용이 통계 개요에 수록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통계작성절차 전반에 대하여 진단한 결과를 작성한다. 또한 통계에 대한 작성목적이 명확한지, 통계의 주된 활용 분야가

무엇인지 등을 진단하고, 통계를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관리 및 의견수렴 등에 대한 점검 결과를 기반으로 진단결과를 작성한다.

(2) 제2장 통계설계

통계는 작성목적에 맞게 조사내용 및 조사표를 설계하여야 하며, 응답자에게 조사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응답자가 쉽게 응답할 수 있도록 용어나 분류 기준 등을 국내 또는 국제기준을 적용하는지 점검하고, 조사표의 기본 구성요소에 대한 수록 여부 등을 진단한다. 또한, 통계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 진화하고 발전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조사표의 변경이력 등이 관리되고 있는지 진단한다.

또한, 조사를 위해서는 모집단과 표본추출틀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하며, 특히 표본 조사의 경우 표본설계 및 모집단과 표본추출틀의 주기적인 갱신 등을 검토하고 진단결과를 작성한다.

(3) 제3장 자료수집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조사표를 이용하여 응답자로부터 응답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작업이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도 변화하고 있으며, 응답률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면접조사의 경우, 조사원의 채용 및 교육 등은 조사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 조사를 위한 업무, 조사준비, 홍보, 명부보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진단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관리방안 등이 마련되어 있는지도 진단한다. 그리고 무응답이 발생한 경우, 적절한 대체 방법이 강구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 사후조사 실시 여부 및 결과 조치방안을 확인한다. 위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진단결과를 작성한다.

또한 조사환경이 열악해짐에 따라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조사 자료의 보완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통계에 활용하는 행정자료의 활용 목적 및 내용, 특성 등을 파악하여 본 통계작성에 활용하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진단 결과를 작성한다.

(4) 제4장 통계처리 및 분석

수집된 자료를 시스템적으로 검토하고 작성하기 위해, 코딩 및 코드체계 등이 정립되어 있는지와 입력된 자료를 기반으로 자료를 내검하는 방식과 무응답의 유형에 따른 실태 등을 점검한다. 수집된 자료 중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행정자료의 매칭방법 등을 대해 검토하고 진단 결과를 작성한다. 즉, 통계로 작성되기 위해 사용되는 자료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하여 점검한 후 진단 결과를 작성한다.

수집된 자료에 대한 기본적인 정제작업이 완료되면, 이것을 기반으로 통계를 추정하고 분석하게 된다. 통계추정을 위해선 표본설계 당시와 동일하게 조사되지 못한 부분을 가중치 조정 등을 통해 추정을 실시하고, 주요 항목들에 대한 변동계수 등이 기획의도와 동일하게 도출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한다.

특히 지수를 작성하는 통계의 경우, 지수 유형 및 산식 등을 점검하고 개편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한, 계절조정이 필요한 통계의 경우, 계절조정과정 및 내용에 대하여 점검한다. 이 모든 과정에 대하여 점검하고 진단결과를 작성한다.

(5) 제5장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통계가 작성되면 그 통계결과를 공표하여 이용자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용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사전에 공지하여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표일정, 통계설명자료 제공현황, 마이크로데이터 제공현황, 비밀보호 및 보안사항 등을 점검하고 진단결과를

작성한다. 또한 통계작성방법 유지, 시계열 단절 여부 등과 동일영역 통계와의 일관성 등도 점검하고 진단결과를 작성한다.

(6) 제6장 통계기반 및 개선

통계를 작성하는 환경에 대한 진단 또한 통계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통계를 기획하고 분석하는 인력 현황과 위탁에 의해 작성되는 경우, 통계청에서 제시한 통계조사 민간위탁 지침의 준수여부와 통계품질향상을 위한 노력 등을 점검하고 진단결과를 작성한다.

다. 자료수집 체계 점검

자료수집체계 점검은 조사기획자, 조사관리자, 조사원 등 자료수집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료가 정확히 수집되었는지, 절차적 오류는 없는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자료수집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료수집 오류의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발생한 또는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찾아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자료수집 과정에서의 품질을 개선하려는 과정이다.

라.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실태 점검

통계 이용자는 이용하는 통계로부터 기대하는 정보를 충분히 얻기 원하므로, 품질이 우수한 통계는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많이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통계 이용자가 해당 통계자료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진단 대상통계와 관련하여 정책수립 및 평가, 학술연구 등에 직접 활용한 경험이 있는 전문 또는 일반이용자로 구성된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실태 점검(FGI)을 실시하여 통계이용자의 통계에 대한 만족 수준과 요구사항 반영수준이 충분히 반영되는지를 진단한다.

마. 공표자료 오류 점검

작성절차에서는 오류가 없는 통계일지라도 공표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다면

통계품질을 떠나 잘못된 통계를 사용하게 된다. 공표자료 오류 점검에서는 통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KOSIS에 제공되는 통계표에 대한 수치, 단위표기, 주석 등을 점검하고, 국제기구 제공 통계의 경우에는 기관에서 제공한 수치와 국제기구에서 보고서 및 DB를 통해 발표한 수치를 상호비교하여 불일치한 수치 유무를 점검한다.

바. 조사표 설계 및 유사통계 비교·분석 점검

조사표 설계 점검에서는 주요 용어 및 항목별 정의, 조사표 구성, 조사표 설계 및 변경 절차, 설문응답 지시문, 응답보기의 포괄성·상호배타성을 만족하는지 점검한다. 그다음 각 항목별 기준시점에 일관성, 조사표 변경 이력, 조사항목별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점검한다.

유사통계 비교·분석 점검은 공표하고 있는 통계 중 동일하거나 유사한 통계가 있는지 검토한다. 점검통계와 유사한 항목이 있는 통계간의 작성기관, 작성목적, 작성대상 및 범위, 작성단위, 작성주기, 기준시점, 공표시기, 표본조사 여부, 작성규모를 비교하고 유사항목의 결과값 및 추이가 유사한지 점검한다.

사. 표본설계 점검

표본설계 점검에서는 진단통계의 모집단, 표본추출틀, 표본추출방법, 목표오차, 표본규모, 가중치, 추정식, 주요 항목별 공표 범위 등 표본설계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정밀 검토하여, 모집단을 잘 대표하는 통계자료가 생산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아. 마이크로데이터 품질 점검

이용자의 유용한 마이크로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충분한 메타데이터(파일설계서, 코드북 등) 및 정확한 마이크로데이터 제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마이크로데이터 품질 점검에서는 데이터의 정확성 진단을 목적으로 마이크로데이터 관리체계 및 메타자료 점검, KOSIS 공표항목 기준 집계표 일치율을 점검한다.

3. 통계품질 수준 측정

(1) 관련성

관련성이란 이용자 관점에 초점을 둔 측면으로 통계의 포괄범위와 개념, 내용 등이 이용자 요구에 부합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즉, 통계이용자에게 얼마나 의미 있고 유용한 통계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는가와 관련된 개념이다. 여기서는 통계의 작성목적에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용자 파악, 전문가 자문회의,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이용자 요구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통계에 반영하고 있는지와 관련한 사항을 중심으로 점검한다.

(2) 정확성

정확성이란 측정하고자 하는 모집단의 특성을 추정함에 있어 이 추정된 값이 미지의 참값에 얼마나 근접하는가의 정도를 의미한다. 정확성과 관련한 품질진단에서는 표본설계, 표본오차, 비표본오차, 자료수집방법, 면접소요시간 등을 중심으로 발생 가능한 표본오차 및 비표본오차의 크기와 발생원인 등을 탐색하고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3) 시의성 및 정시성

시의성은 작성기준시점과 결과공표시점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통계의 현실 반영도와 관련된 개념으로서 작성기준시점과 결과발표시점이 근접할수록 시의성이 높은 통계이다.

정시성은 공표한 날짜와 사전에 계획된 공표 날짜 사이의 시간 지체 정도를 나타내며, 예고된 공표시기를 정확히 준수하는가에 대한 개념이다. 여기서는 통계작성주기, 작성기준시점과 공표일까지의 소요기간, 공표예정일과 실제공표일의 차이, 공표지연 사유 등을 중심으로 점검한다.

(4) 비교성 및 일관성

비교성은 시간 흐름과 영역에 따라 비교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즉, 시간이나 공간이 달라도 통계자료가 공통된 기준(통계개념, 측정도구, 측정과정 및 기초자료)으로 집계되어 서로 비교 가능한지를 진단하는 차원이다. 따라서 비교성에서는 지리적 및 비지리적 영역 또는 시간적 통계를 비교할 때 통계작성에 적용된 개념, 정의와 측정방법의 차이가 주는 영향 등을 중심으로 점검한다.

일관성이란 동일한 경제·사회현상에 대해 서로 다른 기초자료나 작성방법, 작성주기(공표주기)에 의해 작성된 통계자료들이 서로 얼마나 유사성을 지니는가에 대한 정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서로 다른 기초자료나 작성방법에 의해 작성되었더라도 동일한 현상을 반영하는 통계자료들은 서로 유사한 결과를 보여야 한다. 일관성에서는 잠정자료와 확정자료, 연간자료와 분기(월) 자료를 비교한 내적일관성 여부와 다른 통계자료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지 비교한 결과 등을 중심으로 점검한다.

- * 비교성과 일관성은 유사한 개념이다. 일관성은 통계 간 결과가 유사한지 보는 것이고, 비교성은 통계에서 사용한 개념, 분류, 기준 등이 유사하여 비교 가능한지를 보는 것이다.

(5) 접근성 및 명확성

접근성은 이용자가 통계자료에 대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며, 명확성은 통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정보제공 수준을 말한다. 통계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간행물 및 보도자료 홈페이지 게시, SNS를 통한 속보 전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검색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은 통계의 접근성을 높이는 활동이다. 여기서는 이용자들이 통계자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친화적인 절차로 통계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이용자를 위한 적절한 정보와 지원을 하고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점검한다.

2023년 정기통계품질진단 진단결과보고서

발 행 일 2023년 12월
발 행 인 통계청장 이형일
발 행 처 통계청 통계정책국 품질관리과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인 쇄 처 위드 나래



안 내

1.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발표 또는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올바른 인용 및 출처표시 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연구보고서의 지식재산권은 통계청에 있습니다.